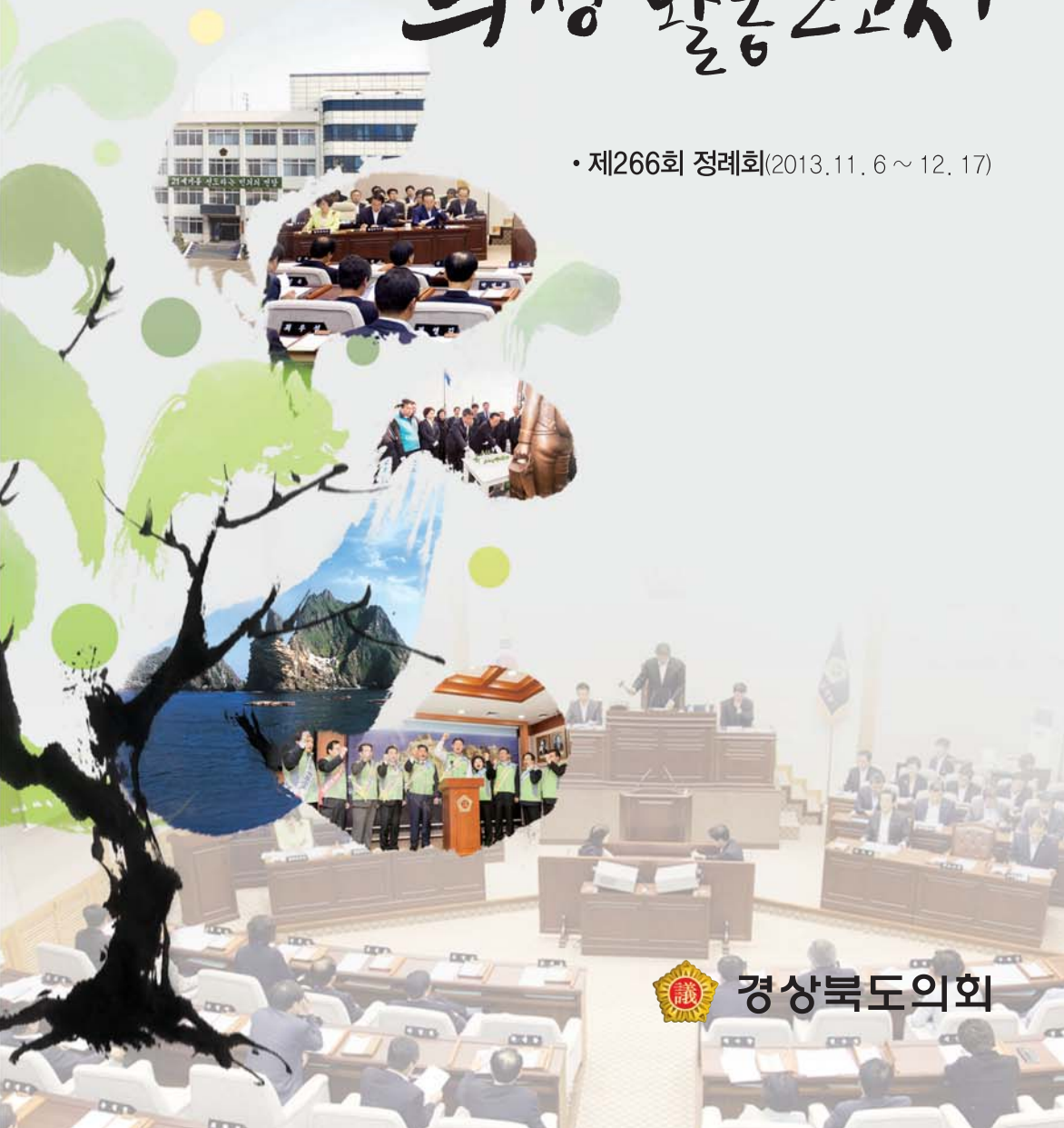


의정활동보고서

• 제266회 정례회(2013.11.6 ~ 12.17)



경상북도의회

발 간 등 록 번 호

75-6470057-000019-14

의정활동보고서

• 제266회 정례회(2013.11. 6 ~ 12. 17)



경상북도의회



의정활동보고서



제266회 정례회(2013. 11. 6 ~ 12. 17)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부터 42일
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지방분권 강화와 민생의회 실현을
목표로 도민의 뜻에 귀 기울이며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의 성공적
개최와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추진, 그리고
미래 바다시대에 대비한 동해안발전추진단 출범 등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경북 건설과 글로벌 인재육성과
명품교육 실현 등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높은 성과를
거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6회 정례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 등을 해야 함으로 그 어느 회기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도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였는지 총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서는 도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민생경제 회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과 함께하는 복지, 지역균형발전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서민경제, 취약계층, 농·어업, 각종 재난예방 등 시급한 민생현안 사업에 예산이 우선 집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연말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건강을 챙기면서 의정 활동이 보다 알차고 보람된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6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차 례

I. 개	황	9
II. 의사일정		13
III. 의안처리		29
IV. 민원처리		31
V. 본회의 보고사항		33
VI. 5분 자유발언		52
□ 이시하 의원(건설소방위원회)		52
□ 이태식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56
□ 장세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59

부 록

☐ 조례안(19건)	65
☐ 규칙안(2건)	175
☐ 예산안(4건)	210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66회 정례회는 2013년 11월 6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12월 17일까지 42일간의 회기 동안 5차의 본회의와 35회에 걸쳐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3개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11월 6일(화)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경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목)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2014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14년도 경상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4년도 경상북도 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 등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어서 기획경제위원회 김하수 의원의 “도청신도시 정주여건 관련”, “지리적 표시제 관련”, “장애인 복지정책 관련”, “교육청 산하 위원회 관련”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의원의 “경북 농식품 수출 관련”,

“무자격 상치교사 대책 관련”, “순회교사 운영 관련”, “교장·교감 동시인사에 따른 업무공백 관련”, “교원인사 특정지역 편중 관련”과 문화환경위원회의 장경식 의원의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 대책 관련”, “독도 체험시설 확대 관련”, “무연분묘 관리대책 관련”, “식품안전 관리대책 관련”, “학교폭력 대책 관련”과 농수산위원회 강영석 의원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정 관련”, “도 직속 기관 이전 관련” 등에 관한 폭넓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2일(금)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이영식 의원의 “신도청 이전 관련”, “경북관광공사 경영정상화 관련”, “성인 문해교육 관련”, “경상북도교육청 업무추진 방향 관련”, “지속적인 독서분위기 조성 관련”, “자유학기제 실시 대책 관련”과 교육위원회 최우섭 의원의 “학생수 감소에 농산어촌지역 학교 대책 관련”, “적정규모 학교와 학교 통폐합 관련”, “도교육청 유희재산 실태와 활용 방안 관련”,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관련”과 기획경제위원회 장세현 의원의 “저수지 수질 대책 관련”, “농업기술원 연구성과 관련”, “가정폭력 관련”, “학교 내 CCTV 설치 관련”과 문화환경위원회 김명호 의원의 “세계 유교·선비문화엑스포 개최 관련”, “친환경적인 도청신도시 건설 추진 관련”, “안동 꿈터유치원 부지이관 관련” 등에 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9일(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이시하 의원의 “경상북도 균형발전 관련”, 행정 보건복지위원회 이태식 의원의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상수도 설치 및 구미 봉곡 119안전센터 조기 설치 촉구”, 기획경제위원회 장세현 의원의 “포항 양덕초등학교 등교거부 사태 관련”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고, 이어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 하였다. 또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중 2건의 예산안 수정가결과 3건의 안건심의가 이어졌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7일(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경상북도의회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원안가결과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상

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또한 “경상북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과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고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다.

특히, 제26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 1인당 1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예산운용 상황,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107건, 건의·촉구사항 172건 등 총 279건을 확정하여 도 및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였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정례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4조

다. 집회일시 : 2013년 11월 6일(화) 14: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13년 11월 6일 ~ 12월 17일(42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5회(누계 76회)
- 위원회

(단위 : 건)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35	3	4	3	3	3	3	6	8	2
누 계	432	35	55	55	47	39	53	49	55	44

※ 누계는 제9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1. 6(화) 14:00 (제1차)	☐ 안전처리 ○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11. 21(목) 11:00 (제2차)	☐ 안전처리 ○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2014년도 경상북도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의 건 ○ 2014년도 경상북도 교육청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보고의 건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김하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황이주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장경식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강영석 의원(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1. 22(금) 11:00 (제3차)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이영식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최우섭 의원(교육위원회) ○ 장세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김명호 의원(문화환경위원회)	
12. 9(월) 11:00 (제4차)	☐ 5분 자유발언 ○ 이시하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이태식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장세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안건처리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2. 17(화) 11:00 (제5차)	☐ 안전처리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안 ○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 ○ 경상북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1. 6(수) 13:00 (제1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6(화) 14:00 (제2차)	☐ 안전심사 ○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2. 10(화) 14:00 (제3차)	☐ 안전심사 ○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1. 25(월) 11:00 (제1차)	☐ 예산안 심사 ○ 미래전략기획단, 일자리투자본부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26(화) 11:00 (제2차)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14년도 예산안 심사 ○ 대변인실, 기획조정실 ☐ 조례안 심사 ○ 201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27(수) 11:00 (제3차)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 2014년도 예산안 심사 ○ 창조경제산업실 ☐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12. 10(화) 14:30 (제4차)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창조경제 산업실, 일자리투자본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1. 25(월) 11:00 (제1차)	☐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안전행정국,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교	
11. 26(화) 11:00 (제2차)	☐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여성정책관실, 보건복지국(노인전문간호센터 포함) ☐ 201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 감사관실, 안전행정국, 여성정책관실, 보건복지국(노인전문간호센터 포함),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교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 10(화) 11:00 (제3차)	☐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 감사관실, 안전행정국, 여성정책관실, 보건복지국(노인전문간호센터 포함),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교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문화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1. 27(수) 11:00 (제1차)	☐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 보건환경연구원 ☐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문화관광체육국	
11. 28(목) 11:00 (제2차)	☐ 안전심사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환경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12. 10(화) 11:00 (제3차)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1. 25(월) 10:30 (제1차)	☐ 안전심사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업무보고 - 동해안발전추진단 ☐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농업기술원 소관	
11. 26(화) 11:00 (제2차)	☐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농축산국 소관	
12. 10(화) 10:30 (제3차)	☐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농축산국 소관, 동해안발전추진단, 농업기술원 소관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1. 25(월) 10:00 (제1차)	☐ 안전심사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14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2014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경상북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26(화) 11:00 (제2차)	☐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 건설도시방재국	
12. 10(화) 11:00 (제3차)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소방본부, 도청이전추진본부, 건설도시방재국	

〈교육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1. 21(목) (제1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변경안 ○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22(금) (제2차)	☐ 안전심사 ○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기금 운용 계획안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1. 25(월) 10:00 (제3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6(화) 11:00 (제4차)	☐ 안전심사 ○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도교육청, 도교육청 직속기관	
11. 27(수) 11:00 (제5차)	☐ 안전심사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 조정 -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12. 10(화) 10:00 (제6차)	☐ 안전심사 ○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공유 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기금운용 계획안 ○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 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1. 29(금) (제2차)	☐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교육청	
12. 2(월) (제3차)	☐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미래전략기획단, 일자리투자본부, 보건복지국, 환경산림국, 농업기술원	
12. 3(화) (제4차)	☐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기획조정실, 창조경제산업실, 대변인, 안전행정국, 감사관, 여성정책관	
12. 4(수) (제5차)	☐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문화관광체육국,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교, 의회사무처	
12. 5(목) (제6차)	☐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동해안발전추진단, 농축산국, 건설도시방재국, 도청이전추진본부	
12. 6(금) (제7차)	☐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소방본부 ☐ 계수조정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2. 13(금) (제8차)	☐ 2013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대변인, 감사관,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본부,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 환경특별관리단, 환경해양산업국, 보건복지국, 여성정책관, 행정지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의회사무처, 문화관광체육국, 농수산국, 건설도시방재국,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도청이전 추진본부, 농업기술원, 소방본부	
12. 16(월) (제9차)	☐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교육청 ☐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 2013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윤리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2. 17(화) 10:20	☐ 지방의회의원 청렴도 평가 결과보고 및 청렴도 향상 방안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2. 17(화) 16:00	☐ 주요 업무보고	

다.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시		대상기관	장 소	주요내용
11. 20(수)	11:00	의회사무처	위원회 회의실	• 업무현황보고 · 청취 • 질의답변

〈기획경제위원회〉

감사일시		대상기관	장 소	주요내용
11. 7(목)	10:00 14:00	미래전략기획단 일자리투자본부	위원회 회의실	• 업무현황보고 · 청취 • 질의답변
11. 8(금)	10:00 14:00	대변인 창조경제산업실	"	"
11. 14(목)	10:00	기획조정실	"	"
	15:00	(재)대구경북연구원	수감기관	"
11. 15(금)	10:00	(재)경북테크노파크	"	"
	15:00	경상북도개발공사	"	"
11. 18(월)	10:00	(재)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	"
	14:00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
	16:00	(재)경북신용보증재단	"	"
11. 19(화)	11:00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주 요 내 용
11. 7(목)	11:00 15:00	경북도립대학교 경상북도안동의료원	수 감 기 관	• 업무현황 보고·청취 • 질의답변
11. 8(금)	11:00 15:00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상북도포항의료원	"	"
11. 11(월)				○ 감사결과정리
11. 12(화)	11:00 15:00	새마을세계화재단 경상북도김천의료원	수 감 기 관	• 업무현황 보고·청취 • 질의답변
11. 13(수)				○ 감사결과정리
11. 14(목)	10:00 11:00 14:00	감사관 공무원교육원 안전행정국	행정보건복지 위원회 회의실	• 업무현황 보고·청취 • 질의답변
11. 15(금)	10:00 14:00	여성정책관 보건복지국 (노인전문간호센터 포함)	"	"

〈문화환경위원회〉

감사일시		대상기관	장 소	주요내용
11. 7(목)	11:00 15:00	산림환경연구원 경상북도관광공사	수감기관	• 업무현황 보고·청취 • 질의답변
11. 8(금)	10:00 15:00	보건환경연구원 (재)경상북도문화재 연구원	"	"
11. 11(월)	11:00 15:00	산림자원개발원 (재)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	"
11. 12(화)	11:00 15:30 17:00	경상북도체육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경상북도생활체육회	"	"
11. 13(수)	11:00 15:00	(재)안용복재단 환경해양산림국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상임위 회의실	"
11. 14(목)	11:00 15:00	(재)문화엑스포 문화관광체육국	"	"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대상기관	장 소	주요내용
11. 7(목)	11:00	농수산국	위원회 회의실	• 업무현황 보고·청취 • 질의답변
11. 8(금)	11:00	농업기술원	"	"
11. 12(화)	11:00 15:00	가축위생시험소 성주과채류시험장	수 감 기 관	"
11. 13(수)	11:00 15:00	농업자원관리원 상주감시험장	"	"
11. 14(목)	10:30 15:00	생물자원연구소 구미화훼시험장	"	"

〈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대상기관	장 소	주요내용
11. 7(목)	10:00 영천소방서	수 감 기 관	• 업무현황 보고 · 청취 • 질의답변
	15:00 의성소방서	"	
11. 8(금)	10:00 문경소방서	"	"
11. 11(월)	11:00 도청이전추진본부	도 청 신 청 사 건설현장사무실	"
11. 13(수)	11:00 소방본부	위원회회의실	"
11. 14(목)	11:00 종합건설사업소	수 감 기 관	"
11. 15(금)	11:00 건설도시방재국	위원회회의실	"

〈교육위원회〉

감사일시	대상기관	장 소	주요내용
11. 8(금)	11:00 경상북도교육청(본청)	교육위원회 회의실	• 업무현황 보고 · 청취 • 질의답변
11. 11(월)	11:00 경주 · 영천교육지원청	경주 교육지원청	"
11. 12(화)	11:00 안동 · 문경 · 예천교육지원청	안동 교육지원청	"
11. 13(수)	10:00 김천 · 상주교육지원청	상주 교육지원청	"
11. 14(목)	11:00 구미 · 의성교육지원청	구미 교육지원청	"
11. 15(금)	11:00 경산 · 청도교육지원청	청도 교육지원청	"
11. 18(월)	11:00 도교육청 직속기관 (10개 기관)	교육위원회 회의실	"
11. 19(화)	11:00 경상북도교육청(본청)	교육위원회 회의실	"

Ⅲ. 의안처리

(단위 : 건)

구 분		접수 (부의)	심의·의결				철회	계류	비고	
			계	가 결		부결				폐안
				원 안	수 정					
계		36 (524)	36 (514)	26 (407)	10 (102)	(4)	(1)	1 (4)	(6)	
조 례 안	소 계	18 (319)	19 (311)	12 (225)	7 (81)	(4)	(1)	(3)	(5)	
	의 회 제 안	9 (157)	9 (151)	7 (114)	2 (37)			(2)	(4)	
	도지사 제 출	4 (108)	4 (106)	1 (79)	3 (25)	(1)	(1)	(1)	(1)	
	교육감 제 출	5 (54)	6 (54)	4 (32)	2 (19)	(3)				
규 칙 안		2 (5)	2 (5)	2 (5)						
예산·결산		4 (29)	4 (29)	1 (9)	3 (20)					
동의·승인		6 (46)	6 (46)	6 (45)	(1)					
건 의 안		1 (4)	(3)	(3)				1 (1)		
결 의 안		(37)	(36)	(36)					(1)	
기 타 안		5 (84)	5 (84)	5 (84)						

※ ()내는 제 9대 의회 누계임.

□ 상임위 계류중인 안건(6건)

- 경상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지원 조례안
('11. 4. 22, 도지사, 농수산위원회 상정유보)
- 경상북도 비정규학교(야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7. 7, 이달의원, '11. 8. 31,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2. 11, 전찬걸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2. 17, 황이주 의원 외 3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
('13. 5. 16, 배수향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심사유보)
- 경북북부권내 지방법원·검찰청 신설 촉구 결의안
('13. 8. 13, 김명호 의원 외 12인, 건설소방위원회 심사유보)

IV. 민원처리

1. 청 원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4		4	3	1

※ 누계는 제9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단위 : 건)

위원회	계	행정	사회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1 (116)				1					
의 회 영	(2)									
기 경 제	(13)									
행 정 보 건 복 지	(21)									
문 화 환 경	(8)									
농 수 산	(5)									
건 설 소 방	1 (62)				1					
교 육	(5)									
특 별 위 원 회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단위 : 건)

위 원 회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1 (115)	1 (115)				1
의회운영						
기획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환경						
농 수 산						
건설소방	1	1				1
교 육						
특별위원회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 12건(조례안 10, 건의안 1, 동의안 1)

제출·발의자 (제출일)	의안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김영기 의원 외 2인 (2013. 10. 28)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 (2013. 10. 29)
김하수 의원 외 8인 (2013. 10. 28)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
박진현 의원 외 2인 (2013. 10. 28)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13. 10. 29)
황이주 의원 외 7인 (2013. 10. 28)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김창숙 의원 외 6인 (2013. 10. 28)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사 (2013. 10. 28)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윤창욱 의원 외 11인 (2013. 10. 28)	경상북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건설소방 (2013. 10. 29)
김명호 의원 외 12인 (2013. 10. 28)	경북 신도청 이전지 내 '국립소방방재박물관' 건립에 관한 건의안	"
경상북도교육감 (2013. 10. 25)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 (2013. 10. 29)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변경안	"

2. 조례공포 사항 : 2건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13. 10. 24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3. 10. 31 (제3474호)
"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3. 10. 31 (제3475호)

3. 위원회 활동 사항

위 원 회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예 산 결 산 특별위원회	11. 4~ 11. 5	경 주	○ 도내 주요사업 추진상황 파악 및 실태점검 ○ 2014년 본예산 대비를 위한 예산 설명회 개최

4. 기타 의정활동 사항

【도 단위 행사】

- 2013 의원연수회 참석
 - 일 시 : 2013. 10. 24(목) ~ 10. 25(금)
 - 장 소 : 대명리조트 경주
 - 참 석 : 전 의원

○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발대식 참석**

- 일 시 : 2013. 10. 24(목) 13:30
- 장 소 : 영남대 천마아트센터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김창숙·배한철·서정숙·이태식 의원

○ **경북 여성창업경진대회 참석**

- 일 시 : 2013. 10. 25(금) 13:00
- 장 소 : 경북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경산시 삼풍동 소재)
- 참 석 : 김창숙·서정숙 의원

○ **디자인창의산업 R&BD(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 활성화 국제 심포지엄 참석**

- 일 시 : 2013. 10. 25(금) 14:00
- 장 소 : 구미 금오공과대학교
- 참 석 : 이태식 의원

○ **2013 경상북도 건축문화대전 참석**

- 일 시 : 2013. 10. 25(금) 14:00
- 장 소 :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 참 석 : 박성만 부의장, 김명호 의원

○ **경북 과학교육한마당 참석**

- 일 시 : 2013. 10. 25(금) 14:00
- 장 소 : 경주 실내체육관
- 참 석 : 이 달·김원석·최우섭 의원

-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3. 10. 25(금) 15:00
 - 장 소 : 서울 의장협의회 사무실
 - 참 석 : 송필각 의장
- 2013 안용복 예술제 참석
 - 일 시 : 2013. 10. 25(금) 15:00
 - 장 소 : 안동 웅부공원
 - 참 석 : 박성만 부의장, 김명호·이영식 의원
- 제4회 경북적십자사 자선걷기 대회 참석
 - 일 시 : 2013. 10. 26(토) 11:00
 - 장 소 :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 참 석 : 이시하·고우현 의원
- 2013년 의원 국제친선교류 참석
 - 일 시 : 2013. 10. 26(토) ~ 10. 30(수)
 - 장 소 : 러시아 이르쿠츠크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진현·장두옥 위원장, 권영만·박기진·구자근·김봉교·김세호·김원석·김하수·김희수·배수향·배한철·변우정·장영석 의원 (총 15명)
- 제12회 경북매일신문사장기 생활체육 전국 정구대회 개최식 참석
 - 일 시 : 2013. 10. 27(일) 10:00
 - 장 소 : 포항 해맞이 정구전용구장
 - 참 석 : 장경식·장세현 의원

- 경북 팝오케스트라 연주회 참석
 - 일 시 : 2013. 10. 27(일) 15:00
 - 장 소 : 구미 문화예술회관
 - 참 석 : 박태환 의원
- 국제 인문·문학축제 개회식 참석
 - 일 시 : 2013. 10. 28(월) 09:40
 - 장 소 : 경주 현대호텔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이 달·최우섭 의원
- 건강행복추진기획단 2차 회의 참석
 - 일 시 : 2013. 10. 28(월) 15:00
 - 장 소 : 칠곡경북대병원 소강당(대구 학정동 소재)
 - 참 석 : 이경임 의원
- 경북 교통운수·운전자 교육 참석
 - 일 시 : 2013. 10. 30(수) 9:30
 - 장 소 : 포항문예회관
 - 참 석 : 장경식 의원
- 해양실�크로드 심포지엄 참석
 - 일 시 : 2013. 10. 30(수) 10:00
 - 장 소 : 경주 힐튼호텔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최학철 의원
- 국제 인문·문학축제 폐회식 참석
 - 일 시 : 2013. 10. 30(수) 10:30
 - 장 소 : 경주 현대호텔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 2013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참석
 - 일 시 : 2013. 10. 30(수) 11:00
 - 장 소 : 김천 실내체육관
 - 참 석 : 박성만 부의장, 나기보·나현아 의원
- 2013 중증장애인배우자 초청대회 참석
 - 일 시 : 2013. 10. 30(수) 11:00
 - 장 소 : 경산시 보훈회관 대강당
 - 참 석 : 김영식·서정숙 의원
-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생산 다슬기 치패 방류행사 참석
 - 일 시 : 2013. 10. 30(수) 13:00
 - 장 소 : 포항 죽장면 가사천 일원
 - 참 석 : 장경식 의원
- 제3회 경상북도 산림문화축제 임업인 어울림 한마당 참석
 - 일 시 : 2013. 10. 30(수) 14:00
 - 장 소 : 김천 직지문화공원
 - 참 석 : 박성만 부의장, 나기보 의원
- 제8회 건축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3. 10. 30(수) 14:00
 - 장 소 : 도의회 세미나실
 - 참 석 : 홍진규 의원
- 제15회 경상북도 학생축제 참석
 - 일 시 : 2013. 10. 30(수) 14:00
 - 장 소 :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 참 석 : 김명호 의원

- 남부권신공항건설 도민한마음 대회 참석
 - 일 시 : 2013. 10. 30(수) 14:00
 - 장 소 : 구미 민방위교육장
 - 참 석 : 고우현 · 윤창욱 · 김봉교 · 심정규 의원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안 감사 참석
 - 일 시 : 2013. 10. 31(목) ~ 11. 4(월)
 - 장 소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대구 신천동 소재)
 - 참 석 : 김희수 의원
- 경상북도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참석
 - 일 시 : 2013. 10. 31(목) 11:00
 - 장 소 : 울진 후포대게축제장
 - 참 석 : 황이주 의원
- 경상북도교육청지정 에너지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
보고회 참석
 - 일 시 : 2013. 10. 31(목) 13:00
 - 장 소 : 구미 봉곡중학교
 - 참 석 : 박태환 의원
- 경북여성문화와 정체성 아카데미 특강
 - 일 시 : 2013. 10. 31(목) 13:30
 - 장 소 : 경북여성정책개발원(경산시 삼풍동 소재)
 - 참 석 : 채옥주 위원장, 서정숙 의원

- **비전21 경북포럼 정기포럼 참석**
 - 일 시 : 2013. 10. 31(목) 14:00
 - 장 소 : 경주 블루원리조트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 **제50회 경상북도 학생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3. 10. 31(목) 14:00
 - 장 소 : 영천 시민운동장
 - 참 석 : 김수용 위원장
- **제2회 경북국제항공포럼 개최식 참석**
 - 일 시 : 2013. 10. 31(목) 17:00
 - 장 소 :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활성화 포럼 개최식 참석**
 - 일 시 : 2013. 10. 31(목) 17:30
 - 장 소 : 경주 현대호텔
 - 참 석 : 박병훈·박진현 위원장, 이 달 의원
- **영·호남 교류 음악회 참석**
 - 일 시 : 2013. 10. 31(목) 19:30
 - 장 소 : 구미 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심정규 의원
- **포항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
 - 일 시 : 2013. 11. 1(금) 11:00
 - 장 소 : 포항 종합운동장
 - 참 석 : 채옥주 위원장, 김희수 의원

- 경상북도 무기계약직 한마음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3. 11. 1(금) 11:00
 - 장 소 : 경주 시민운동장
 - 참 석 : 이 달 의원
- 제10회 퇴계학 학술상 시상식 참석
 - 일 시 : 2013. 11. 1(금) 11:30
 - 장 소 : 안동 도산서원
 - 참 석 : 김명호 의원
- 전국 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회의 참석
 - 일 시 : 2013. 11. 1(금) 12:00
 - 장 소 : 팔공온천관광호텔(대구시 용수동 소재)
 - 참 석 : 송필각 의장
- 사랑의 열매 유공자포상 및 나눔 봉사단 총회 참석
 - 일 시 : 2013. 11. 1(금) 14:00
 - 장 소 : 칠곡 교육문화회관
 - 참 석 : 김희원·추재천 의원
- 점자의 날 경북문화축제 참석
 - 일 시 : 2013. 11. 1(금) 14:00
 - 장 소 : 포항문예회관
 - 참 석 : 장경식 의원
- ‘좋은 매체언어 사용례’ 공모 시상식 참석
 - 일 시 : 2013. 11. 1(금) 17:00
 - 장 소 : 영남대학교 국제교류센터 3층 강당
 - 참 석 : 서정숙 의원

○ 경상북도지사기 배드민턴 대회 개최식 참석

- 일 시 : 2013. 11. 2(토) 11:00
- 장 소 : 영양 군민회관
- 참 석 : 이상용 의원

○ 라이온스 경북지구 등반대회 참석

- 일 시 : 2013. 11. 2(토) 13:00
- 장 소 : 영덕 축산항
- 참 석 : 김기홍 의원

○ 2013 도민행복을 위한 안전경북만들기 참석

- 일 시 : 2013. 11. 2(토) 15:00
- 장 소 : 고령군청 국악당
- 참 석 : 송필각 의장

○ 포항운하 통수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3. 11. 2(토) 16:30
- 장 소 : 포항운하 일원
- 참 석 : 채옥주·장두욱 위원장, 장경식·장세현·김말분·
김원석·김희수 의원

○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 성과보고회 참석

- 일 시 : 2013. 11. 4(월) 15:00
- 장 소 : 경주 힐튼호텔
- 참 석 : 송필각 의장

○ 제3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3. 11. 4(월) 16: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윤창욱 의원

○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워크숍 참석

- 일 시 : 2013. 11. 4(월) 17:00
- 장 소 : 대명리조트 경주
- 참 석 : 송필각 의장, 장두욱 위원장, 김희원 의원

○ 경북 바이오벤처프라자 개원식 참석

- 일 시 : 2013. 11. 5(화) 11:00
- 장 소 : 안동 풍산산업단지내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진현 위원장, 이시하·김영기·
김종천·김명호·김봉교·김세호·김하수·도기욱·
이영식 의원

○ 도청 및 도의회 신청사 상량식 참석

- 일 시 : 2013. 11. 5(화) 14:00
- 장 소 : 신청사 건설현장(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성만 부의장, 박병훈·박진현·
정상진·장두욱위원장, 이시하·고우현·권영만·
김영기·김종천·윤창욱·이상용·김명호·김봉교·
김세호·김하수·김희원·나현아·도기욱·박태환·
윤성규·이경임·이영식·이왕식·이태식·추재천·
홍광중·홍진규 의원(총 29명)

○ 경상북도 상공인 나눔과 상생경영실천 결의대회 참석

- 일 시 : 2013. 11. 5(화) 16:30
- 장 소 : 안동대 국제교류관
- 참 석 : 송필각 의장, 김명호·이영식 의원

【시·군 단위 행사】

○ 행복마을 1호 현판 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10. 25(금) 09:30
- 장 소 : 구미 인동동주민센터
- 참 석 : 김봉교·장영석 의원

○ 제62회 문경시민체육대회 및 문화제 참석

- 일 시 : 2013. 10. 25(금) 10:00
- 장 소 : 문경 국군체육부대
- 참 석 : 이시하 의원

○ 울진군 이장연합회 한마음 단합대회 참석

- 일 시 : 2013. 10. 25(금) 11:00
- 장 소 : 울진 군민체육관
- 참 석 : 황이주 의원

○ 성주군 무학보건진료소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3. 10. 25(금) 14:00
- 장 소 : 성주군 무학보건진료소
- 참 석 : 박기진 의원

- 제6회 구미시 국화전시회 참석
 - 일 시 : 2013. 10. 25(금) 14:00
 - 장 소 : 구미 금오산도립공원
 - 참 석 : 윤창욱·심정규 의원
- 2013 예천군 다문화가족 어울림 축제 참석
 - 일 시 : 2013. 10. 26(토) 10:00
 - 장 소 : 경북도립대학 실내체육관
 - 참 석 : 정상진 위원장
- 제16회 구미시합기도연합회장기대회 개회식 참석
 - 일 시 : 2013. 10. 26(토) 10:30
 - 장 소 : 구미 봉곡테마공원
 - 참 석 : 이태식 의원
- 故 박정희 대통령 34주기 추도식 참석
 - 일 시 : 2013. 10. 26(토) 10:30
 - 장 소 : 구미 박정희대통령 생가
 - 참 석 : 박태환 의원
- 제30회 재포항 강원도민회 한마음축제 참석
 - 일 시 : 2013. 10. 26(토) 11:00
 - 장 소 : 포항 실내체육관
 - 참 석 : 장세현·이정호·한창화 의원
- 2013 중부내륙 친선 궁도대회 참석
 - 일 시 : 2013. 10. 26(토) 14:00
 - 장 소 : 안동 궁도장
 - 참 석 : 이영식 의원

○ 제12회 신라의 달밤 165리 걷기대회 출정식 참석

- 일 시 : 2013. 10. 26(토) 19:00
- 장 소 : 경주 황성공원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 한림중고등학교 개교 40주년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3. 10. 27(일) 14:00
- 장 소 : 경주 서라벌문화회관
- 참 석 : 이 달 의원

○ 고령군 안화골 경로당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3. 10. 28(월) 10:00
- 장 소 : 고령 쌍림면 안화골 경로당
- 참 석 : 곽광섭 의원

○ 2013년 사적대제 참석

- 일 시 : 2013. 10. 28(월) 10:00
- 장 소 : 경산향교 주차장
- 참 석 : 윤성규 의원

○ 제12회 상주시 국화전시회 개최식 참석

- 일 시 : 2013. 10. 28(월) 11:00
- 장 소 : 상주 북천시민공원
- 참 석 : 강영석 의원

○ 칠곡군 약목시장 어울림 한마당 행사 참석

- 일 시 : 2013. 10. 28(월) 14:00
- 장 소 : 칠곡 약목시장
- 참 석 : 김희원 의원

○ 제33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참석

- 일 시 : 2013. 10. 29(화) 10:00
- 장 소 : 김천 충혼탑
- 참 석 : 나기보 의원

○ 안전문화운동 문경시협의회 발대식 참석

- 일 시 : 2013. 10. 29(화) 11:00
- 장 소 : 문경시청 대회의실
- 참 석 : 이경임 의원

○ 포항시 송라 지경리 반공위령제 참석

- 일 시 : 2013. 10. 29(화) 11:00
- 장 소 : 송라면 지경리 반공위령비
- 참 석 : 김말분 의원

○ 서청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3. 10. 29(화) 11:00
- 장 소 : 청도 로컬푸드 직매장
- 참 석 : 김하수·박권현 의원

○ 군위읍 동부2리 노인회관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3. 10. 29(화) 14:00
- 장 소 : 군위 동부2리 노인회관
- 참 석 : 홍진규 의원

○ 경북 북부미래포럼 참석

- 일 시 : 2013. 10. 29(화) 15:00
- 장 소 : 영양군청 대회의실
- 참 석 : 이상용 의원

- 자원봉사자 대회 및 화합한마당 참석
 - 일 시 : 2013. 10. 31(목) 10:00
 - 장 소 : 봉화 군민회관
 - 참 석 : 권영만 의원
- 제2회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 참석
 - 일 시 : 2013. 10. 31(목) 10:00
 - 장 소 :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 참 석 : 고우현 의원
- 영주시 지체장애인 자립실천대회 참석
 - 일 시 : 2013. 10. 31(목) 11:00
 - 장 소 : 영주 시민회관
 - 참 석 : 김종천 의원
- 제33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참석
 - 일 시 : 2013. 10. 31(목) 11:00
 - 장 소 : 청송읍 월외 반공위령제 전장
 - 참 석 : 김영기 의원
- 2013 성주군 사회복지인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3. 11. 1(금) 10:00
 - 장 소 : 성주 실내체육관
 - 참 석 : 정영길 의원
- 제1회 경산시평생학습재능나눔 박람회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11. 1(금) 10:00
 - 장 소 : 경산실내체육관
 - 참 석 : 김창숙·서정숙·윤성규 의원

- 제1회 감사나눔 학생페스티벌 참석
 - 일 시 : 2013. 11. 1(금) 10:30
 - 장 소 : 경북학생문화회관
 - 참 석 : 채옥주 위원장
- 제5회 영주시 자원봉사 박람회 참석
 - 일 시 : 2013. 11. 1(금) 11:00
 - 장 소 : 영주역 광장
 - 참 석 : 박성만 부의장
- 2013 안동시 구인·구직 취업한마당행사 참석
 - 일 시 : 2013. 11. 1(금) 14:00
 - 장 소 : 안동 실내체육관
 - 참 석 : 김명호 의원
- 뇌변병장애인 김천시지회 사무실 개소식 참석
 - 일 시 : 2013. 11. 1(금) 14:00
 - 장 소 : 뇌변병장애인 김천시지회
 - 참 석 : 배수향 의원
- 진량읍민 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3. 11. 2(토) 09:30
 - 장 소 : 대구대학교 공대운동장
 - 참 석 : 배한철 의원
- 제30회 군민건강걷기대회 참석
 - 일 시 : 2013. 11. 2(토) 10:00
 - 장 소 : 울진 후포한마음광장
 - 참 석 : 전찬걸 위원장

- 제4회 칠곡군수배 태권도 겨루기 대회 참석
 - 일 시 : 2013. 11. 2(토) 11:00
 - 장 소 : 칠곡 국민체육센터
 - 참 석 : 송필각 의장
- 제8회 울릉군수기 사회인 야구대회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11. 2(토) 12:30
 - 장 소 : 울릉 현포초등학교
 - 참 석 : 이용진 의원
- 영해관광시장 농수산물 대축제 참석
 - 일 시 : 2013. 11. 2(토) 13:00
 - 장 소 : 영덕 영해관광시장
 - 참 석 : 김기홍 의원
- 2013년 전국 스카이다이빙 페스티벌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11. 2(토) 13:00
 - 장 소 : 예천 한천체육공원
 - 참 석 : 도기욱 의원
- 제2회 영천시민 생활체육대회 개최식 참석
 - 일 시 : 2013. 11. 3(일) 09:30
 - 장 소 : 영천체육관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김수용 위원장
- 포항스틸아트 페스티벌 개막제 참석
 - 일 시 : 2013. 11. 3(일) 14:00
 - 장 소 : 포항운하 일원
 - 참 석 : 장경식 의원

○ 제4회 전국농악대축제 참석

- 일 시 : 2013. 11. 3(일) 15:00
- 장 소 : 경산 남천둔치 야외무대공연장
- 참 석 : 김영식 의원

○ 전통음식 문화축제 참석

- 일 시 : 2013. 11. 5(화) 10:00
- 장 소 : 포항 황해사
- 참 석 : 김희수 의원

○ 의성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의 참석

- 일 시 : 2013. 11. 5(화) 11:00
- 장 소 : 의성군 건강복지타운 소회의실
- 참 석 : 나현아 의원

VI. 5분 자유발언

□ 2013년 12월 9일 제26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 이시하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경상북도 균형발전에 관하여>>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문경 출신 이시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내의 지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도청이전이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5일 경북도청 신청사 상량식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량식은 건물의 뼈대가 완성됐다는 뜻으로 지붕을 떠받치는 대들보가 놓여 졌으니, 기와를 올릴 단계에서 하늘에 소원을 비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을 비롯한 북부권 지역 주민들이 신청사 상량식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내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본 의원은 2008년 도청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 본 회의장에서 표결 직전까지 팽팽하게 공방을 펼쳤던 2개의 쟁점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청은 행정수요가 많은 곳에 와야 한다'는 행정수요론이고, 다른 하나는 '도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된 북부 지역에 와야 한다'는 균형발전론이었습니다.

행정수요론과 균형발전론이 십여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갑론을박을 하면서 도민들이 내린 선택은 바로, 균형발전이었습니다.

지금 북부권 지역 주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 기대와 희망에 차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도내 북부권 지역이 오랜 세월, 타 지역에 비해 너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균형발전이 당장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청이 이전되고 신도시가 조성되면, 북부권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앞당기는데 전인차 역할을 하리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도는 그 동안 수도권에 비해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의 재정 여건과 꺼져가는 지방의 성장 동력을 다시 살리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을 어느 시·도보다 앞장서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도내의 지역 간 균형발전은 어떻습니까?

이미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입지조건이 좋은 중부권과

동·남부권은 북부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원하면서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내 지역별 불균형 현상은 갈수록 그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도에서 시·군별 지역내 총생산과 재정자립도 등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최근 3년간 시·군별 지역내 총생산을 분석한 결과, 안동을 비롯한 도내 북부권 8개 시·군의 지역내 총생산을 모두 합쳐도 구미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며, 포항의 절반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북부권을 대표하는 안동의 지역내 총생산은 경주와 경산의 절반도 되지 않는데다, 심지어 김천, 칠곡 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6년간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북부권 8개 시·군 중 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물론이고, 시·군 평균을 넘어선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으며, 계속하강 추세에 있습니다.

교육행정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도내 시·군별, 초·중·고별 학교신설 및 폐교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폐교 43개 교중 무려 60%에 해당하는 26개교가 북부권 8개 시·군 지역입니다.

반면에 신설학교는 안동에 초등학교 1곳뿐이며, 중·고등학교는 5개교가 신설되었으나 북부권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제 도청이전을 목전에 두고, 북부권 발전의 돌파구를 찾아서 그 난제를 풀기 위한 고민을 다 함께 해야 할 때입니다. 도내

북부권을 찾는 방문객 수가 한 해에 2천만 명이 넘고, 북부권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지원하고 제대로 활용한다면, 훨씬 경북도의 특색을 살리고, 북부지역 발전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 발전에는 어느 시·도보다 앞장 서면서 정녕 우리 도내 지역균형 발전은 등한시 한다면, 우리 스스로 도청이전이 갖는 명분과 취지를 스스로 저버리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 지역 간 불균형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청이전이 당초 일정대로 착착 진행되고, 북부권의 관광 콘텐츠 개발과 함께 지역개발 사업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까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지역불균형 문제는 크게 해소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도청이전을 위해 수년 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 현장 근로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청사 공사가 완공되고 이전하는 그 날까지 잘 마무리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태식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상수도 및 구미 봉곡 119안전센터
조기 설치 촉구>>

구미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66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 상수도 공급과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구미시 봉곡동 119안전센터 조기 설치를 촉구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 상수도
공급 촉구입니다.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은 김천시 아포읍 대성지
근처에 2002년 개원하여, 청소년, 교사, 일반 주민 등 연간
11만 3천명이 이용하는 수련시설입니다.

그러나 식수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연간 정수필터 교체
비용으로 1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수련원이 위치한
곳은 마을과 인접한 생활권 지역으로 김천시 50가구, 구미시
20가구가 있으며, 식당이 14개소가 성업 중인 지역입니다.
문제는 갈수기에 지하수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청소년
들이 많이 이용하는 봄, 가을, 겨울의 갈수기에 지하수가 부족
하여 불편을 겪고 있으며, 수련원의 지하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지하수를 이용하는 인근 마을과 식당에서 식수가 부족하여

집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수 부족은 식수 오염으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김천시와 구미시는 경계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수도 정비기본 계획에 이 지역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지역 상수도 공급은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와 구미시 선기동까지 상수도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련원의 위치에서 김천시 8.3km, 구미시 2.5km가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수 부족에 따른 수련원 이용 불편과 지역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상수도를 공급해야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의 상수도 공급과 관련하여 정확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양 도시의 상수도 공급 계획을 조정해서 조속히 경상북도 청소년 수련원에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과 시행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구미소방서 봉곡 119안전센터 조기 설치 촉구입니다. 구미 봉곡동, 남통동, 도량 1·2동, 선기동, 부곡동은 면적 31.85㎢, 인구 79,261명(27,215세대), 소방 대상물이 443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방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화재가 51건에서 8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구조는 108건에서 424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119안전센터는 구미 원평 5.8km, 구미 송정 6.8km,

김천 아포 8.3km, 구미 공단 9.6km가 떨어져 있으며, 최근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과도한 인구밀집과 유동 인구 증가에 따라 구급출동이 가장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원평119 안전센터는 원평동, 도량동, 지산동, 봉곡동, 부곡동, 선기동, 수점동, 양호동일부 등 인구 88,920명, 소방대상물 1,230개소, 위험물 취급소 118개소 등 다중이용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산재하여 소방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입니다. 도저히 현재 원평 119안전센터 19명의 소방공무원 인력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에 있습니다.

도지사께 촉구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업무는 경북도의 고유 사무입니다. 도내 어느 지역이든 중요하지 않은 지역은 없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상주하는 인구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화재와 구조, 구급 업무 등 소방 수요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조기에 119 안전센터가 설치·운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장세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포항 양덕초등학교 등교거부 사태 관련>>

포항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장세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지난 6월 포항의 한 초등학교에 '등교거부'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교육환경 악화와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포항시가 '승마장' 건립을 강행하였고, 이는 양덕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교거부'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등교거부는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무려 일주일간 지속되었고, 전교생의 75%인 1,169명의 학생이 등교거부에 동참하였습니다. 결국 사태는 7월 3일 포항시장의 '승마장 전면 백지화' 선언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포항시 행정의 소통 부재, 특히, 오염된 환경 하에서는 자녀를 공부시킬 수 없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을 무시·방관한 "해당 학교 및 관할 교육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16일 학교 측에서는 등교를 거부한 1,169명의 학생에 대해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서 '무단결석'은 합당치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인데, 과연 교육환경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등교하지 않은

어린학생들이 무단결석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9조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 하여 14세 미만은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라 하여,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처벌 또한 받지 아니한다라고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태 발생 6개월 전인 지난 1월 양덕초등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가 학교차원의 승마장 반대서명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법정처리기한인 7일은 고사하고, 6개월 동안 답변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1월부터 7월까지 학부모 등이 포항시에 200건 이상의 승마장 관련 민원을 올렸고, TV, 언론 등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였고 5월에는 학부모 50명의 피켓 시위가 있었음에도, 학교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은 사태가 커질 때까지 '무사안일', '복지부동'으로 일관하여 교육자의 자세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학교의 초동조치 미흡이 '등교거부'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것입니다. 학교차원에서 해결에 나서야 할 일을 학생과 학부모가 해결하였음에도, 학교 측은 도리어 1,169명의 학생들에게 향후 취업과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무단결석'이라는 가혹한 올가미를 씌운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장래에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떠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경기도 고양시 양일초등학교에서 건축폐기물 야적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두 차례의 '등교거부' 사태가 일어난 바 있습니다. 전교생의 절반 가량인 403명이 참여하였고, 3월에는 15일간의 2차 등교거부가 있었습니다. 이후 학교 측은 사안의 중대함과 양일초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지역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총 18일간의 결석에 대해 '기타결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학생들의 보호와 배려 그리고 사랑이 최우선 교육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항 양덕초등학교 등교거부사태에 대해 학부모들의 진정에 대한 주민감사가 청구되자 도 교육청 감사실에서는 학교 측의 책임부분을 인정하고, 민원에 답변을 하지 않은 담당교사 1인에게 '주의' 조치를 취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학생은 1,169명이나 '무단결석'으로 행정처리가 되었는데, 학교 측에 대해 교사 1인에게만 '주의' 조치를 취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것입니다. 해당 학교장은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포항시 교육장, 도 교육감 또한 지도·감독에 대한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등교거부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도 교육 행정의 처리결과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관리·감독에 대한 직무유기의 책임이 있는 인사들에게 강력한 징계와, 민선 시대 경북교육의 최종 책임이 있는 “도 교육감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무단결석’ 처리를 다시 한 번 재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꿈꾸는 장래에 생활기록부 상의 ‘무단결석’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양덕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포항시 이경희
교육장님, 이영우 도교육감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시다.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에게 포용과
사랑을 베풀어 훗날 경상북도 교육에 공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베푸신 분들로 남아주시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 조례안 : 19건
- 규칙안 : 2건
- 예산안 : 4건

二 조 례 안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
- 경상북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11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가목 중 “환경해양산림국”을 “환경산림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 가목 중 “농수산국, 농업기술원”을 “농축산국, 동해안발전추진단, 농업기술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원 안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3.(생략) 4. 문화환경위원회 가. <u>문화관광체육국, 환경해양산업국, 보건</u> <u>환경연구원</u>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5. 농수산위원회 가. <u>농수산국, 농업기술원</u> 및 그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3.(생략) 4. 문화환경위원회 가. <u>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업국, 보건환경</u> <u>연구원</u>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5. 농수산위원회 가. <u>농축산국, 동해안발전추진단, 농업</u> <u>기술원</u>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12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사업소 등”을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
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중 “직렬별 정원”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
하는 경우 포함)”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 반 직	별정·정무직
비율	99% 이상	1% 이내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전문경력관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 급	6 급	7 급	8·9급	전문경력관
비율	6% 이내	18% 이내	31% 이내	33% 이내	11% 이상	1% 이내

비고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 8명(1급 1, 3급 1, 5급 1, 6급 1, 7급 4)은 제외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비율	20% 이내	80% 이상	34% 이내	66%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 상당 이상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9급 상당
비율	25% 이내	60% 이내	-	10% 이내	5% 이상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4. 소방직공무원

구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율	1% 이내	3% 이내	6% 이내	8% 이내	15% 이내	31% 이내	36% 이상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경제자유 구역청
합 계		5,098	-				
정 무 직		1	-				
일 반 직	소 계	1,791	-				
	1 급	1					1
	2~3급	1		1			
	3 급	12	10		1		1
	3~4급	2	2				
	4급	75	54	7	5	9	
	5급 이하	1,689	-				
	전문경력관	11	-				
별 정 직	소 계	12	-				
	1급 상당	1	1				
	4급 상당	2		2			
	5급 상당 이하	9	-				
연 구 직	소 계	191	-				
	연구관	37	1		35	1	
	연구사	154	-				
지 도 직	소 계	27	-				
	지도관	9			9		
	지도사	18	-				
소 방 직	소 계	3,033	-				
	소방정	20	3		17		
	소방령 이하	3,013	-				
교 원	소 계	43	-				
	총 장	1			1		
	교 수	31			31		
	조 교	11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 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3년 11월 26일

제 안 자 : 기 획 경 제 위 원 장

1. 수정 이유

- 안전행정부에서 직종개편에 따른 표준모델을 통보하였으나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공포(2013. 11. 20)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제안함.

2. 주요 골자

- 안 제4조(직급별정원)의 “직무군”을 “직위군”으로 수정함.

3. 참고 사항 : 없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4조(직급별정원)의 “직무군”을 “직위군”으로 수정함.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4조 중 “사업소 등”을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중 “사업소 등”을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령에 맞게 수정 (대통령령 제24855호)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u>직무군</u>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u>직위군</u>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12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 치 행정과	1.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임용 2.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상당계급 승진),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 3. 임기제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 4. 전문경력관,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행정직군 속기직렬·방호직렬공무원 및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위생직렬·조리직렬·간호조무직렬·운전직렬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91조 「지방자치법」 제91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3조의2 <u>[별표 7의2]</u>	도의회 사무처장

별표 3 자치행정과 소관 건명란 제1호 중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4 자치행정과 소관 건명란 제1호 중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3년 11월 26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 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2013. 9. 13)시 제63조의2 별표 규정이 시행령 공포(2013. 11. 20)시 변경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제안함.

2. 주요 골자

- 안 [별표 2]의 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근거 법령의 “[별표 9]”를 “[별표 7의2]”로 수정함.

3. 참고 사항 : 없음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별표 2]의 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근거 법령의 “[별표 9]”를 “[별표 7의2]”로 수정함.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별표 2] 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2] 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권 명	근거법령	수위 기관	소관별	권 명	근거법령	수위 기관	
자 치 행정과	1.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 내 정보임용 2. 별정직공무원의 신규 임용, 정보임용, 승진 임용(상당 계급 승진) 장제, 면직 등 임용권 전반 3.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장제, 면직 등 임용권 전반 4. 전문경력관,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행정직군 속기직렬·방호직렬공무원 및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위생직렬·조리직렬·간호조무직렬·운전직렬공무원과 관내운영직군 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 정보임용, 승진임용, 장제, 면직 등 임용권 전반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91조 「지방자치법」 제91조	도의회 사무처장	자 치 행정과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 및 [별표 7의2]	도의회 사무처장	법령에 맞게 수정 (대통령령 제24859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12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259명”을 “5,27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4,881명”을 “4,886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373명”을 “388명”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 반 직	정무·별정직
비율	99.5% 이상	0.5% 이내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전문경력관 및 연구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2% 이내	8.5% 이내	33% 이내	44% 이내	12.4% 이상	0.1% 이내

2. 연구직공무원

구 분	연 구 관	연 구 사
비율	-	100%

3. 특정직공무원

구 분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비율	30% 이내	70% 이상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 단위기관별 ·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기관별 직급별	합계	경상북도 의회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공립 각급학교
총 계	5,279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4,884	-			
3 급	3		3		
3~4급	4		4		
4 급	19	1	17	1	
5급 이하 소계	4,854	-			
전문경력관 소계	4	-			
연구직 계	6	-			
연구사	6	-			
특정직 계	388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 연구관	48	-	24	24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 연구관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	340	-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5,259명</u>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 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u>4,881명</u>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u>373명</u>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제2조(정원의 총수) _____ _____ <u>5,279명</u>_____ _____. 1. (현행과 같음) 2. _____ _____ _____ — <u>4,886명</u> 3. _____ <u>388명</u>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table border="1"><tr><th>구분</th><th>일반직</th><th>기능직</th><th>정무·별정직</th></tr><tr><td>비율</td><td><u>47%</u> <u>이상</u></td><td><u>52.5%</u> <u>이내</u></td><td>0.5% 이내</td></tr></table>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정원을 포함한다.	구분	일반직	기능직	정무·별정직	비율	<u>47%</u> <u>이상</u>	<u>52.5%</u> <u>이내</u>	0.5% 이내	<table border="1"><tr><th>구분</th><th>일 반 직</th><th>정무·별정직</th></tr><tr><td>비율</td><td><u>99.5% 이상</u></td><td>0.5% 이내</td></tr></table>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u>전문경력관</u> 및 연구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구분	일 반 직	정무·별정직	비율	<u>99.5% 이상</u>	0.5% 이내
구분	일반직	기능직	정무·별정직												
비율	<u>47%</u> <u>이상</u>	<u>52.5%</u> <u>이내</u>	0.5% 이내												
구분	일 반 직	정무·별정직													
비율	<u>99.5% 이상</u>	0.5% 이내													

현행	행	개	정	안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table><tr><td>구분</td><td>4급 이상</td><td>5급</td><td>6급</td><td>7급</td><td>8급·9급</td></tr><tr><td>비율</td><td>2% 이내</td><td>8.5% 이내</td><td>33% 이내</td><td>44% 이내</td><td>12.5% 이상</td></tr></table> 2. 기능직공무원 <table><tr><td>구분</td><td>6급</td><td>7급</td><td>8급</td><td>9급</td></tr><tr><td>비율</td><td>8% 이내</td><td>20% 이내</td><td>36% 이내</td><td>36% 이상</td></tr></table> 3. 연구직공무원 <table><tr><td>구분</td><td>연구관</td><td>연구사</td></tr><tr><td>비율</td><td>-</td><td>100%</td></tr></table> 4. 별정직공무원 <table><tr><td>구분</td><td>5급 상당</td><td>6급 상당</td><td>7급 상당</td><td>8급·9급 상당</td></tr><tr><td>비율</td><td>25% 이내</td><td>-</td><td>75% 이상</td><td>-</td></tr></table> 5. 교육전문직원 <table><tr><td>구분</td><td>장학관·교육연구관</td><td>장학사·교육연구사</td></tr><tr><td>비율</td><td>30% 이내</td><td>70% 이상</td></tr></table>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비율	2% 이내	8.5% 이내	33% 이내	44% 이내	12.5% 이상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8% 이내	20% 이내	36% 이내	36% 이상	구분	연구관	연구사	비율	-	100%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9급 상당	비율	25% 이내	-	75% 이상	-	구분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비율	30% 이내	70% 이상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table><tr><td>구분</td><td>4급 이상</td><td>5급</td><td>6급</td><td>7급</td><td>8급·9급</td><td>전문경력관</td></tr><tr><td>비율</td><td>2% 이내</td><td>8.5% 이내</td><td>33% 이내</td><td>44% 이내</td><td>12.4% 이상</td><td>0.1% 이내</td></tr></table> 〈삭 제〉 2. 연구직공무원〈현행과 같음〉 〈삭 제〉 3. 특정직공무원〈현행과 같음〉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2% 이내	8.5% 이내	33% 이내	44% 이내	12.4% 이상	0.1% 이내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비율	2% 이내	8.5% 이내	33% 이내	44% 이내	12.5% 이상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8% 이내	20% 이내	36% 이내	36% 이상																																																											
구분	연구관	연구사																																																													
비율	-	100%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9급 상당																																																											
비율	25% 이내	-	75% 이상	-																																																											
구분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비율	30% 이내	70% 이상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2% 이내	8.5% 이내	33% 이내	44% 이내	12.4% 이상	0.1% 이내																																																									

현행							개정안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기관별 직급별	합계	경상북도 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 기관)	지역 교육청 (소속 기관)	공립 각급 학교		단위 기관별 직급별	합계	경상북도 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 기관)	지역 교육청 (소속 기관)	공립 각급 학교	
합 계	5,259		-				총 계	5,279		-			
정 무 직	1		-				정무직 계	1		1			
일반직	소 계	2,530		-			교육감	1		1			
	3 급	3		3			일반직 계	4,884		-			
	3~4급	4		4			3급	3		3			
	4 급	19	1	17	1		3~4급	4		4			
	5급 이하	2,504		-			4급	19	1	17	1		
기능직	소 계	2,345		-			5급 이하 소계	4,854	-				
	5급 이하	2,345		-			전문경력관 소계	4		-			
연구직	소 계	6		-			연구직 계	6		-			
	연구사	6		-			연구사	6		-			
별정직	소 계	4		-			특정직 계	388					
	5급 상당 이하	4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48	-	24	24	-	
교육전문직원	소 계	373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40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교육연구관	48	-	24	24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	325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12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무상
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는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단, 학생통학구역 지정이 없는 학교는 해당 학교
소재 읍·면·동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말한다.

제30조 제목 중 “납기”를 “납부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 중 “연 4퍼센트”를 “연 3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연 6퍼센트”를 “연 3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 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을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은 삭제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 교환차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제1항 중 “변상금을”를 “변상금을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로 한다.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를 각각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로 하고,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라 과오납된 가산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2항·제4항, 제33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35조의2, 제59조제1항, 제60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0조 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35조의2, 제5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조(대부료의 납기) ①(생략) ②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3. (생략) ③(생략) 〈신설〉	제27조의2(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는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단, 학생통학구역 지정이 없는 학교는 해당 학교 소재 읍·면·동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말한다. 제30조(대부료의 납부 기한) ①(현행과 같음) ②----- -----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 ~3. (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33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3. (생략)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 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연 3퍼센트 1.~3. (현행과 같음) ②— 연 3퍼센트 ③— 연 3퍼센트 1.~4.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행	개정안
⑤영 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제59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②(생략) 〈신설〉 제60조~제64조(생략)	〈삭제〉 제35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 교환차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변상금을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 1.~3.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60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라 과오납된 가산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61조~제65조(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12월 17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도지사는 무료법률상담실을 타 기관 및 단체와 네트워크화
하여 상담을 실시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상담방법 등) ----- ----- ----- ①~②(생략) (신설)	제6조(상담방법 등) ----- ----- ----- ①~②(현행과 같음) ③도지사는 무료법률상담실을 타 기관 및 단체와 네트워크화하여 상담을 실시 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12월 17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통행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저상버스”란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말한다.
3.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4. “광역이동지원센터”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이를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시켜 주는
도 단위 이동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군,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효과적인 협조요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포함하는 경상북도 교통
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②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 및
시·군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4. 장애인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저상버스 도입·운영) 도지사는 저상버스 도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저상버스 운행 점검 등)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특별교통수단 운영) ①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연중 24시간 운행
2. 운전자의 이용자 승·하차 지원
3.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한 즉시 신청과 예약 신청
4. 다른 시·도와 도내 시·군간 형평성을 고려한 요금책정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지원

②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지역간 연계운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접수 및 처리
2.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및 상담
3.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다른 시·도 및 시·군 이동지원센터와 연계 운영
5. 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재정지원) ①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저상 버스를 도입하여 운행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교육) ①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대상 교육계획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약자의 이해 및 유형별 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 기관에 위탁하거나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홍보)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시책을 주민과 교통약자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3년 11월 27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 이유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도와 시·군의 소관사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시장·군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삭제, 조문의 정비 등 수정

2. 주요 내용

-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1호).
- 시·도와 시·군 소관사무를 명확히 구분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7조, 안 제14조).
- 업무구분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안 제5조제1항, 안 제9조제2항).
- 시·군 업무를 삭제함(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10조제2항).

3. 참고 사항 : 없음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제1호 “자”를 “사람”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도지사”로, “도로관리청 등”을 “시·군, 도로관리청 등”으로 한다.
- 안 제7조 “도지사 및 시장·군수”를 “도지사”로 한다.
-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안 제9조제2항 “시장·군수는”를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로, “협력”을 “노력”으로 한다.
- 안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 안 제14조 “도지사와 시장·군수”를 “도지사”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제2조(정의) (생략)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 를 말한다. 2~4. (생략)	제2조(정의) (생략) 1. _____ _____ 사람 . _____ _____ 사람 을 말한다. 2~4. (현행과 같음)	조문정비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 등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 1항의 효과적인 협조요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도지사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시·군, 도로관리청 등 _____. ②도지사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지방자치법 제 9조 및 10조에 따라 시장·군수 수정 협조기관에 시군을 추가함. 지방자치법 제 9조 및 10조에 따라 시장·군수 수정
제7조(저상버스 도입·운영)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저상 버스 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3. (생략)	제7조(저상버스 도입·운영) 도지사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3.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법 제 9조 및 10조에 따라 시장·군수 수정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제8조(저상버스 운행 점검 등) ①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시정 요구된 개선계획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개선계획이 제출된 후 1년 동안의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이행여부 점검결과가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시장·군수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대한 재정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저상버스 운행 점검 등)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10조에 따라 시장·군수 삭제
제9조(특별교통수단 운영) ①(생략) 1~5. (생략) ②시장·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지역간 연계운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교통수단 운영) ①(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②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 ----- ----- 노력-----.	지방자치법 제9조 및 10조에 따라 시장·군수 수정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제10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생략) ②시장·군수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차고지 운영과 통신망 연결 등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생략) ④(생략)	제10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현행과 같음) ②<삭제>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법 제9조 및 10조에 따라 시장·군수 업무 삭제
제14조(홍보) <u>도지사</u>와 <u>시장·군수</u>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주민과 교통약자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4조(홍보) <u>도지사</u>----- ----- ----- -----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10조에 따라 시장·군수 수정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12월 17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및 취업 애로계층(이하 “청년 미취업자 등”이라 한다)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청년 미취업자 등의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미취업자”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나이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취업 애로계층”이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등 도지사가 취업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에 청년 미취업자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청년 미취업자 등의 고용 촉진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및 추진체계
2.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3. 취업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고용촉진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중소기업과 청년미취업자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취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①도지사는 청년 미취업자 등이 도지사가 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는 청년 미취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금 지급대상자)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 등으로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7조(지원금 지급대상 기업) 도지사는 중소기업 중 업종의 종류, 규모,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금 지급 대상 기업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급 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도지사는 청년 미취업자 등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12월 17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등) ①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도지사는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특성, 교육훈련, 취업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실태조사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및 지역 특성 반영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역량 진단 및 직업교육·훈련
2.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 유망 직종 선정 및 취업 지원
3.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 취업지원
4.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 함양 및 인식개선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위하여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경상북도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경북새일지원본부 운영 등) ①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는 경북새일지원본부(이하 “새일본부”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새일본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원체계 구축
2.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미지정 지역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3. 여성회관의 취업지원기능 전환유도
4. 취업지원과 교육
5. 취업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6. 직업훈련 및 취업 후 사후관리

7. 그 밖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업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새일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위탁방법과 절차 등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 및 학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경상북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12월 17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 범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한 살기좋은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하여 경상북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2.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목적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시민단체”란 범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과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범질서 확립과 안전확보,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도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장, 경상북도 교육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 또는 청소년 분야 전문가
2. 유관기관 · 단체의 관계자
3. 범죄예방 및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범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간사는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범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항과 시민 단체의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8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 위원 소속 기관, 단체 등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전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과 사회단체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 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2조(회의) ①협의회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지원 등) ①도지사는 협의회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정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3년 12월 11일

제 안 자 : 행정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 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중복적인 용어 및 문안 등을 수정함.

2. 주요 내용

- 조례명을 “경상북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함.
- 안 제1조와 안 제3조의 “경상북도 지역치안협의회”를 “경상북도 치안협의회”로 함(안 제1조, 안 제3조).
-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함(안 제2조제1호).
-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를 “협의회 위원의 소속 기관·단체”로 규정하고 조문을 정비함(안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 그 밖의 조문 정비(안 제7조제2호, 안 제14조제1항·제2항·제3항)

3.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명을 “경상북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 안 제1조와 안 제3조의 “경상북도 지역치안협의회”를 “경상북도 치안협의회”로 하며, 안 제3조 제목 “지역치안협의회”를 “치안협의회”로 하고, 안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 안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제1항의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를 “협의회 위원의 소속 기관·단체”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 안 제14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u>경상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u> 제1조(목적) ----- ----- ----- ----- <u>경상북도 지역치안협의회</u> ----- ----- -----.	<u>경상북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u> 제1조(목적) ----- ----- ----- ----- <u>경상북도 치안협의회</u> ----- ----- -----.	- '경상북도', '지역' 같은 의미의 단어 (중복)
제2조(정의) (생략) 1. “아동·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으로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3. (생략)	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1. “<u>사회적 약자</u>”란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2.~3. (제정안과 같음)	- 사회적 약자를 정의하여 조문 정비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 ----- ----- ----- -----<u>경상북도 지역치안협의회</u>----- ----- -----.	제3조(치안협의회 설치) ----- ----- ----- ----- ----- -----<u>경상북도 치안협의회</u>----- ----- -----.	- '경상북도', '지역' 같은 의미의 단어 (중복)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제7조(협의회 기능) (생략) 1. (생략) 2. <u>아동·청소년 및 노인과 부녀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u> 3. (생략)	제7조(협의회 기능)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u>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u> 3. (제정안과 같음)	- 사회적 약자를 정의하여 조문 정비
제8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생략) ③<u>실무협의회</u> 위원은 <u>협의회 소속 기관·단체 실무자로 구성한다.</u> ④(생략)	제8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 <u>위원의 소속 기관·단체</u> ----- ----- ②(제정안과 같음) ③<삭제> ③ (제정안과 같음)	- 실무위원회 위원 참여 기관 명시 - 제1항과 제3항 중복
제14조(예산지원 등) ①도지사는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안전 확보,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②(생략) ③(생략)	제14조(예산지원 등) ①<삭제> ①(제정안과 같음) ②(제정안과 같음)	- 도지사의 사업수행 조문은 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와 무관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12월 17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 제6절 제34조, 제35조,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4조를 제37조로 한다.

제 6 절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34조(과세표준과 세율)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15원으로 한다.

제35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한
화력에 대하여 제34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
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부과대상지역)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지역은 경상북도 행정관할구역 전지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u>제6절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u>
〈신설〉	<u>제34조(과세표준과 세율)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15원으로 한다.</u>
〈신설〉	<u>제35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한 화력에 대하여 제34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u>
〈신설〉	<u>제36조(부과대상지역)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경상북도 행정관할구역 전지역으로 한다.</u>
<u>제34조(과세표준과 세율) (생략)</u>	<u>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현행 제34조와 같음)</u>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12월 17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
한다.

3.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1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도지사는 예산을 지방의회
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른 국제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의한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제22조제2항 중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5항 중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일반재산 대부의 준용)”을 “(준용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 중 “사용료의 요율”을 “행정재산의 사용료 요율”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11조의3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는 제38조의2를 준용한다.

제28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도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단,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frac{\text{당해 건물의 (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 총 공용면적}}{\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times \frac{\text{당해 건물의 (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 총 전용면적}}{\text{당해 건물의 (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 총 전용면적}}$$

○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당해 부지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text{당해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④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중 “연 4퍼센트”를 “연 3퍼센트”로,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같은 조 제3항 중 “연 6퍼센트”를 “연 3퍼센트”로, 같은 조 제5항 중 “연 5퍼센트”를 “연 3퍼센트”로 한다.

제3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영 제45조제2항의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 중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를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로 한다.

제4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 11. 8.) 이전부터 도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지를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

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다.

6.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하는 경우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 시·군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 하는 경우

제63조제1항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3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제3항, 제38조제1항, 제

3항 및 제5항,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심의회 업무) ①심의회는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u>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u> 4. <u>일반재산의 용도변경</u> 5. (생략)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u>」 (이하 “<u>영</u>”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4. (생략)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생략)	제5조(심의회 업무) ①심의회는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1조 및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u>」 (이하 “<u>영</u>”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삭제〉 5. (현행과 같음) ②----- ----- -----. 1. 영 제7조제2항----- ----- ----- 2. ~4.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도지사는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7. (생략) 〈신설〉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7. (현행과 같음) ②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른 국제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의한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생략)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현행과 같음) ②_____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③_____ 관리수탁자_____ _____ _____ 관리수탁자_____ _____ _____ 관리수탁자_____ _____ _____ 관리수탁자_____ _____ _____ 관리수탁자_____ _____ _____ 관리수탁자_____ _____

현행	개정안
⑤일반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생략)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②(생략) ③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3. (생략) 〈신설〉 ④(생략)	⑤———— 관리수탁자 ———— ————— ————— ————— ⑥(현행과 같음) 제23조(준용규정) ①행정재산의 사용료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영 제11조의3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는 제38조의2를 준용한다.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②(현행과 같음) ③————— ————— 1.~ 3. (현행과 같음) 4.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 활동을 목적으로 도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단,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③(생략)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생략)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생략)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③(생략)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③(현행과 같음) ④_____ _____.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frac{\text{당해 건물의 (빌딩의 경우 해당층의) 총 공용면적}}{\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times \frac{\text{당해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 총 전용면적}}{\text{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frac{\text{당해 부지 면적}}{\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times \text{당해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현행과 같음) ②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3. (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4. (생략) 〈신설〉 ②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연 3퍼센트----- ----- -----. 1. ----- 지방자치단체----- ----- 2.~ 4. (현행과 같음)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삭제>

현행	개정안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④(생략) ⑤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제39조(조성원가의 매각)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4. (생략)	③_____ _____ 연 3퍼센트 _____. 1.~4. (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⑤_____ _____ _____ _____ 연 3퍼센트 _____.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영 제45조1항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 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영 제45조2항의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조성원가의 매각) _____ _____ _____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 _____ _____. 1.~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40조(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익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 할 수 있다. 5. (생략)	제40조(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3. (현행과 같음) 4.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 11. 8) 이전부터 도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지를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다.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제63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영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4. (생략) ②(생략) 〈신설〉	6.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 단체가 직접 종교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시·군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제63조(변상금등의 분할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4.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로 한다.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12월 17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도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1. 생존 애국지사에게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2. 애국지사 사망시 조의금 100만원 지급
3. 생존 애국지사에게 명절 및 관련기념일 등에 위문 또는 위문품 제공
4.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경상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경상북도 관할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법 적용대상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급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법 제39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6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대상자 사망 후 지급된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12월 17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축산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사료첨가제,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위생적인 사육관리를 통한 생태계와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인증친환경축산물”이란 법 제19조(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유기식품 등의 인증 또는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축산물을 말한다.

3. “안전관리인증기준”이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 인체 위해요소를 확인·평가,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4. “안전관리인증농장”이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은 농장(작업장, 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환경친화축산농장”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농장을 말한다.
 6. “동물복지축산농장”이란 「동물보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농장을 말한다.
 7. “친환경축산업 농장”이란 인증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심사하여 지정한 농장(생산자 단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친환경축산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친환경축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축산업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친환경축산환경보전 및 개선대책
3. 항생·항균제 및 화학약품 등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축산업의 기술개발 및 보급
5. 친환경축산업의 교육 및 홍보
6. 인증친환경축산물의 생산·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7. 안전관리인증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정확대 방안
8. 친환경축산업 농장의 육성 및 지원
9. 그 밖에 친환경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내용) 도지사는 제4조의 육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축산업의 기술개발 및 보급
2. 친환경축산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3. 친환경축산에 관한 교육·훈련
4. 친환경축산물의 위생 및 품질 관리
5. 친환경축산업 관련 기관·단체 육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소비촉진) ①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인증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인증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친환경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등에 도내에서 생산된 인증축산물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친환경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육성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축산업 육성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축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축산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비상설 기구로 하고 중요한 심의·의결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구성한다.

제8조(구성과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친환경축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친환경축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장
4. 친환경축산업 육성업무 담당 국장
5. 그 밖에 관련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필요에 따라 위촉하며, 위원회 개최 후 자동 해촉 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친환경축산업 육성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회의 및 수당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친환경축산업 농장 지정 등) ①도지사는 도내 인증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는 안전관리인증농장과 정부기관으로부터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농장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거쳐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이 변경되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친환경축산업 농장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친환경축산업 농장의 지원)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업 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시설 개·보수 및 용자 지원 시 우대
2. 도지사 지정 친환경축산업 농장 표지판 및 안내간판 지원
3. 친환경축산업 농장이 생산하는 인증친환경축산물의 소비 촉진 활동 지원
4. 도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한 홍보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업무의 위탁) ①이 조례에 따른 친환경축산업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3년 11월 26일

제안자 : 농 수 산 위 원 장

1. 수정 이유

- 친환경축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인증축산물의 소비 촉진이 필수이나 제외되어 있어 수정 제안함.

2. 주요 골자

- 친환경축산업물의 소비촉진을 활성화를 위해 제5조 다음으로 「제6조(소비촉진), 제1항,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인증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도지사는 인증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친환경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기관 등에 도내에서 생산된 인증축산물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삽입하고, 그 이후 조항은 물려서 원안대로 한다.

3.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친환경축산업물의 소비촉진을 활성화를 위해 제5조 다음으로
「제6조(소비촉진), 제1항,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인증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등 필요한 비
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도지사는 인증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친환경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등에 도내에서 생산된 인증축산물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삽입하고, 그 이후 조
항은 물려서 원안대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제6조(소비촉진) ①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인증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인증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친환경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등에 도내에서 생산된 인증축산물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친환경축산물소비촉진을 위하여 신규 삽입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신규조항 삽입으로 순연
제7조(구성과 운영)	제8조(구성과 운영)	"
제8조(회의 및 수당 등)	제9조(회의 및 수당 등)	"
제9조(친환경축산업 농장 지정 등)	제10조(친환경축산업 농장 지정 등)	"
제10조(친환경축산업 농장의 지원)	제11조(친환경축산업 농장의 지정)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
제12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

경상북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12월 17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빗물 관리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재해예방 및 빗물의 활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빗물 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빗물 침투시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빗물을 인위적으로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2. 빗물 저류시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빗물을 인위적으로 저류 또는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②제1항에 따른 빗물 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관리기준은 「자연 재해대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제3조(빗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빗물 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빗물 관리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제16조에 따른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빗물 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빗물 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 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빗물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①도지사는 빗물 관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 및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빗물 관리시설의 현황 및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통계 및 빗물관리 정책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빗물 관리시설의 설치 및 권고) ①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 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 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 시설
4.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5. 그 밖에 빗물 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써 도지사가 정하는 시설

②제1항에 따라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재해예방 또는 지하수 함양 기능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빗물 관리시설의 개선 권고) 도지사는 빗물 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빗물 관리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빗물 관리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빗물 관리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빗물관리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시설로써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시설

제8조(빗물 관리시설 설치·지원) ①도지사는 빗물 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도지사의 권고에 따라 시설을 개선한 자에 대하여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빗물 관리시설의 설치·개선 등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지원요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 관리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④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빗물 관리시설 홍보 등)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빗물 관리시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시설의 확산 및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2. 빗물관리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제10조(빗물 관리위원회) 빗물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 빗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소관업무담당국장, 도의회의원 및 수질·

빛물관리 또는 수자원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12월 17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의2 중 “생활지도과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을”를 “적정
규모학교육성추진단”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의2(한시기구의 설치) 한시기구로 생활지도과와 적정 규모학교육성추진단을 둔다.	제3조의2(한시기구의 설치) ————— 적정규모학교육성 추진단을 —————.	제3조의2(한시기구의 설치)———— 적정 규모학교육성추진단 을 —————.
제19조 삭제<2010. 1. 7>	제19조(소속기관) ①실천과 체험 활동 중심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원 소속으로 경상북도학생수련 원을 둔다. ②경상북도학생수련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9조(현행과 같음)
제25조(설치) ①(생 략) ②도립도서관의 명칭·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5조(설치) ①(현행과 같음) ②————— 별표 2와 ———.	제25조(현행과 같음)
제35조(공공도서관) ①~③ (생 략) ④공공도서관의 명칭·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35조(공공도서관)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별표 3과 ———.	제35조(현행과 같음)
제36조(아영장) ①~③(생 략) ④아영장의 명칭·위치는 별 표 3과 같다.	제36조(아영장) ①~③(현행과 같음) ④————— 별표 4와 ———.	제36조(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신설〉</u>	<u>〔별표 1〕</u> 경상북도학생수련원의 명칭 및 위치 (제19조제2항 관련) <table><tr><th>수련원명</th><th>위 치</th></tr><tr><td>경상북도청도 학생수련원</td><td>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장길 155-27</td></tr><tr><td>경상북도안동 학생수련원</td><td>경북 안동시 도산면 녹전로 20</td></tr></table>	수련원명	위 치	경상북도청도 학생수련원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장길 155-27	경상북도안동 학생수련원	경북 안동시 도산면 녹전로 20	(현행과 같음)																														
수련원명	위 치																																					
경상북도청도 학생수련원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장길 155-27																																					
경상북도안동 학생수련원	경북 안동시 도산면 녹전로 20																																					
<u>〔별표 1〕 ~ 〔별표 2〕</u>	<u>〔별표 2〕 ~ 〔별표 3〕</u>	(현행과 같음)																																				
<u>〔별표 3〕</u> 학생야영장의 명칭 및 위치 (제36조제4항 관련)	<u>〔별표 4〕</u> 학생야영장의 명칭 및 위치 (제36조제4항 관련)	(현행과 같음)																																				
<table><tr><th>야영장명</th><th>위 치</th></tr><tr><td>경상북도청도 학생야영장</td><td>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장길 155-27</td></tr><tr><td>경상북도안동 학생야영장</td><td>경북 안동시 도산면 녹전로 20</td></tr><tr><td>경상북도상주 학생야영장</td><td>경북 상주시 화북면 문장로 1503</td></tr><tr><td>경상북도울진 학생야영장</td><td>경북 울진군 근남면 진북길 1</td></tr><tr><td>경상북도포항 학생야영장</td><td>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2805</td></tr><tr><td>경상북도문경 학생야영장</td><td>경북 문경시 동로면 금천로 1859</td></tr><tr><td>경상북도봉화 학생야영장</td><td>경북 봉화군 소천면 홍점길 31</td></tr><tr><td>경상북도의성 학생야영장</td><td>경북 의성군 다인면 자미로 492</td></tr></table>	야영장명	위 치	경상북도청도 학생야영장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장길 155-27	경상북도안동 학생야영장	경북 안동시 도산면 녹전로 20	경상북도상주 학생야영장	경북 상주시 화북면 문장로 1503	경상북도울진 학생야영장	경북 울진군 근남면 진북길 1	경상북도포항 학생야영장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2805	경상북도문경 학생야영장	경북 문경시 동로면 금천로 1859	경상북도봉화 학생야영장	경북 봉화군 소천면 홍점길 31	경상북도의성 학생야영장	경북 의성군 다인면 자미로 492	<table><tr><th>야영장명</th><th>위 치</th></tr><tr><td><u>〈삭제〉</u></td><td><u>제</u></td></tr><tr><td><u>〈삭제〉</u></td><td><u>제</u></td></tr><tr><td>경상북도상주 학생야영장</td><td>경북 상주시 화북면 문장로 1503</td></tr><tr><td>경상북도울진 학생야영장</td><td>경북 울진군 근남면 진북길 1</td></tr><tr><td>경상북도포항 학생야영장</td><td>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2805</td></tr><tr><td>경상북도문경 학생야영장</td><td>경북 문경시 동로면 금천로 1859</td></tr><tr><td>경상북도봉화 학생야영장</td><td>경북 봉화군 소천면 홍점길 31</td></tr><tr><td>경상북도의성 학생야영장</td><td>경북 의성군 다인면 자미로 492</td></tr></table>	야영장명	위 치	<u>〈삭제〉</u>	<u>제</u>	<u>〈삭제〉</u>	<u>제</u>	경상북도상주 학생야영장	경북 상주시 화북면 문장로 1503	경상북도울진 학생야영장	경북 울진군 근남면 진북길 1	경상북도포항 학생야영장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2805	경상북도문경 학생야영장	경북 문경시 동로면 금천로 1859	경상북도봉화 학생야영장	경북 봉화군 소천면 홍점길 31	경상북도의성 학생야영장	경북 의성군 다인면 자미로 492	
야영장명	위 치																																					
경상북도청도 학생야영장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장길 155-27																																					
경상북도안동 학생야영장	경북 안동시 도산면 녹전로 20																																					
경상북도상주 학생야영장	경북 상주시 화북면 문장로 1503																																					
경상북도울진 학생야영장	경북 울진군 근남면 진북길 1																																					
경상북도포항 학생야영장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2805																																					
경상북도문경 학생야영장	경북 문경시 동로면 금천로 1859																																					
경상북도봉화 학생야영장	경북 봉화군 소천면 홍점길 31																																					
경상북도의성 학생야영장	경북 의성군 다인면 자미로 492																																					
야영장명	위 치																																					
<u>〈삭제〉</u>	<u>제</u>																																					
<u>〈삭제〉</u>	<u>제</u>																																					
경상북도상주 학생야영장	경북 상주시 화북면 문장로 1503																																					
경상북도울진 학생야영장	경북 울진군 근남면 진북길 1																																					
경상북도포항 학생야영장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2805																																					
경상북도문경 학생야영장	경북 문경시 동로면 금천로 1859																																					
경상북도봉화 학생야영장	경북 봉화군 소천면 홍점길 31																																					
경상북도의성 학생야영장	경북 의성군 다인면 자미로 492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3년 11월 25일

제 안 자 : 교 육 위 원 장

1. 수정 이유

- 2014년 2월 28일자로 한시기구 설치·운영기간이 종료되는 생활지도과를 상설기구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안 제3조의2 중 “생활지도과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을”를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을”로 함.

3. 참고사항 : 없 음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2 중 “생활지도과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을”를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을”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의2(한시기구의 설치) 한시기구로 생활지도과와 적정 규모학교육성추진단을 둔다.	제3조의2(한시기구의 설치) ————— 적정규모학교육성 추진단을 —————.	제3조의2(한시기구의 설치)———— 적정 규모학교육성추진단 을 —————.
제19조 삭제<2010. 1. 7>	제19조(소속기관) ①실천과 체험 활동 중심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원 소속으로 경상북도학생수련 원을 둔다. ②경상북도학생수련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9조(현행과 같음)
제25조(설치) ①(생 략) ②도립도서관의 명칭·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5조(설치) ①(현행과 같음) ②————— 별표 2와 ———.	제25조(현행과 같음)
제35조(공공도서관) ①~③ (생 략) ④공공도서관의 명칭·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35조(공공도서관)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별표 3과 ———.	제35조(현행과 같음)
제36조(아영장) ①~③(생 략) ④아영장의 명칭·위치는 별 표 3과 같다.	제36조(아영장) ①~③(현행과 같음) ④————— 별표 4와 ———.	제36조(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신설〉</u>	<u>〔별표 1〕</u> 경상북도학생수련원의 명칭 및 위치 (제19조제2항 관련) <table><tr><th>수련원명</th><th>위 치</th></tr><tr><td>경상북도청도 학생수련원</td><td>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장길 155-27</td></tr><tr><td>경상북도안동 학생수련원</td><td>경북 안동시 도산면 녹전로 20</td></tr></table>	수련원명	위 치	경상북도청도 학생수련원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장길 155-27	경상북도안동 학생수련원	경북 안동시 도산면 녹전로 20	(현행과 같음)																														
수련원명	위 치																																					
경상북도청도 학생수련원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장길 155-27																																					
경상북도안동 학생수련원	경북 안동시 도산면 녹전로 20																																					
<u>〔별표 1〕 ~ 〔별표 2〕</u>	<u>〔별표 2〕 ~ 〔별표 3〕</u>	(현행과 같음)																																				
<u>〔별표 3〕</u> 학생야영장의 명칭 및 위치 (제36조제4항 관련) <table><tr><th>야영장명</th><th>위 치</th></tr><tr><td>경상북도청도 학생야영장</td><td>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장길 155-27</td></tr><tr><td>경상북도안동 학생야영장</td><td>경북 안동시 도산면 녹전로 20</td></tr><tr><td>경상북도상주 학생야영장</td><td>경북 상주시 화북면 문장로 1503</td></tr><tr><td>경상북도울진 학생야영장</td><td>경북 울진군 근남면 진북길 1</td></tr><tr><td>경상북도포항 학생야영장</td><td>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2805</td></tr><tr><td>경상북도문경 학생야영장</td><td>경북 문경시 동로면 금천로 1859</td></tr><tr><td>경상북도봉화 학생야영장</td><td>경북 봉화군 소천면 홍점길 31</td></tr><tr><td>경상북도의성 학생야영장</td><td>경북 의성군 다인면 자미로 492</td></tr></table>	야영장명	위 치	경상북도청도 학생야영장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장길 155-27	경상북도안동 학생야영장	경북 안동시 도산면 녹전로 20	경상북도상주 학생야영장	경북 상주시 화북면 문장로 1503	경상북도울진 학생야영장	경북 울진군 근남면 진북길 1	경상북도포항 학생야영장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2805	경상북도문경 학생야영장	경북 문경시 동로면 금천로 1859	경상북도봉화 학생야영장	경북 봉화군 소천면 홍점길 31	경상북도의성 학생야영장	경북 의성군 다인면 자미로 492	<u>〔별표 4〕</u> 학생야영장의 명칭 및 위치 (제36조제4항 관련) <table><tr><th>야영장명</th><th>위 치</th></tr><tr><td>〈삭제〉</td><td>〈제〉</td></tr><tr><td>〈삭제〉</td><td>〈제〉</td></tr><tr><td>경상북도상주 학생야영장</td><td>경북 상주시 화북면 문장로 1503</td></tr><tr><td>경상북도울진 학생야영장</td><td>경북 울진군 근남면 진북길 1</td></tr><tr><td>경상북도포항 학생야영장</td><td>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2805</td></tr><tr><td>경상북도문경 학생야영장</td><td>경북 문경시 동로면 금천로 1859</td></tr><tr><td>경상북도봉화 학생야영장</td><td>경북 봉화군 소천면 홍점길 31</td></tr><tr><td>경상북도의성 학생야영장</td><td>경북 의성군 다인면 자미로 492</td></tr></table>	야영장명	위 치	〈삭제〉	〈제〉	〈삭제〉	〈제〉	경상북도상주 학생야영장	경북 상주시 화북면 문장로 1503	경상북도울진 학생야영장	경북 울진군 근남면 진북길 1	경상북도포항 학생야영장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2805	경상북도문경 학생야영장	경북 문경시 동로면 금천로 1859	경상북도봉화 학생야영장	경북 봉화군 소천면 홍점길 31	경상북도의성 학생야영장	경북 의성군 다인면 자미로 492	(현행과 같음)
야영장명	위 치																																					
경상북도청도 학생야영장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장길 155-27																																					
경상북도안동 학생야영장	경북 안동시 도산면 녹전로 20																																					
경상북도상주 학생야영장	경북 상주시 화북면 문장로 1503																																					
경상북도울진 학생야영장	경북 울진군 근남면 진북길 1																																					
경상북도포항 학생야영장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2805																																					
경상북도문경 학생야영장	경북 문경시 동로면 금천로 1859																																					
경상북도봉화 학생야영장	경북 봉화군 소천면 홍점길 31																																					
경상북도의성 학생야영장	경북 의성군 다인면 자미로 492																																					
야영장명	위 치																																					
〈삭제〉	〈제〉																																					
〈삭제〉	〈제〉																																					
경상북도상주 학생야영장	경북 상주시 화북면 문장로 1503																																					
경상북도울진 학생야영장	경북 울진군 근남면 진북길 1																																					
경상북도포항 학생야영장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2805																																					
경상북도문경 학생야영장	경북 문경시 동로면 금천로 1859																																					
경상북도봉화 학생야영장	경북 봉화군 소천면 홍점길 31																																					
경상북도의성 학생야영장	경북 의성군 다인면 자미로 492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12월 17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 강동초등학교단구분교장병설유치원, 단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각각 삭제하고, 옥계동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해마루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해마루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구미시 산호대로 953

「별표 2」의 단북초등학교, 구룡포초등학교구남분교장, 강동초등학교단구분교장, 함창초등학교송덕분교장란을 각각 삭제하고, 운곡초등학교란 다음에 울곡초등학교란을, 옥계동부초등학교란 다음에 해마루초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울곡초등학교	김천시 남면 운남리 589
해마루초등학교	구미시 산호대로 953

「별표 3」의 선산여자중학교란을 삭제하고, 선산중학교 위치란 중 “구미시 선산읍 단계서4길 18”을 “구미시 선산읍 선상서로 14길 19-20”으로 변경한다.

「별표 4」의 선산여자고등학교, 지보고등학교란을 각각 삭제하고, 평해공업고등학교 명칭란 중 “평해공업고등학교”를 “한국 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로 변경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유치원		【별표 1】 유치원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신	설	해마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구미시 산호대로 953
강동초등학교단구 분교장병설유치원	경주시 강동면 단구안계길 62-1	삭	제
단북초등학교병 설유치원	의성군 단북면 중련길 22-8	삭	제
【별표 2】 초등학교		【별표 2】 초등학교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신	설	울곡초등학교	김천시 남면 운남리 589
신	설	해마루초등학교	구미시 산호대로 953
단북초등학교	의성군 단북면 중련길 22-8	삭	제
구룡포초등학교구 남분교장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안로 4252번길 11-9	삭	제
강동초등학교단구 분교장	경주시 강동면 단구안 계길 62-1	삭	제
함창초등학교송덕 분교장	상주시 이안면 이안 2길 3	삭	제
【별표 3】 중학교		【별표 3】 중학교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선산여자중학교	구미시 선산읍 선상서로14길 19-20	삭	제
선산중학교	구미시 선산읍 단계서4길 18	선산중학교	구미시 선산읍 선상서로14길 19-20
【별표 4】 고등학교		【별표 4】 고등학교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선산여자고등학교	구미시 선산읍 선상서로14길 19-20	삭	제
지보고등학교	예천군 지보면 지보로 167-7	삭	제
평해공업고등학교	울진군 평해읍 월송정로 422	한국원자력마이 스터고등학교	울진군 평해읍 월송정로 422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12월 17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7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일반직 및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과 아목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을 각각 “지방공무원(교육장 제외)”으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일반직 및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직속
기관장 제외)”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지방공무원(5급
이상 및 직속기관장 제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교육전문직원(직속기관장 제외)의 6개월 미만의 휴·복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역교육청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지역교육청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지역교육청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1. ~ 16.(생략)	1. ~ 16.(현행과 같음)
17.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관할지역유·초·중·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타교육기관(장학관·교육연구관 및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 제외)에 대한 다음 각목에 관한 사항	17.----- ----- ----- ----- -----
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임용(신규임용·승진임용 및 강임 제외) 및 경징계	가.----- ----- -----
나. <u>기능직공무원의 임용(승진임용 제외) 및 경징계</u>	나. <삭제>
다. 6급 이하 <u>일반직 및 기능직</u> 공무원 중 대우공무원 선발	다.----- <u>일반직</u> ----- -----
라. <u>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겸직</u> 허가	라. <u>지방공무원(교육장 제외)</u> -----
마. ~ 사.(생략)	마. ~ 사.(현행과 같음)
아. <u>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기</u> 승급과 호봉재획정	아. <u>지방공무원(교육장 제외)</u> -----
18. ~ 34.(생략)	18. ~ 34.(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6조(각급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각급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2. (생략) 3. <u>일반직 및 기능직</u> 공무원의 정기승급과 호봉재획정(고등학교·특수학교장) 4. (생략)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u>일반직 및 기능직</u> 공무원의 정기승급과 호봉재획정 2. <u>6급 이하 일반직</u> 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 〈<u>신설</u>〉	제6조(각급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 1. 2. (현행과 같음) 3. <u>일반직</u>----- ----- 4. (현행과 같음)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 1. <u>지방공무원(직속기관장 제외)</u> ----- 2. <u>지방공무원(5급 이상 및 직속기관장 제외)</u>----- 3. <u>교육전문직원(직속기관장 제외)의 6개월 미만의 휴·복직</u>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12월 17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경상
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학교체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지역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학생건강체력평가 위탁 단체 또는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5.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위탁 단체
또는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역위원회의 구성) ①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교육 및 체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학교체육에 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지역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지역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설치) ①지역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지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관한 각종 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역교육청 소속 지역위원회 설치·운영) ①지역교육청교육장 소속으로 지역위원회를 둔다.

②제3조제2호 내지 제6호, 제4조 내지 12조의 규정은 지역교육청 소속 학교체육지역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3년 9월 3일

제안자 : 교 육 위 원 장

1. 수정 이유

- 본 조례안에 지역교육청소속 지역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잦은 행정기구 명칭 변경, 준용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게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안 제1조 중 “경상북도교육청”을 “경상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하고,
- 안 제4조제2항 중 “체육건강과장”을 “체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 안 제9조 중 “제3항”을 삭제 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 안 제13조제2항 “지역교육청 소속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를 “제3조제2호 내지 제6호, 제4조 내지 12조”의 규정은 지역교육청 소속 학교체육지역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로 하고,
- 안 “제14조”를 삭제함.

3. 참고사항 : 없 음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경상북도교육청”을 “경상북도교육청 및 지역교
육청 소속”으로 하고,

안 제4조제2항 중 “체육건강과장”을 “체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안 제9조 중 “제3항”를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안 제13조제2항 “지역교육청 소속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를 “제3조제2호 내지 제6호, 제4조 내지
12조의 규정은 지역교육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에 이를 준용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로 한다.

안 “제14조”를 삭제함.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u>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u>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경상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u> ----- -----.	지역교육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추가
제4조(지역위원회의 구성) ①(생략) ②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u>체육건강과장이 된다.</u> ③(생략) 1. ~ 3.(생략)	제4조(지역위원회의 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 ----- <u>체육</u> <u>업무담당과장이 된다.</u> ③(생략) 1. ~ 3.(현행과 같음)	찾은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함.
제9조(지역위원회의 구성) ① ~ ②(생략) ③긴급을 요하는 의안으로서 <u>지역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안건 또는 단순·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 심의할 수 있다.</u> ④(생략)	제4조(지역위원회의 구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u>삭제</u> ③(현행과 같음)	불필요한 조항

원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13조(지역교육청 소속 지역위원회 설치·운영) ①(생략) ②<u>지역교육청 소속 지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u>	제13조(지역교육청 소속 지역위원회 설치·운영) ①(현행과 같음) ②<u>제13조② 제3조제2호 부터 제6호까지, 제4조 부터 제12조까지, 제14 조의 규정은 지역교육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 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 장'으로 본다.</u>	준용에 대한 해석이 명확 하지 않음
제14조(운영세칙) 이 조 례에 정한 것 외에 지 역위원회의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지역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	제14조(운영세칙) 삭제	불필요한 조문

二 규 칙 안

-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안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12월 17일

경상북도의회 규칙 제 호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관사항 원칙) ①상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또는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 범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관 통·폐합 또는 조직개편 등으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변경
되거나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연계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는 주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관계 상임위원회에서 특정
분야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와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하나의 기관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원회에서 분리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 간에 협의를 거쳐 일정과 범위를 정한다.
- ④원활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 결정사항을 재조정 하거나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특별위원회 구성 등) ①조례 제2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3조 제3항에 의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②감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③감사·조사위원회는 효율적인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감사계획 협의 및 통보) ①상임위원장은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해당연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이하 “감사계획”이라 한다)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제2차 정례회 집회 35일전(10월 1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제2차 정례회 집회 25일전(10월 11일)까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한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2. 동일한 대상기관에 대한 관계 상임위원회 간의 경합 감사의 조정
3. 선정된 대상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여부
4. 선정된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5. 선정된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의 적정 여부
6. 그 밖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5조(감사계획 확정 및 보고) ①상임위원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협의결과를 통보받으면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확정한다. ②상임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사무조사) ①조례 제3조제1항의 “특정사안”이라 함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중 특정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②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사 발의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조사 발의서가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조사위원장이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제안하는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이하 “조사계획”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내용을 조사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기관 승인) ①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 제5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 각 단서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감사나 조사대상기관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본회의에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의결을 하려면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의 취지설명을 듣고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감사계획 승인 및 이송) ①각 상임위원장은 해당연도 감사계획을 본회의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을 종합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본회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제2차 정례회기 직전 임시회에서 승인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도지사와 교육감은 이송 받은 감사계획을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서류제출요구,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 업무보고서를 제2차 정례회 집회 3일전(11월 2일)까지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과 단축) ①조례 제7조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면 해당 조사위원회나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로 그 활동의 경과와 연장 또는 단축의 이유 및 기간을 명시한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장이나 단축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들은 후 이를 의결한다.

제10조(보고 및 서류제출) ①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에도 필요한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관 위원장의 협조를 받아 의장이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보고요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서류제출요구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서는 따로 제출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도지사나 교육감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과 소관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①본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계획에 포함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증인·참고인의 불출석 이유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12조(송달방법)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한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선서) 조례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의 사전 안내문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제14조(증언) ①증인은 공개될 경우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증인은 거부사유를 감사나 조사 현장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증인의 증언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서면에 의한 증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④의장 또는 위원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증인의 증언이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단시킬 수 있으며, 폭언이나 폭력행사 등으로 원활한 감사 또는 조사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인을 지명하여 퇴장시킬 수 있다.

제15조(비용지급의 방법) ①조례 제9조의3 제3항에 따라 증인·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본인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구에 의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비용 청구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청구서에 수령인의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무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또는 조사장소 등) ①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또는 조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원 및 사무보조자석, 기관 관계자석, 방청석 등을 각각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②대상기관에 대한 방문 감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감사 또는 조사장을 현지에 설치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조사장의 질서유지와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0조부터 제8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조례 제10조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현지확인 감사 또는 조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미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계획에 포함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제척과 회피의 절차)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의 중지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해 의원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당해 의원이 제1항의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어 본회의의 의결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의장이 제2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이 경우 당해 의원은 표결 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 신상발언을 할 수 있다.

④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의 회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또는 위원이 감사 또는 조사활동 중에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18조(감사 또는 조사결과보고) ①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 활동을 종료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집행기관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를 실시한 상임위원회는 감사위원회가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6호 서식, 제17호 서식 및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보고서 제출과 본회의 보고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서식 중 “시정·처리요구사항”이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기관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기관이 그 타당성 또는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며, “건의·촉구사항”이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해당기관이 앞으로 그 개선이나 발전방안 등을 연구·검토하도록 요망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도지사와 교육감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이송 받은 감사 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대상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지적 사항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도지사와 교육감은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별지 제19호 서식 및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연 2회(2월, 11월) 이상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 또는 조사 기록) ①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기록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의장과 위원장은 감사 또는 조사와 관계된 기록·문서 기타 자료를 정리하여 보존하고,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 부과 및 고발) ①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의장이 위반사실을 통보한 경우 도지사·교육감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고발은 본회의에 있어서는 재적 의원 10명 이상이 연서하여 발의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소속위원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되,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한다.

③의장은 본회의에서 고발하기로 의결한 경우 증거자료 조사나 재판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지정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고발장을 작성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위원회

1. 감사 목적
2. 감사기간
3. 대상기관
4. 감사반 편성
 - 편성방침, 감사위원회명, 위원명단, 감사보조요원
5. 감사세부일정 및 장소

일 시 (장 소)	대 상 기 관	출석요구 증인 (관계공무원)	주 요 내 용

6. 감사요령
 - 가. 감사방법
 - 나. 주요감사사항
 - 다. 감사진행순서
 - 라. 현지확인 진행순서
7.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 가. 서류제출요구 : 별첨
 - 나. 증인(참고인) 출석범위
8.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방법
9. 기타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 서식]

행정사무조사 발의서

수신자 : 경상북도의회의장

제 목 : ○○○○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불임과 같이 ○○○○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합니다.

불임 : ○○○○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발의 이유서) 1부. 끝.

년 월 일

발의자 : ○ ○ ○ (서명 또는 날인)

외 ○○인

(발의 찬성의원 서명부 불임)

○○○○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발의 이유서)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 ○ ○ . ○ ○ ○
의원(○인)
(찬성자 ○인)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기관
4. 조사범위 및 내용
5. 특별위원회 구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별지 제3호 서식]

○○○○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위원회

1. 개요

- 가. 조사목적
- 나. 관련근거

2. 세부추진계획

- 가. 조사기간
- 나. 조사위원회 또는 조사반 편성
- 다. 조사대상 기관
- 라. 주요 조사사항(조사대상 사무범위)
- 마. 조사일정 및 장소
- 바. 조사요령(착안사항)
- 사. 조사진행순서
- 아. 증인 등의 출석범위
- 자. 조사대상기관에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자료
- 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1) 보고 요구서
 - 2)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
 - 3) 서류(자료)제출 요구서 목록 및 작성요령 등

[별지 제4호 서식]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위원장

제○○○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제○차 ○○○○
위원회(. . .)에서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5호(또는 제6호)에 따라
다음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임.

감사(조사)대상 기관	성격 및 근거	감사(조사)이유

※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가능

[별지 제5호 서식]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단축) 요구서

수신자 : 경상북도의회의장

제 목 : ○○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단축) 요청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단축)코자 요청합니다.

위원회 명	조사활동기간 연장(단축)		연장(단축) 이유
	당 초	변 경	
	~ (일간)	~ (일간)	

년 월 일

○○ 조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또는

○○○의원 (서명 또는 날인)

(의원 10명 서명 또는 날인)

※ 필요시 서식 변경 가능

[별지 제6호 서식]

보 고 요 구 서

수신자 :

제 목 : ○○○에 관한 보고 요구

○○○○년 ○○월 ○○일 제○○○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차 본회의(제○차 ○○○○위원회)에서 ○○○○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 기관에 대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추진상황 등)을 청취
하기로 의결하였기에 통보하오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2. 보고일시 :
3. 보고장소 :
4. 보 고 자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붙임 : ○○○에 관한 보고 요구서 1부. 끝.

경상북도의회의장

직인

문서번호(시행일)

※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가능

[별지 제7호 서식]

서류제출 요구서

수신자 :

제 목 : ○○○에 관한 서류제출 요구

○○○○년 ○○월 ○○일 제○○○회 경상북도의회
(임사회) 제○차 본회의(제○차 ○○○○위원회)에서 ○○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
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경상북도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에 관하여 서류(자료) 제출을 요구하오니, 기일
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 제출장소 :
3. 제출수량 :
4. 유의사항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붙임 : ○○○에 관한 서류제출 요구서 1부. 끝.

경상북도의회의장

직인

문서번호(시행일)

※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가능

[별지 제8호 서식]

증인 출석 요구서

수신자 :

제 목 : 증인 출석 요구

1. ○○○○년 ○○월 ○○일 제○○○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차 본회의(제○차 ○○○○위원회)에서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인출석을 요구하오니,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일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 석 일 :

나. 출석장소 :

다. 요구사유 :

라. 준 비 물 : 출석요구서, 인장, 신분증

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붙임 : 증인 출석 요구서 1부. 끝.

경상북도의회의장

직인

문서번호(시행일)

※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가능

[별지 제9호 서식]

참고인 출석 요구서

수신자 :

제 목 : 참고인 출석 요구

○○○○년 ○○월 ○○일 제○○○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차 본회의(제○차 ○○○○위원회)에서 ○○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
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경상북도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오니,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 석 일 :

나. 출석장소 :

다. 요구사유 :

라. 준 비 물 : 출석요구서, 인장, 신분증

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붙임 : 참고인 출석 요구서 1부. 끝.

경상북도의회의장

직인

문서번호(시행일)

※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가능

[별지 제10호 서식]

증인 · 참고인 불출석 이유서

수신자 : 경상북도의회의장

제 목 : 증인 · 참고인 출석 요구에 대한 회신(불출석 이유서 제출)

1. 귀 의회에서 ○○○○○-○○○호(. . .)로
본인에게 송달한 증인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였으나, ○○○
○○ 이유로 귀 의회에 출석할 수 없어

2.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이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증빙서류(진단서 등) 1부. 끝.

년 월 일

증인 · 참고인 : ○ ○ ○ (서명 또는 날인)

※ 필요시 서식 변경 가능

[별지 제11호 서식]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상북도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의장의 통보등으로 도지사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 ○○○○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반장)

[별지 제12호 서식]

증인 · 참고인 출석 비용 청구서

청구금액 : 금 원(₩)

- 출 석 인 :
- 출석일시 :
- 출석장소 :
- 청구내역

(단위 : 원)

구 분	종별(등급)	지급기준액	청구금액	비 고
운 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계				

- 입금계좌

- 거래은행 : 은행(지점)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상기 본인은 경상북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하였기에 출석비용을 위계좌로 입금 의뢰함.

년 월 일

주소 :

성명 : ○○○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의회의장(○○○○위원장) 귀하

※ 필요시 서식 변경 가능

[별지 제13호 서식]

현지확인 감사(조사)실시 통보서

수신자 :

(경유)

제 목 : ○○○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조사)실시 통보

○○○○년 ○○월 ○○일 제○○○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차 본회의(제○차 ○○○○위원회)에서 ○○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
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경상북도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 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
하였기에 통보하오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확인반 구성 :
4. 대 상 :
5. 방 법 :

붙임 : ○○○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조사)실시계획 1부. 끝.

경상북도의회의장

적인

문서번호(시행일)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가능

[별지 제14호 서식]

감사(조사) 제척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의결내용 :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로 ○○○ 의원에 대하여 특정사안에 한하여 감사(조사) 참여를 제척
2. 신청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
3. 신청이유 :

○○○○년 ○○월 ○○일 제○○○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제○차 본회의(제○차 ○○○○위원회) 의결로 감사(조사) 위원에서 제척되었으나, 위 의결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오니, 다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 의원 : ○ ○ ○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의회의장(○○○○위원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회 피 신 청 서

1. 회피신청 사안 :
2. 회피신청 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
3. 회피신청 이유 :

위 사안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어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공정을 기하고자 회피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회피신청 의원 : ○ ○ ○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의회의장(○○○○위원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위원회

1. 감사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 기관
4. 감사실시 경과
 - 가. 감사반 편성·운영
 - 나. 감사일정

일 시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5. 주요감사 실시내용(소관별, 사항별)

6. 감사결과 처리의견

- 가.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대상기관	소계	시정·처리	건의·촉구	제도개선

- 나. 시정·처리요구사항
- 다. 건의·촉구요구사항
- 라. 제도개선사항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8. 중요근거서류(붙임)

[별지 제17호 서식]

○○○○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위원회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기관
4. 조사실시 경과
 - 가. 조사반 편성·운영
 - 나. 조사일정

일 시	대상기관	조사장소	비 고

5. 주요조사 실시내용(소관별, 사항별)

6. 조사결과 처리의견

- 가.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대상기관	소계	시정·처리	건의·촉구	제도개선

- 나. 시정·처리요구사항
- 다. 건의·촉구요구사항
- 라. 제도개선사항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8. 중요근거서류(별첨)

[별지 제18호 서식]

감사(조사)결과 의견서

○○○○위원회

○ 대상기관 : ○ 위원 : (서명 또는 날인)

구 분	내 용	비고
시정·처리요구사항 (건)		
건의·촉구사항 (건)		
제도개선사항 (건)		
기 타 사 항 (건)		

[별지 제19호 서식]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시정·처리

(단위 : 건)

상임위원회별	지적사항	처 리 결 과				
		계	완료	추진 중	검토 중	조치불가
계						

○ 건의·촉구

(단위 : 건)

상임위원회별	지적사항	처 리 결 과				
		계	완료	추진 중	검토 중	조치불가
계						

○ 제도개선 : 동일서식 활용

처리결과 분류기준

- 완 료 : 임시 또는 긴급조치를 포함하여 중·단기적으로 조치가 완료된 사항
- 추진 중 : 중앙부처 등에 건의 또는 시책에 반영하여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
- 검토 중 : 법령상의 규제 또는 예산 미확보, 민원발생, 중앙부처 등과 협의 지연 등으로 착수하지 못한 사항
- 조치불가 : 검토결과 필요성이 없거나 시행이 전혀 불가능한 사항

[별지 제20호 서식]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

소관 상임위원회		구분		연번		담당부서	
제 목							
지적사항 요 지							
현 황							
처리상황							
진 도	완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담 당 자	국장 , 과장 , 담당 , 실무자						

※ 구분란 : 시정·처리, 건의·촉구로 표기

[별지 제21호 서식]

고 발 장

1. 고 발 인
2. 피고발인
3. 고발취지
4. 범죄사실
5. 고발이유
6. 증거자료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 사실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고발인 경상북도의회의장

직인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인적증거, 증거서류, 증거물, 기타 증거)

○○지방검찰청 귀중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12월 17일

경상북도의회 규칙 제 호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를 각각 제91조부터 제95조까지로 하고, 제89조 및 제9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 방송하여야 한다.

제90조(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연설, 예산안에 대한 자치단체의 시정 연설, 공청회, 중요안건의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

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과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에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88조(녹음·녹화 등) ①~④(생략)	제88조(녹음·녹화 등) ① ~ ④(현행과 같음)
〈신설〉	제89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 방송하여야 한다.
〈신설〉	제90조(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연설, 예산안에 대한 자치단체의 시정연설, 공청회, 중요안건의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과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에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정계의 요구와 회부) ①~⑤ (생략)	제91조 (현행 제89조와 같음)
제90조(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제한) ①~②(생략)	제92조 (현행 제90조와 같음)
제91조(의사의 비공개) (생략)	제93조 (현행 제91조와 같음)
제92조(심문 및 변경) ①~②(생략)	제94조 (현행 제92조와 같음)
제93조(정계의 의결과 선포) ①~②(생략)	제95조 (현행 제93조와 같음)

▮ 예 산 안

-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1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 합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 경상북도지사

2.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3. 11. 11.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13. 11. 2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 11. 29 : 상정 · 질의)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 12. 2 : 상정 · 질의)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 12. 3 : 상정 · 질의)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 12. 4 : 상정 · 질의)
-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 12. 5 : 상정 · 질의)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 12. 6 : 상정 · 질의,
토론 · 의결)

3.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김 승 수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4. 2014년도 재정운용 방향

- 세입여건이 금년 대비 호전 될 전망(4% 성장)이나 불안 전성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등 중점투자
- 경제 활력 회복·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충 및 국민 안전 확보, 서민생활안정과 삶의 질 제고에 중점
- 인건비 등 기본경비, 법정·의무적 경비 최우선 반영 및 도청이전, 국·도정 과제사업,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 최우선 투자
 - 창조경제실현과 신성장 동력 창출
 - 누구나 살고 싶은 신명나는 농·어촌
 - 복지경북, 문화경북 구현
 - 韓, 江·山·海를 활용한 경북 재창조 프로젝트
 - SOC인프라 확충과 도청이전신도시 조성에 중점

5. 예 산(안)

가. 총 괄

1) 총 규 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6,993,982	100.0	6,561,805	100.0	432,177	6.6
일 반 회 계	5,895,400	84.3	5,528,000	84.2	367,400	6.6
특 별 회 계	1,098,582	15.7	1,033,805	15.8	64,777	6.3
의료급여기금운영	456,796	6.5	470,602	7.2	△13,806	△2.9
치 수 사 업	42,398	0.6	39,960	0.6	2,438	6.1
경북도립대학운영	9,329	0.1	9,120	0.1	209	2.3
광 역 교 통 시 설	9,254	0.1	10,313	0.2	△1,059	△10.3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52,300	0.7	51,298	0.8	1,002	2.0
학교용지부담금	6,712	0.1	2,512	0.0	4,200	167.2
지역개발기금운영	521,793	7.5	450,000	6.9	71,793	16.0

※ 재정자립도(도본청) : 2012(22.5%) / 2013(22.1%) / 2014(19.6%)

2) 총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6,993,982	100.0	6,561,805	100.0	432,177	6.6
자 체 수 입	2,142,004	30.6	1,899,916	29.0	242,087	12.7
지방세 수입	1,248,000	17.8	1,130,600	17.2	117,400	10.4
세 외 수 입	175,221	2.5	149,355	2.3	25,865	17.3
경상적 수입	66,632	1.0	63,372	1.0	3,259	5.1
임시적 수입	108,589	1.6	85,983	1.3	22,606	26.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8,783	10.3	619,961	9.5	98,822	15.9
의 존 수 입	4,851,979	69.5	4,661,889	71.0	190,089	4.1
지방교부세	1,026,732	14.7	1,084,340	16.5	△57,609	△5.3
보 조 금	3,630,247	52.0	3,372,549	51.4	257,698	7.6
지 방 채	195,000	2.8	205,000	3.1	△10,000	△4.9

3) 총괄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6,993,982	100.0	6,561,805	100.0	432,177	6.6
일 반 공 공 행 정	1,256,600	18.0	1,104,991	16.8	151,609	13.7
공공질서및안전	340,680	4.9	356,709	5.4	△16,029	△4.5
교 육	13,188	0.2	10,115	0.2	3,073	30.4
문 화 및 관 광	397,007	5.7	415,892	6.3	△18,885	△4.5
환 경 보 호	494,725	7.1	523,558	8.0	△28,833	△5.5
사 회 복 지	2,119,018	30.3	1,846,958	28.2	272,060	14.7
보 건	82,729	1.2	79,852	1.2	2,877	3.6
농 립 해 양 수 산	935,685	13.4	917,276	14.0	18,410	2.0
산 업 중 소 기 업	179,743	2.6	171,282	2.6	8,461	5.0
수 송 및 교 통	309,044	4.4	316,587	4.8	△7,543	△2.4
국토및지역개발	391,726	5.6	369,796	5.6	21,930	5.9
과 학 기 술	21,984	0.3	14,951	0.2	7,033	47.0
예 비 비	58,954	0.8	68,090	1.0	△9,136	△13.4
기 타	392,899	5.6	365,748	5.6	27,151	7.4

나) 조직별(총괄)

(단위 : 백만원, %)

실 국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6,993,982	100.0	6,561,805	100.0	432,177	6.6
의 회 사 무 처	17,056	0.2	13,299	0.2	3,757	28.3
대 변 인	4,506	0.1	2,890	0.0	1,616	56.0
감 사 관 실	1,188	0.0	621	0.0	566	91.2
미래전략기획단	3,350	0.1	5,785	0.1	△2,435	△42.1
여 성 정 책 관	464,024	6.6	372,161	5.7	91,863	24.7
기 획 조 정 실	910,089	13.0	783,687	11.9	126,402	16.1
창조경제산업실	189,283	2.7	166,659	2.5	22,624	13.6
일자리투자본부	79,654	1.1	86,092	1.3	△6,438	△7.5
안 전 행 정 국	533,866	7.6	500,664	7.6	33,201	6.6
문화관광체육국	393,810	5.6	408,345	6.2	△14,535	△3.6
농 축 산 국	634,778	9.1	617,141	9.4	17,636	2.9
환 경 산 림 국	694,759	9.9	722,525	11.0	△27,765	△3.8
보 건 복 지 국	1,710,511	24.5	1,531,838	23.3	178,674	11.7
건설도시방재국	742,170	10.6	811,331	12.4	△69,162	△8.5
동해안발전추진단	99,470	1.4	95,345	1.5	4,125	4.3
도청이전추진본부	196,405	2.8	135,768	2.1	60,638	44.7
소 방 본 부	242,448	3.5	231,843	3.5	10,605	4.6
농 업 기 술 원	51,962	0.7	52,065	0.8	△103	△0.2
공 무 원 교 육 원	5,623	0.1	5,440	0.1	182	3.4
보건환경연구원	9,701	0.1	9,185	0.1	516	5.6
경북도립대학교	9,329	0.1	9,120	0.1	209	2.3

다) 성질별(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6,993,982	100.0	6,561,805	100.0	432,177	6.6
인 건 비	305,330	4.4	285,177	4.4	20,153	7.1
물 건 비	149,233	2.1	145,889	2.2	3,344	2.3
경 상 이 전	2,977,150	42.6	2,594,432	39.5	382,718	14.8
자 본 지 출	2,500,709	35.8	2,541,225	38.7	△40,516	△1.6
용 자 및 출 자	277,700	4.0	228,500	3.5	49,200	21.5
내 부 거 래	667,389	9.5	584,288	8.9	83,101	14.2
예비비 및 기타	116,471	1.7	182,294	2.8	△65,823	△36.1

나. 일반회계

1)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5,895,400	100.0	5,528,000	100.0	367,400	6.6
지 방 세 수 입	1,248,000	21.2	1,130,600	20.5	117,400	10.4
세 외 수 입	75,756	4.7	52,128	0.9	23,628	45.3
경상적 수입	22,000	0.4	21,224	0.4	775	3.7
임시적 수입	53,756	0.9	30,903	0.6	22,853	74.0
지 방 교 부 세	1,026,732	17.4	1,084,340	19.6	△57,609	△5.3
보 조 금	3,235,598	54.9	2,975,727	53.8	259,871	8.7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309,314	5.3	260,205	4.7	49,109	18.9

2)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 기 능 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5,895,400	100.0	5,528,000	100.0	367,400	6.6
일 반 공 공 행 정	734,809	12.5	654,991	11.9	79,817	12.2
공공질서및안전	340,680	5.8	356,709	6.5	△16,029	△4.5
교 육	8,578	0.2	5,584	0.1	2,994	53.6
문 화 및 관 광	397,007	6.7	415,892	7.5	△18,885	△4.5
환 경 보 호	494,725	8.4	523,558	9.5	△28,833	△5.5
사 회 복 지	1,662,222	28.2	1,376,356	24.9	285,866	20.8
보 건	82,729	1.4	79,852	1.4	2,877	3.6
농 립 해 양 수 산	935,685	15.9	917,276	16.6	18,410	2.0
산 업 중 소 기 업	127,443	2.2	119,984	2.2	7,459	6.2
수 송 및 교 통	299,790	5.1	306,274	5.5	△6,484	△2.1
국토및지역개발	342,616	5.8	327,324	5.9	15,292	4.7
과 학 기 술	21,984	0.4	14,951	0.3	7,033	47.0
예 비 비	58,954	1.0	68,090	1.2	△9,136	△13.4
기 타	388,178	6.6	361,159	6.5	27,020	7.5

나) 조직별(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실 국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5,895,400	100.0	5,528,000	100.0	367,400	6.6
의 회 사 무 처	17,056	0.3	13,299	0.2	3,757	28.3
대 변 인	4,506	0.1	2,890	0.1	1,616	55.9
감 사 관 실	1,188	0.0	621	0.0	566	91.2
미래전략기획단	3,350	0.1	5,785	0.1	△2,435	△42.1
여 성 정 책 관	464,024	7.9	372,161	6.7	91,863	24.7
기 획 조 정 실	388,296	6.6	333,687	6.0	54,609	16.4
창조경제산업실	136,983	2.3	115,361	2.1	21,622	18.7
일자리투자본부	79,654	1.4	86,092	1.6	△6,438	△7.5
안 전 행 정 국	533,866	9.1	500,664	9.1	33,201	6.6
문화관광체육국	393,810	6.7	408,345	7.4	△14,535	△3.6
농 축 산 국	634,778	10.8	617,141	11.2	17,636	2.9
환 경 산 림 국	694,759	11.8	722,525	13.1	△27,765	△3.8
보 건 복 지 국	1,253,715	21.3	1,061,236	19.2	192,480	18.1
건설도시방재국	683,806	11.6	758,547	13.7	△74,741	△9.9
동해안발전추진단	99,470	1.7	95,345	1.7	4,125	4.3
도청이전추진본부	196,405	3.3	135,768	2.5	60,638	44.7
소 방 본 부	242,448	4.1	231,843	4.2	10,605	4.6
농 업 기 술 원	51,962	0.9	52,065	0.9	△103	△0.2
공 무 원 교 육 원	5,623	0.1	5,440	0.1	182	3.4
보건환경연구원	9,701	0.2	9,185	0.2	516	5.6

다) 성질별(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5,895,400	100.0	5,528,000	100.0	367,400	6.6
인 건 비	301,485	5.1	281,458	5.1	20,027	7.1
물 건 비	144,074	2.4	140,362	2.5	3,712	2.6
경 상 이 전	2,494,250	42.3	2,099,196	38.0	395,055	18.8
자 본 지 출	2,442,336	41.4	2,487,272	45.0	△44,936	△1.8
융 자 및 출 자	25,300	0.4	25,000	0.5	300	1.2
내 부 거 래	429,000	7.3	426,622	7.7	2,378	0.6
예비비 및 기타	58,954	1.0	68,090	1.2	△9,136	△13.4

다. 특별회계

1)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1,098,582	100.0	1,033,805	100.0	64,777	6.3
의료급여기금운영	456,796	41.6	470,602	45.5	△13,806	△2.9
치 수 사 업	42,398	3.9	39,960	3.9	2,438	6.1
경북도립대학운영	9,329	0.9	9,120	0.9	209	2.3
광역교통시설	9,254	0.8	10,313	1.0	△1,059	△10.3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52,300	4.8	51,298	5.0	1,002	2.0
학교용지부담금	6,712	0.6	2,512	0.2	4,200	167.2
지역개발기금운영	521,793	47.5	450,000	43.5	71,793	16.0

2) 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1,098,582	100.0	1,033,805	100.0	64,777	6.3
세 외 수 입	99,464	9.1	97,227	9.4	2,237	2.3
경상적 수입	44,632	4.1	42,148	4.1	2,484	5.9
임시적 수입	54,833	5.0	55,079	5.3	△247	△0.5
보 조 금	394,648	36.0	396,822	38.4	△2,174	△0.6
지 방 채	195,000	17.8	180,000	17.4	15,000	8.3
보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	409,469	37.3	359,756	34.8	49,713	13.8

3) 특별회계 세출예산

가) 기 능 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1,098,582	100.0	1,033,805	100.0	64,777	6.3
일 반 공 공 행 정	521,791	47.5	449,999	43.5	71,792	16.0
교 육	4,610	0.4	4,531	0.4	79	1.7
사 회 복 지	456,796	41.6	470,602	45.5	△13,806	△2.9
산 업 중 소 기 업	52,300	4.8	51,298	5.0	1,002	2.0
수 송 및 교 통	9,254	0.8	10,313	1.0	△1,059	△10.3
국 토 및 지 역 개 발	49,110	4.5	42,472	4.1	6,638	15.6
기 타	4,720	0.4	4,589	0.4	131	2.9

나) 조직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1,098,582	100.0	1,033,805	100.0	64,777	6.3
기 획 조 정 실	521,793	47.5	450,000	43.5	71,793	16.0
예산담당관실	521,793	47.5	450,000	43.5	71,793	16.0
창조경제산업실	52,300	4.8	51,298	5.0	1,002	2.0
에너지산업과	52,300	4.8	51,298	5.0	1,002	2.0
보 건 복 지 국	456,796	41.6	470,602	45.5	△13,806	△2.9
사 회 복 지 과	456,796	41.6	470,602	45.5	△13,806	△2.9
건설도시방재국	58,364	5.3	52,785	5.1	5,579	10.6
균 형 개 발 과	9,254	0.8	10,313	1.0	△1,059	△10.3
건축디자인과	6,712	0.6	2,512	0.2	4,200	167.2
치 수 방 재 과	42,398	3.9	39,960	3.9	2,438	6.1
경북도립대학교	9,329	0.9	9,120	0.9	209	2.3
경북도립대학교	9,329	0.9	9,120	0.9	209	2.3

다) 성질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1,098,582	100.0	1,033,805	100.0	64,777	6.3
인 건 비	3,844	0.4	3,719	0.4	125	3.4
물 건 비	5,159	0.5	5,526	0.5	△368	△4.1
경 상 이 전	482,900	44.0	495,237	47.9	△12,336	△2.5
자 본 지 출	58,373	5.3	53,953	5.2	4,420	8.2
용 자 및 출 자	252,400	23.0	203,500	19.7	48,900	24.0
내 부 거 래	238,389	21.7	157,666	15.3	80,723	51.2
예비비 및 기타	57,517	5.2	114,204	11.1	△56,687	△49.6

라. 계속비 사업

- 2014년도 : 계속비 사업 없음.

마. 지방채

- 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자 금 선	발 행 액	발 행 조 건			비 고
			이율	상 환 기 간	상환재원	
계		80,000				
도청 신도시 청사 건립	경상북도 통합관리기금	60,000	3.0	3년 거치 5년 상환	도비	내부거래
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경상북도 통합관리기금	20,000	3.0	3년 거치 5년 상환	도비	내부거래

※ 부족재원(80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서 회계 간 내부거래로 조달

- 지방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12월말 잔액			2014년 상환액			비 고
	계	원 금	이 자	계	원 금	이 자	
합 계	635,010	512,130	122,880	59,505	41,830	17,675	
청사정비기금	53,300	50,000	3,300	3,500	2,000	1,500	지 방 채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533,035	417,130	115,905	39,430	24,830	14,600	내부거래
경상북도 통합관리기금	48,675	45,000	3,675	16,575	15,000	1,575	내부거래

바. 채무부담행위

- 2014년도 : 채무부담행위 사업 없음.

6. 기금운용계획(안)

가.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계	전입금	융자금 회 수 (이자포함)	예탁금 원 금 수 회 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 타 수 입
합 계	601,224 (474,718)	34,867 (34,867)	46,076 (46,076)	15,300 (300)	430,530 (380,161)	58,202 (0)	15,936 (13,001)	313 (313)
통합관리기금	126,505	0	0	15,000	50,368	58,202	2,935	0
다문화가족 지원기금	1,148	960	0	0	0	0	187	0
남북교류협력기금	19	0	0	0	0	0	19	0
국제협력기금	35	0	0	0	0	0	35	0
중소기업근로자 자녀장학기금	186	0	0	0	80	0	106	0
중소기업육성기금	343,022	14,000	22,900	0	298,334	0	7,789	0
문화예술진흥기금	1,241	780	0	0	146	0	314	0
체육진흥기금	486	0	0	0	8	0	478	0
농어촌진흥기금	84,976	7,850	19,753	0	55,841	0	1,383	150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50	0	0	0	5	0	45	0
포플라장학기금	409	400	0	0	1	0	8	0
사회복지기금	768	0	1	300	122	0	344	0
재해구호기금	1,094	0	0	0	551	0	543	0
식품진흥기금	18,620	0	1,919	0	16,081	0	457	163
여성발전기금	121	0	0	0	14	0	107	0
청소년육성기금	145	0	0	0	45	0	100	0
재난관리기금	9,730	8,577	0	0	466	0	687	0
공무원주거 안정기금	12,669	2,300	1,503	0	8,466	0	399	0

※ 합계란의 ()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나.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계	비용자성 사업비	용자성 사업비	기 본 경 비	예탁금	예 치 금	차입금 원리금 상 환	예수금 원리금 상 환	기 타 지 출
합 계	601,224 (474,718)	24,108 (24,108)	63,370 (63,370)	548 (548)	138,202 (58,202)	353,269 (310,040)	18,432 (18,432)	3,277 (0)	18 (18)
통합관리기금	126,505	0	0	0	80,000	43,229	0	3,277	0
다문화가족 지원기금	1,148	0	0	0	1,147	0	0	0	0
남북교류 협력기금	19	0	0	0	18	0	0	0	0
국제협력기금	35	0	0	0	35	0	0	0	0
중소기업근로 자장학기금	186	85	0	0	100	0	0	0	0
중소기업육 성기금	343,022	12,000	3,500	0	55,000	254,090	18,432	0	0
문화예술포 진흥기금	1,241	1,050	0	17	0	174	0	0	0
체육진흥기금	486	470	0	0	15	0	0	0	0
농어촌진흥 기금	84,976	0	55,000	0	0	29,976	0	0	0
농업인학습 단체육성기금	50	50	0	0	0	0	0	0	0
포플라장학 기금	409	8	0	0	400	1	0	0	0
사회복지기금	768	625	70	0	0	73	0	0	0
재해구호기금	1,094	565	0	184	200	145	0	0	0
식품진흥기금	18,620	905	3,000	47	0	14,650	0	0	18
여성발전기금	121	120	0	0	0	0	0	0	0
청소년육성 기금	145	121	0	0	0	23	0	0	0
재난관리기금	9,730	8,100	0	300	1,287	43	0	0	0
공무원주거 안정기금	12,669	9	1,800	0	0	10,860	0	0	0

※ 합계란의 ()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다. 기금조성 규모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3년도말 조성액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2014년도말 조성액 [㉡] $d = a + b - c$	증 감 [㉢] $e = d - a$
		수 입 [㉣] b	지 출 [㉤] c		
합 계	571,712 (476,343)	155,394 (94,257)	109,753 (106,476)	617,353 (464,124)	45,641 (△12,219)
통합관리기금	95,368	61,137	3,277	153,229	57,860
다문화가족지원기금	5,072	1,147	0	6,219	1,147
남북교류협력기금	500	19	0	519	19
국제협력기금	1,000	35	0	1,035	35
중소기업근로자녀 장학기금	3,591	106	85	3,612	21
중소기업육성기금	298,334	44,688	33,932	309,090	10,756
문화예술진흥기금	9,631	1,094	1,067	9,659	28
체육진흥기금	15,921	478	470	15,929	8
농어촌진흥기금	55,841	29,136	55,000	29,976	△25,864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1,515	45	50	1,510	△5
포플라장학기금	263	408	8	663	400
사회복지기금	11,822	345	695	11,473	△350
재해구호기금	18,612	543	749	18,406	△206
식품진흥기금	16,081	2,539	3,970	14,650	△1,431
여성발전기금	3,568	107	120	3,555	△13
청소년육성기금	3,382	100	121	3,360	△21
재난관리기금	22,744	9,264	8,400	23,608	864
공무원주거안정기금	8,466	4,202	1,809	10,860	2,393

※ 합계란의 ()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7. 검토의견

가. 총 괄

- 내년도 세계 경제 여건을 살펴보면 3.6%의 낮은 성장률과 미국의 출구전략,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등으로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으나, 신흥국의 내수 확대를 통하여 선진국의 경기도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IMF, '13. 10월) ◆

구 분	2011실적	2012실적	2013전망	2014전망
세 계 경 제	3.8%	3.2%	2.9%	3.6%
우 리 나 라	3.6%	2.0%	2.8%	3.7%

- 국내경제도 세계경제의 점진적 개선과 내수회복 등에 힘입어 내년엔 3.7% 대의 성장이 예상됨.
- 내년 세입 예산은 소비·투자 등 내수경기 호전에 따라 세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부동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며,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내국세 감소분 반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비보조금이 복지수요 등으로 증가됨에 따라 전체적인 세입 규모는 확대 편성하고 있음.
- 세출은 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저출산대책 추진 등 사회복지분야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의 지속

적인 증가와 일자리 창출, 도청이전 사업, 지방선거 등으로 재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자체 SOC사업 등으로 재정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6.6%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내년도 예산(안)의**

-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6조 9,940억원**으로 전년도 6조 5,618억원에 비해 **4,322억원(6.6%)**이 증가한 것으로,
- **일반회계**는 5조 8,95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674억원(6.6%)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1조 98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48억원(6.3%)이 증가한 규모임.

◆ 예산(안) 총 규모 ◆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6,993,982	100.0	6,561,805	100.0	432,177	6.6
일 반 회 계	5,895,400	84.3	5,528,000	84.2	367,400	6.6
특 별 회 계	1,098,582	15.7	1,033,805	15.8	64,777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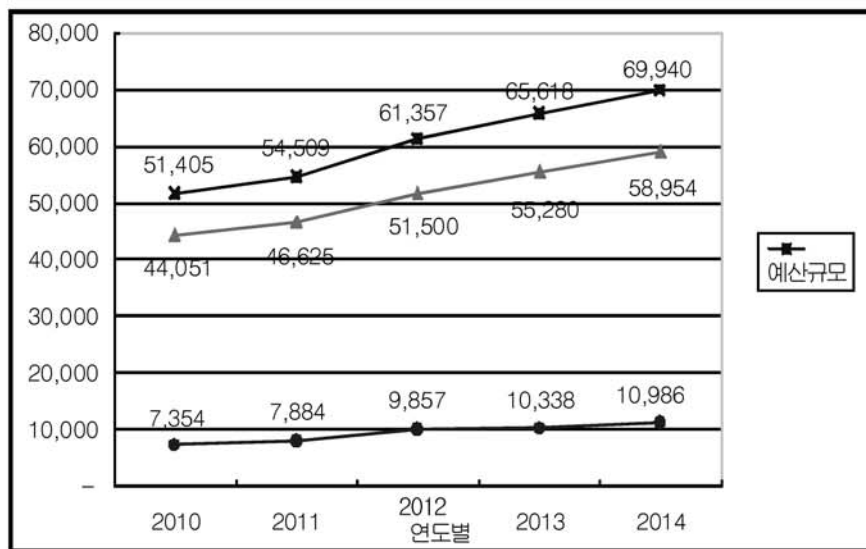
◆ 연도별 예산규모 증감 현황('10~2014) ◆

(단위 : 억원, %)

회 계 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합 계	51,405	12.3	54,509	6.0	61,357	12.6	65,618	6.9	69,940	6.6
일반회계	44,051	14.0	46,625	5.8	51,500	10.5	55,280	7.3	58,954	6.6
특별회계	7,354	3.1	7,884	7.2	9,857	25.0	10,338	4.9	10,986	6.3

◆ 연도별 예산규모 추이 ◆

(단위 : 억원)



○ 내년도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 중소기업육성기금(통합관리기금 포함) 등 18종의 기금 조성 총 규모는 6,012억원으로 전년도 5,428억원에 비해 584억원(10.8%)이 증가하였으며,
-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은 1,265억원으로 전년도 946억원에 비해 319억원(33.7%)이 증가한 규모임.

◆ 기금조성 규모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4년말 조 성 액	2013년말 조 성 액	증 감	
				%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8종	617,353 (464,124)	571,712 (476,343)	45,641 (△12,219)	8.0 (△2.6)
통 합 관 리 기 금	153,229	95,368	57,860	60.7

※ ()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합계금액임.

나. 세입부문

- 2014년도 총 세입예산(안)은 6조 9,940억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20.6%인 1조 4,23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32억원(11.2%)이 증가하였음.
- 지방세 수입은 1조 2,480억원으로
 -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보통세가 9,640억원,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목적세가 2,770억원,
- 지난해도 수입은 70억원임.
-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의 경기침체로 둔화가 예상되며, 지방소비세는 취득세 감면 보전분 반영으로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방세 수입 총규모는 전년대비 1,174억원(10.4%)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외수입**은 총 1,752억원으로
 -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666억원,
 - 재산매각 수입,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086억원임.
 - 수수료 6억원, 사업수입 1억원, 재산매각 수입 △7억원 등의 증감요인 발생으로 인하여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59억원(17.3%)이 늘어났음.
- **의존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69.4%인 4조 8,520억원으로 전년대비 1,900억원(4.1%)이 증가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1조 267억원으로 전년대비 △576억원(△5.3%)이 감액되었음.

◆ 지방교부세 증가율('2010~2014) ◆

(단위 : 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지방교부세	8,189	1.8%	8,975	9.6%	9,809	9.3%	1조 843	10.5%	1조 267	△5.3%

- 국고보조금은 3조 6,302억원으로 전년대비 2,577억원(7.6%)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지역개발분야와 다문화가족,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 사업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수입은 1,950억원으로
 - 지방채 발행규모는 당분간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할 전망이다
 -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회복하기 위하여 조기상환, 채무관리 목표제 등 지방채무 건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 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사업으로 발행될 지역개발공채는 전년도와 동일한 1,950억원임.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188억원으로 전년대비 988억원(15.9%)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일반회계 세입부족분에 대하여 통합관리기금에서 800억원 차입(신도청 신축비 600억원, 진입도로 200억원)으로 증가하였음.

다. 세출부문

1) 개 팔

-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 6조 9,940억원으로 전년도 6조 5,618억원에 비해 4,322억원(6.6%)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5조 8,954억원이고
 - 특별회계는 1조 986억원임.

2) 일반회계

□ 총 5조 8,954억원으로 전년도 5조 5,280억원에 비해 3,674억원(6.6%)이 증가한 규모임.

□ 기능별¹⁾ 편성내용으로

- 일반공공행정 798억원, 교육 부문 30억원
- 사회복지 2,859억원, 보건 부문 29억원
- 농림해양수산 부문 184억원
- 산업중소기업 7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153억원
- 과학기술 부문 70억원
- 기타 부문 27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 공공질서 및 안전 △160억원, 문화 및 관광 △189억원, 환경보호 △288억원, 수송 및 교통 부문 △65억원 및 예비비 △91억원은 감액하였음.

□ 성질별²⁾ 편성 내용으로는

- 인건비 200억원 증액
-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등 물건비 37억원 증액
- 일반보상금, 출연금, 자치단체 이전 등 경상이전 3,950억원 증액
-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 등 27억원은 증액하였으며
- 자본지출 △449억원과 예비비 및 기타 △91억원은 감액하였음.

1) 검토보고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표 참조

2) 검토보고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표 참조

3) 특별회계

- 2014년도에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치수사업, 지역개발기금 등 총 7종임.
- 예산규모는 1조 986억원으로 전년도 1조 338억원에 비해 648억원(6.3%)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원자력 발전지역 개발세 10억원, 학교용지 부담금 42억원, 지역개발기금 718억원 등 수요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음.

라. 기금운용계획

- 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총 18종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나머지 기금의 운용계획은 4,747억원임.
-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SOC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각 기금의 여유 자금을 총괄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계획은 1,265억원임.
-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이나 단기 지출이 예상되는 자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재)예치 시 시중 금리의 변동을 미리 예측하여 이자수익 발생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종합 검토의견

□ 2014년도 예산은

- 2013년 당초예산 6조 5,618억원 보다 4,322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가 6.6%, 특별회계가 6.3% 증가하였으며, 이처럼 예산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복지 정책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1,858억원(3,200→5,058)과 영·유아 무상보육료 541억원(2,129→2,670) 등 국고 보조금 2,599억원과 지방소비세 등이 증가했기 때문임.

- 내년 예산 총규모가 6.6% 늘었지만, 사회복지비 매칭 부담과 시군 재정보전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부담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자체사업 가용재원이 3,392억원으로 올해 3,624억원 보다 6.4%(△232억원)나 줄어 들고 도청이전 수요 등으로 재정부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도는 도지사과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 여비, 민간단체 지원경비, 행사·축제성 경비, 홍보성 경비 등 10~30% 감액 하는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546억원을 절감 하는 긴축 예산을 편성하였고,
-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줄인 예산을 경북미래 신성장 동력 기반구축 사업인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 143억원,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50억원, 항공전자시험평가 기반구축 48억원, 첨단메디컬 신소재 개발 36억원, 미래해양개발을 위한 수중건설로봇 개발 26억원 등에 집중 배분하였으며,
- 또한 FTA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분야 경쟁력 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금조성 예산의 구조조정 방침에도 불구하고 FTA대응 재원인 농어촌진흥기금 부담분 33억원은 전액 반영하였으며,

이밖에도 농수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사업 36억원, 농산물학교급식 지원과 시스템구축에 80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48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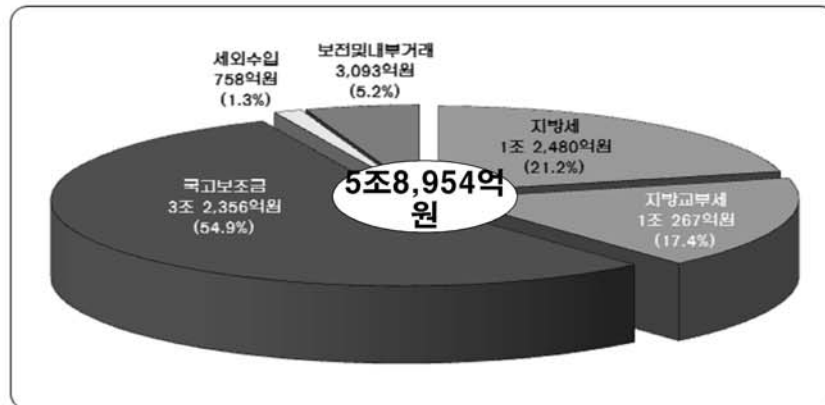
- **도청이전 등 지역균형 개발을 위하여** 신청사 건립비 1,336억원과 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568억원 등은 전액 확보하였고, 개발촉진지구 지원 430억원, 농촌마을 종합정비 1,378억원 등을 반영하였음.

□ 회계별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3,674억원(6.6%)이 증가한 5조 8,954억원으로**
 -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1조 3,238억원
 - 취·등록세 6,300, 지방소비세 3,330, 지방교육세 2,100 등
 - 지방교부세 1조 267억원('13년 대비 △576억원)
 -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8.7%(2,599억원) 증가한 3조 2,356억원
 - 순세계잉여금 1,000억원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293억원
 - 그리고 부족재원 800억원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하여 충당하였음.

[일반회계 세입]

(단위 : 억원)



-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6.3% 증가한 1조 986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등 7개의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음.
- 의료급여기금 4,568억 원, 지역개발기금 5,218억 원,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523억 원 등

□ 분야별 일반회계 재원배분 내역을 살펴보면

- 사회복지·보건 등 복지 분야가 금년대비 19.8% 증가한 1조 4,450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29.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9,357억 원(15.9%), 일반행정·교육분야 7,434억 원(12.6%), 수송·교통·지역개발분야 6,424억 원(10.9%) 환경 보호분야 4,947억 원(8.4%) 순임.

- 2014년도 시책별 중점투자사업 예산반영 현황으로는
- R&D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1,494억원
 - R&D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 차세대 건설기계 특화단지 조성 143억원
(‘13년 대비 증 133억원)
 -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50억원(신규)
 - 항공전자시험평가 기반구축 48억원(신규)
 - 미래해양개발을 위한 수중 건설 로봇개발 26억원(신규)
 - 우량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 지방기업 투자촉진사업 92억원
 - 투자기업 입지시설 지원 43억원
 - 중소기업 창업 및 운전자금 지원 140억원
 -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140억원(‘13년 대비 증 22억원)
 - 농공단지 조성 89억원(‘13년 대비 증 19억원)
 - 가가호호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경북 - 1조 7,450억원
 - 맞춤형 복지,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도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 기초노령연금 5,058억원(‘13년 대비 증 1,858억원)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2,611억원(‘13년 대비 증 4억원)
 - 장애인연금지원 430억원(‘13년 대비 증 113억원)
 -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 영·유아보육료 2,670억원(‘13년 대비 증 541억원)
 - 누리과정 744억원(‘13년 대비 증 316억원)
 - 보육돌봄서비스 355억원(‘13년 대비 증 19억원)

- 누구나 살고 싶은 산명나는 농·산·어촌 건설 - 1조 4,304억원
 - FTA 선제적 대응을 통한 농·축·수산업의 미래기반 구축을 위해
 -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140억원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142억원('13년 대비 증 27억원)
 - 축사시설 현대화 138억원('13년 대비 증 40억원)
 - 농산물 제도가공 지원 75억원('13년 대비 증 4억원)
 - 농촌마을 종합정비 1,378억원('13년 대비 증 75억원)
 - 맑고 쾌적한 청정환경 조성과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 생태하천 복원 255억('13년 대비 증 11억원)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203억원
 - 하수관거 및 하수도정비 1,410억원
 - 농어촌생활용수 및 상수도시설 개선 824억원('13년 대비 증 114억원)
- 전통문화를 기반한 문화융성을 선도하는 문화 경북 - 3,970억원
 - 찬란한 역사와 전통문화에 기반한 문화융성을 선도하기 위해
 - 3대문화권 생태·문화관광 단지조성 1,146억원
 - 세계유산 보존 51억원
 - 경주 역사문화 도시조성 39억원
 -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35억원
 -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 32억원(신규)
 - 해양실�크로드 프로젝트 20억원(신규)
 -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396억원

- SOC 등 인프라 확충과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 - 6,424억원
 - 지역발전 기반구축을 위한 SOC 등 기본인프라 구축을 위해
 -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1,297억원('13년 대비 증 187억원)
 - 지방도사업 895억원('13년 대비 증 37억원)
 - 민생현장에서 해결이 시급한 지역현안 도로사업 등에 292억원
 - 도청이전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 도청 및 의회청사 건립 1,336억원('13년 대비 증 642억원)
 - 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568억원('13년 대비 증 233억원)
 - 도청이전 종합전산 시스템 구축 등에 185억원(신규)
 - 공공시설 설치 164억원(신규)
- 도민 맞춤형 행정과 안전기반 조성으로 안심 경북 구현 - 3,407억원
 - 재해위험요소의 근원적 해소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 하천재해예방사업 994억원
 -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655억원('13년 대비 증 23억원)
 -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32억원('13년 대비 증 3억원)
 - 소방차량 및 구조구급장비 62억원
 - 119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축 71억('13년 대비 증 47억원) 등으로

- 이러한 사업은 2013년 대비 6.6%의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비 등 국비 매칭 부담 증가와 도청이전 등 재정지출 수요가 커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신성장동력 확충에 중점 투자하고,
- 특히, FTA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어업 분야 지원에 노력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한 것으로 보여짐.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 2013~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계획기간 중 세입은 연평균 약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지속적이고 안정적 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중기지방재정계획(2013~2017) 세입전망 ◆

(단위 : 억원, %)

구 분	합 계	비중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397,156	100	72,742	75,982	81,450	82,381	84,602	3.8
지방세수입	68,713	17.3	11,362	13,211	14,345	14,675	15,121	7.4
세 외 수 입	10,013	2.5	1,980	1,946	1,982	2,029	2,076	1.2
지방교부세	59,848	15.1	11,143	11,509	11,951	12,388	12,857	3.6
국고보조금	141,003	35.5	25,922	27,100	27,903	29,206	30,872	4.5
광특보조금	42,383	10.7	7,895	8,741	8,816	8,812	8,118	0.7
기 금	8,910	2.2	1,614	1,737	1,823	1,843	1,893	4.1
지 방 채	10,450	2.6	2,250	2,000	2,000	2,100	2,100	△1.7
보전수입및 내부거래	55,837	14.1	10,575	9,738	12,630	11,328	11,566	2.3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효율화와 건전성을 도모하고 중앙정부 계획과 연계성 등을 감안한 계획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삭감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구조 조정하는 등 예산심의 시 중기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투자사업 전망 ◆

(단위 : 억원, %)

구 분	합 계	비 중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397,156	100	72,742	75,982	81,450	82,381	84,602	3.8
일반공공행정	82,778	20.8	14,802	13,780	18,752	17,462	17,983	5.0
공공질서및안전	22,539	5.7	3,876	4,432	4,562	4,841	4,828	5.6
교육	634	0.2	115	123	126	132	138	4.7
문화및관광	24,591	6.2	4,846	4,881	4,963	4,939	4,961	0.6
환경보호	27,887	7.0	5,073	5,527	5,607	5,775	5,905	3.9
사회복지	102,012	25.7	19,077	19,668	20,362	21,074	21,830	3.4
보건	4,793	1.2	829	914	964	1,015	1,071	6.6
농림해양수산	54,432	13.7	9,916	10,960	10,950	11,371	11,236	3.2
산업·중소기업	11,108	2.8	1,803	2,033	2,341	2,432	2,500	8.5
수송및교통	18,682	4.7	3,314	3,895	3,637	3,769	4,067	5.3
국토및지역개발	21,250	5.4	4,173	4,711	3,881	4,071	4,414	1.4
과학기술	1,468	0.4	228	293	310	322	315	8.4
예비비	3,841	1.0	702	739	797	796	807	3.5
기타	21,142	5.3	3,987	4,026	4,197	4,382	4,549	3.4

□ 2014년도 주요 신규사업 현황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내년도 주요 신규사업 현황은 49건에 3,174억원임.
- 주요사업은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91억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98억원) 등이 있음.

◆ 2014년도 주요 신규사업 현황3) ◆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에너지 산업과	취약 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	9,177	
정책기획관실	지역 행복 생활권 협력사업	4,354	
환경정책과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	9,868	
창조과학기술과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	5,000	
신성장산업과	항공전자시험평가 기반구축 사업	4,750	

- 이러한 신규사업 투자는 선행행정절차 이행여부와 타당성 등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 사업비가 한 번 투입되면 초기의 시설사업비 외에 관리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경우도의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2013년도 주요 신규사업 현황』은 참고자료 <자료1>에 게재

□ 전년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⁴⁾ 사업

- 2014년도 당초예산 사업 중 총사업비가 5억원 이상의 사업 가운데 사업 확대 등으로 전년 예산보다 사업비가 50% 이상 증액이 있는 주요사업은 『건설 기계부품특화단지 조성부지매입』과 『로하스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등 32개 사업임.

◆ 전년대비 주요 증감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신 성 장 산 업 과	건설 기계부품특화단지 조성부지매입	9,300	1,000	8,300	830	
농 업 정 책 과	농산물체험 전시 지원 사업	2,410	195	2,215	1,136	
FTA농식품유통과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	11,425	3,198	8,227	2,573	
도 로 철 도 과	용암 선남간 국지도건설	29,255	12,670	16,585	131	
수 산 진 흥 과	로하스 수산식품거점 단지조성	6,825	3,250	3,575	110	

- 내년도 예산은 재정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은 도내 시군지역 균형

4) 『전년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사업 현황』은 참고자료 <자료2>에 게재

발전을 위해 타당성과 투자대비 효율성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출연금에 대해서

-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 등에 보조하는 경비인 출연금은 전년대비 20.0%⁵⁾가 증가한 680억원으로 당초 예산 증가율(6.6%)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공공기관 등에서 요구한 출연금 예산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 부서에서 해당 기관의 사업별 성과계획, 목표 달성도, 신규 및 증액 요인 발생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道の 재정여건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반영해야 함.
- 재정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도 자율적인 경영혁신 시스템 구축, 사업의 성과 창출 및 재무건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자립 기반을 위한 수익 창출을 강화하여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비 고
출연금(306-01)	68,081	56,732	11,349	20.0%	

◆ 주요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6) ◆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정 책 기 획 관	대구경북연구원운영지원	3,500	
민 생 경 제 교 통 과	저소득·저신용계층지원햇살론 사업추진	4,130	
창 조 과 학 기 술 과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연계사업	5,000	
신 성 장 산 업 과	건설기계부품 기술지원 기반 조성	5,000	
"	건설기계부품 복합설계 지원센터	1,975	
"	항공전자 시험평가 기반 구축 사업	4,750	
"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	2,250	
"	첨단 메디컬 신소재(섬유)개발 사업	3,600	
기 업 노 사 지 원 과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1,000	
새 마 을 봉 사 과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	3,000	
"	저개발국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3,000	
문 화 예 술 과	(재)한국 국학진흥원 운영지원	2,510	
체 육 진 흥 과	2015 경북문경 세계 군인체육대회 조직 위원회 지원	3,200	
FTA농식품유통과	재단법인 경북농민 사관학교 운영	2,850	
환 경 정 책 과	(재)경상북도 환경연수원 운영	2,273	
사 회 복 지 과	행복재단 운영	1,800	

6) 『출연금 예산편성 현황』은 참고자료 <자료3>에 게재

□ 행사성 경비⁷⁾와 관련하여

- 경북 道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인 **행사운영비**는 26억원으로 전년도 21억원에 비해 5억원(23.8%)이 증가하였고,
-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하고 지원하는 **민간행사보조금**은 24억원으로 전년도 27억원에 비해 3억원(△11.0%)이 감소하였음.
- 예산편성된 이들 행사성 경비에 대하여 지역주민이나 사회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과도하게 지원하거나 예산의 방만한 편성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 행사성 경비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실과	과목	사업명	예산액	비고
미래전략기획단	행사운영비	경북정체성 선포식	50	
정책기획관	"	도정연구포럼지원 (포럼, 동아리 활동 지원)	60	
국제비즈니스과	"	해외맞춤형교류사업	155	
"	"	국제교류협력지원	250	
자치행정과	"	3·1절 및 광복절 등 각종 행사	150	
소방본부	"	소방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130	
농업정책과	민간행사 운영비	한국농업경영인도연합회행사지원	60	
친환경농업과	"	쌀전업농 도연합회 전국 대회 개회 지원	100	

7) 『행사성 경비 예산편성 현황』은 참고자료 <자료4>에 게재

□ 연구용역비와 관련하여

- 용역비는 재원사정, 법적요건 등으로 시행여부나 시행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계상을 지양해야 하고,
- 20백만원 이상의 학술관련 용역비는 '도 학술용역 심의위'의 의결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 예산 요구하도록 하는 등 예산의 낭비요소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연구 용역비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민 생 경 제 교 통 과	여객자동차 우수업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용역	150	
물 산 업 과	염지하수 개발 및 산업화 타당성조사연구용역	120	
동해안발전정책팀	신동해안발전 선도프로젝트 발굴 연구용역	250	
해 양 향 만 과	연안침식 모니터링	429	

□ 도정홍보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 도정홍보, 해외홍보마케팅, 투자유치 국내외 시책홍보, 도정현안 전략홍보, 언론 매체를 통한 도정 광고 등 주요 도정 홍보를 위해 각 실국에 편성된 **홍보비용도의 예산**은 2013 예산 37건 94억 25백만원 대비 **9억여 원이 감소한 33건에 85억 15백만원 규모임**.
- 도정을 道民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도정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도정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됨.
- 남부권신공항조기건설 등 필요성이 증대되는 사업은 공격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나 예산집행의 효율화와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조정·삭감하여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주요 도정 홍보비 예산편성 현황⁸⁾ ◆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증 감
		'14년	'13년	
대 변 인	도정 주요홍보 등	1,020	920	100
창조경제산업실	에너지 및 과학시책 홍보 등	640	830	△190
문화관광체육국	관광객 유치 및 포스트 이스탄불 등 주요 관광시책 홍보	2,440	2,140	300
환경해양산림국	세계 물포럼 및 산림시책 홍보 등	540	670	△130

8) 『도정홍보비 예산편성 현황』은 참고자료 <자료7>에 게재

□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⁹⁾

- 우리 道의 일자리 창출사업은 11월 2일 현재 9개 실·국에서 108개 사업을 추진하여 총 55,82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당초목표 64,395명 대비 86.6%로 **양호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음.
- 특히, 기획조정실의 청년일자리 사업인 지역정보화 인터넷선생님사업과 여성정책관실의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 등은 목표대비 100%, 120% 등으로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내년도에는 3,301억원의 일자리창출예산으로 기업 유치 및 취업박람회와 같은 취업 효과가 큰 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단순 일자리 제공의 틀을 벗어나 **서민생활안정의 일자리 창출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14년도 일자리 창출 주요사업 ◆

(단위 : 백만원)

실 국	사 업 명	예 산 액	비고
기 획 조 정 실	지역정보화 강사 등	10,006	
일 자 리 투 자 본 부	글로벌리더 해외인턴 등	60,674	
환 경 해 양 국	조림사업 등	119,249	
보 건 복 지 국	노인 일자리 사업 등	113,777	

9) 『2013년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은 참고자료 <자료8>에 게재

□ 국비확보와 관련하여

- 예산안 세입 구조를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체 재원은 22.5%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7.4%, 중앙부처로부터 확보한 국고보조금은 전년 보다 8.7%(2,599억원) 증가한 3조 2,356억원으로 전체예산의 54.9%나 차지함.
- 이처럼 경상북도 예산규모가 매년 큰 폭의 확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주역이 국비 확보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중앙부처로부터 지역에서 필요한 국비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지역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국회심의 과정에 있는 내년도 국비 예산이 한 푼이라도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임.

□ 종합적으로 살펴본 2014년도 예산(안)은

- 사회복지비의 매칭부담과 도청이전,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등에 따른 세출원인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도 불구하고 각종 낭비요소를 줄이는 등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한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고
- 경북 미래 신성장동력 기반구축 사업인 방사광가속기 사업과 첨단 메디컬 신소재 미래해양개발 선점을 위한 수중로봇 개발사업과 FTA시장개방에 따른 농어업분야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 지며,

- 내년에도 국비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예비타당성조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투·융자심사 등 선행절차 이행 등 **빨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 내년 예산이 경제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현안사업에 집중 투입됨으로써 도민들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예산 확정 후에 각종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자 료

■ 2014년도 주요 신규사업 현황	자료 1
■ 2013년 대비 50% 이상 증감사업 현황	자료 2
■ 출연금 편성 현황	자료 3
■ 행사성 경비 예산편성 현황	자료 4
■ 2014년도 연구용역비 편성현황	자료 5
■ 2014년 주요 재정지표	자료 6
■ 2013년 대비 도정홍보비 증감현황	자료 7
■ 2013년도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예산 현황	자료 8

〈자료 1〉

◆ 2014년도 주요 신규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의 회 사 무 처	상임위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	1,112	
정 책 기 획 관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광특중앙)	4,354	
정보통신담당관	도정종합정보실및사이버침해대응센터구축	1,960	
"	통합백업 및 스토리지 구입	1,640	
"	망 분리 시스템 구축	1,200	
민생경제교통과	광역교통관리체계개선사업(경찰청공모사업)	4,096	
창조과학기술과	미래해양개발을 위한 수중건설로봇 개발사업	2,600	
"	제4세대방사광가속기구축연계사업	5,000	
신 성 장 산 업 과	건설기계부품 기술지원 기반조성	5,000	
"	건설기계부품 융 복합 설계지원센터	1,975	
"	항공전자시험평가기반구축사업	4,750	
에 너 지 산 업 과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사업	9,177	
자 치 행 정 과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	1,418	
문 화 예 술 과	강동 문화 복지회관 건립(광특도비)	1,750	
"	경북 도립 공공도서관 건립(광특도비)	1,100	
"	영주 시립도서관 건립(광특도비)	1,015	
"	김천 문화원 건립(광특도비)	1,015	
"	경북 점자도서관 이전	1,000	
"	한국코미디 창작촌 조성지원	4,900	
관 광 진 흥 과	안동 문화 관광단지 활성화 사업 (안동)(광특도비)	1,300	
"	덕실생태문화공원조성(포항)(광특도비)	1,300	
"	백두대간곤충놀이나라(광특중앙)	1,430	
문화교류협력과	해양실크로드탐험대운영	1,000	
"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기념공원 조성 (광특도비)	3,000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체 육 진 흥 과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지원	3,200	
F T A 농 식 품 유 통 과	통합마케팅조직육성지원	1,200	
"	친환경학교급식관리시스템구축	1,000	
친 환 경 농 업 과	씨감자생산기반조성	1,300	
"	과실유통시설현대화사업	2,340	
농 촌 개 발 과	농어촌마을리모델링사업	1,241	
"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광특시군)	2,386	
환 경 정 책 과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9,868	
"	가연성폐기물전처리시설 설치사업	3,404	
"	고형연료제품전용보일러 설치사업	2,392	
"	경북 신도청 소각시설 설치사업	2,554	
사 회 복 지 과	의성군장애인복지센터건립	1,000	
"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건립공사비 (국가직접지원)	3,000	
노인전문간호센터	노인 전문 간호센터 시설증축	1,266	
도 로 철 도 과	강동 안강간 국지도 건설(광특중앙)	1,880	
"	청도운문터널건설(광특중앙)	1,880	
"	영천경마장진입도로	8,500	
치 수 방 재 과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3,211	
동해안발전정책팀	경주 주상절리해양경관조망벨트조성 (광특중앙)	1,560	
수 산 진 흥 과	수산물유통물류센터건립(광특중앙)	1,300	
수 산 자 원 개 발 연 구 소	한해성특화품종생산시설건립	1,551	
구 미 소 방 서	송정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1,320	
상 주 소 방 서	함창119안전센터 신축	1,513	
고 령 소 방 서	다산119안전센터 신축	1,432	
칠 곡 소 방 서	석적119안전센터 신축	1,442	

※ 예산액 10억원 이상

〈자료 2〉

◆ 2013년 대비 50% 이상 증감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정보통신담당관	실감미디어산업R&D기반 구축 및 성과확산사업	2,000	1,000	1,000	100.0	
신 성장 산업 과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조성부지매입	9,300	1,000	8,300	830.0	
"	첨단메디컬신소재(섬유) 개발사업	3,600	500	3,100	620.0	
자 치 행 정 과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경비부담금	20,307	2,275	18,032	792.6	
인 재 양 성 과	초·중학생급식비지원	4,676	1,468	3,208	218.5	
새 마을 봉 사 과	새마을운동시범단지 연계사업	2,340	2,860	△520	18.2	
문 화 재 과	도지정문화재보수	3,000	2,015	985	48.9	
"	문화재 들봄 사업	2,067	850	1,217	143.2	
농 업 정 책 과	농산물체험전시지원사업 (광특도비)	2,410	195	2,215	1135.9	
F T A 농 식 품 유 통 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광특중앙)	11,425	3,198	8,227	257.3	
"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7,000	3,468	3,532	101.8	
친 환 경 농 업 과	시설원예품질개선지원	4,421	2,839	1,582	55.7	
농 촌 개 발 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도시활력)(광특시군)	840	451	389	86.3	
농 촌 개 발 과	배수개선(직접)	23,000	13,972	9,028	64.6	
"	노후위험저수지정비	3,000	2,000	1,000	50.0	
축 산 경 영 과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4,851	2,448	2,403	98.2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잠사곤충사업장	지역 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건립	1,616	816	800	98.0	
"	R&D지원센터기자재구입	700	300	400	133.3	
노 인 복 지 과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 연금지원	505,807	320,042	185,765	58.0	
다 문화 행 복 과	시군청소년수련시설개 보수(광특도비)	2,188	1,278	910	71.2	
도 시 계 획 과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 역 등 지원사업	17,996	10,593	7,403	69.9	
균 형 개 발 과	가야문화권특정지역지원 사업(광특도비)	1,740	1,030	710	68.9	
도 로 철 도 과	용암선남간국지도건설 (광특중앙)	29,255	12,670	16,585	130.9	
"	고령개진간국지도건설 (광특중앙)	12,840	6,765	6,075	89.8	
"	조교임고간국지도건설 (광특중앙)	7,765	4,265	3,500	82.1	
"	삼계온정간도로확포장	500	1,000	△500	△50	
치 수 방 재 과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11,576	6,671	4,905	73.5	
수 산 진 흥 과	심해가두리양식시범어장 개발	975	325	650	200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광특중앙)	2,519	975	1,544	158.4	
수 산 진 흥 과	로하스수산물식품거점단지 조성(광특중앙)	6,825	3,250	3,575	110.0	
신 도시 조 성 과	도청이전신도시진입도로 개설공사	56,093	31,916	24,177	75.8	
"	도본청 및 의회신청사 건립공사	131,875	94,100	37,775	40.1	

※ 예산액 5억원 이상

〈자료 3〉

◆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여 성 정 책 관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988	
"	여성 SNS 운영	30	
정 책 기 획 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출연금	100	
"	대구경북연구원운영지원	3,500	
"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80	
민생경제교통과	저소득·저신용계층지원햇살론사업추진	4,130	
"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추진	250	
"	교통연수원운영비지원	855	
창조과학기술과	막스플랑크한국연구소설립	750	
"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지원	100	
"	제4세대방사광가속기구축연계사업	5,000	
신 성 장 산 업 과	건설기계부품기술지원 기반조성	5,000	
"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사업추진단운영	150	
"	건설기계부품융복합설계 지원센터	1,975	
"	항공전자시험평가기반구축사업	4,750	
"	항공전자기기MRO기술지원 사업	150	
"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ASTEC)운영	200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2,250	
"	(재)경북 그린카부품진흥원운영지원	250	
"	차세대전기자동차부품연구센터구축사업	500	
"	개인용 이동수단 성능평가 기반구축사업	60	
신 성 장 산 업 과	친환경자동차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추진	200	
"	경북 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300	
"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940	
"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 지원	610	
"	경북 바이오벤처프라자 운영 지원	500	
"	첨단메디컬신소재(섬유)개발사업	3,600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기업노사지원과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운영비 지원	559	
"	경북신용보증재단기본재산조성	1,000	
인 재 양 성 과	경북 학숙 운영비	733	
"	경북 학숙 사업지원(영어학습)	222	
새 마을 봉 사 과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	3,000	
"	새마을세계화재단 운영비	700	
"	저개발국새마을연수 및 보급	900	
"	대학생 새마을 해외봉사활동	250	
"	새마을 리더해외봉사단선발 및 교육	300	
"	저개발국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3,000	
"	글로벌 새마을청년 봉사단 운영	100	
"	새마을 세계화 교류협력사업	200	
"	도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28	
"	도종합자원봉사센터 사업비	320	
세 정 과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40	
문 화 예 술 과	(재)한국국학진흥원 운영 지원	2,510	
문 화 예 술 과	경북 문화콘텐츠진흥원지원	950	
체 육 진 흥 과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파견 공무원 수당지원	246	
"	2015경북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지원	3,200	
F T A 농 식 품 유 통 과	재단법인경북농민사관학교운영	2,850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환 경 정 책 과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운영	2,273	
물 산 업 과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 출연금	500	
사 회 복 지 과	행복재단운영	1,800	
"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운영지원	300	
다 문 화 행 복 과	도청소년수련센터운영지원	864	
"	도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 운영지원	288	
"	학교폭력예방사업지원	30	
보 건 정 책 과	안동 의료원지역개발기금부담금 상환지원	228	
"	원격영상진료시스템운영	60	
"	찾아가는 행복병원운영	360	
해 양 향 만 과	경북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운영지원	830	
"	해양유래생물 계면활성제개발	100	
"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	30	
독 도 정 책 과	인건비 등 기본운영경비	560	
"	독도학술연구 및 교육홍보사업 등	640	

〈자료 4〉

◆ 행사성 경비 예산편성 현황 ◆

○ 행사운영비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의 회 사 무 처	의정 업무지원 워크숍	10,000	
"	의원 워크숍	30,000	
"	의원 연구 단체 행사(6개)	30,000	
"	정책연구위원회 행사	20,000	
"	기획경제 의정 업무추진	6,600	
"	행정보건복지 의정 업무추진	5,400	
"	문화환경 의정 업무추진	6,600	
"	농수산 의정 업무추진	6,600	
"	건설소방 의정 업무추진	6,600	
"	교육의정업무추진	5,400	
대 변 인	소셜 밴드 서포터즈 운영	50,000	
감 사 관	감사 담당 공무원 워크숍 등 감사협력 네트워크 구축	5,000	
"	명예감사관 워크숍 개최	20,000	
"	전문가 초청 원가심사 담당 공무원 워크숍	5,000	
미래전략기획단	도정주요전략기획 및 조정운영	10,000	
"	경북정체성 선포식	50,000	
여 성 정 책 관	성인지력향상 워크숍	1,000	
"	여성의 대표성제고 워크숍	5,000	
정 책 기 획 관	도정정책개발 및 주요현안관리 워크숍	3,000	
정 책 기 획 관	효율적인조직관리 워크숍	3,000	
"	의회 협력 업무추진 워크숍	3,000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정 책 기 획 관	성과 중심의 평가관리 워크숍	5,000	
"	학습(포럼, 동아리)활동지원	60,000	
"	행정제도개선업무추진 워크숍	5,000	
"	정부3.0을 통한 창조행정추진 워크숍	5,000	
"	정부3.0을 통한 창조행정추진 성과보고회	10,000	
예 산 담 당 관	예산편성 및 탄력적 예산운영 워크숍	5,000	
법무통계담당관	법무행정 교육 강화 워크숍	5,000	
"	법제교육운영	3,000	
"	현장과 사례중심 규제개혁 워크숍	5,000	
"	통계정보관리 및 지역통계생산 워크숍	5,000	
정보통신담당관	공무원정보화역량강화 지식인 대회	10,000	
"	업무담당자 연찬회	5,000	
"	전국 지방 행정 정보화 연찬회	30,000	
"	지역 정보화 강사 오리엔테이션	3,000	
"	정보 문화의 달 행사	10,000	
"	정보화 마을 역량 강화 워크숍	3,000	
서 울 지 사	수도권 재경인 문화 탐방	35,000	
민생경제교통과	지역 경제 활성화추진 워크숍	8,000	
"	지역 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회	20,000	
"	지역특화활성화 워크숍	3,000	
"	소비자센터운영 워크숍	2,000	
신 성 장 산업 과	자동차산업시책개발 및 네트워크 워크숍	10,000	
에 너 지 산업 과	지역개발사업 워크숍	15,000	
일 자리 창출 단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워크숍	5,000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투 자 유 치 단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 워크숍	15,000	
국제비즈니스과	해외자매우호 도시간 교류사업	155,000	
"	국제 그랜드 플랜 추진	200,000	
"	해외도민회 육성	50,000	
"	외국지자체공무원초청 한국어연수행사	9,750	
"	경북 해외자문위원운영	100,000	
자 치 행 정 과	3.1절 광복절 행사	150,000	
"	의전 담당 공무원 워크숍	10,000	
"	도지사 이취임식 행사	30,000	
"	자치행정업무 담당 공무원 워크숍	5,000	
"	도민의 날 행사	20,000	
"	기록물관리 담당자 워크숍	3,000	
"	주민등록업무추진 담당자 워크숍	5,000	
"	생활 공감 정책 담당자 워크숍	16,400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담당자 워크숍	3,000	
"	공무원단체 워크숍	6,000	
"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25,000	
안 전 총 괄 과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3,000	
"	민방위 비상대비 담당자 워크숍	5,000	
"	안전문화운동 워크숍	5,000	
"	물놀이 등 수상안전관리 예방교육	20,000	
안 전 총 괄 과	안전문화운동 협의회 정기회	3,000	
"	안전문화운동 협의회 분과위원회	7,500	
"	지역예비군 지원	3,000	
인 재 양 성 과	평생학습박람회 부스운영	30,000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인 재 양 성 과	평생학습체제 담당자 워크숍	3,000	
"	맞춤형 도민교육	5,000	
새 마을 봉 사 과	새마을운동 관계관 워크숍	8,000	
"	새마을운동 홍보 부스운영	15,000	
"	해외새마을운동 지원	30,000	
"	민간단체 육성 지원	5,000	
"	민원행정서비스 담당 공무원 워크숍	10,000	
세 정 과	세무공무원 한마음 대회	10,000	
"	세무공무원 워크숍	10,000	
"	세무공무원 연구포럼	3,000	
회 계 과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운영 워크숍	3,000	
"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 워크숍	5,000	
"	재산관리 담당자 워크숍	5,000	
"	청사 소방 훈련	2,000	
관 광 진 흥 과	3대 문화권 업무추진 담당자 워크숍	6,000	
농 업 정 책 과	귀농 귀촌 페스티벌	40,000	
"	농어업인 포럼	8,000	
"	농업전망 경북대회	20,000	
"	농정대책추진 워크숍	5,000	
FTA농식품유통과	FTA대책특별위원회 운영	40,000	
"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사업 운영 세미나	3,000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농 촌 개 발 과	미래형 농어촌마을 재개발추진 세미나	10,000	
축 산 경 영 과	축산정책개발 및 홍보 워크숍	5,000	
"	경마장건설인프라구축 및 시설관리세미나	10,000	
잠사곤충사업장	누에와 나비 한마당 행사	30,000	
"	풍잠지원제	5,000	
가축위생시험소	악성전염병차단 및 방역 담당자 워크숍	30,000	
물 산 업 과	하수도시설관리 담당자 워크숍	5,000	
산 림 녹 지 과	산의 날 기념행사	20,000	
"	산불관계관역량강화 워크숍	5,000	
산 림 산 업 과	산림문화휴양 시설관리 담당자 워크숍	5,000	
산림환경연구원	숲 사랑 소년단 수련대회	15,000	
"	사방시설관리 담당자 워크숍	3,000	
팔공산도립공원 관 리 사 무 소	공원안내 및 홍보 담당자 워크숍	5,000	
산림자원개발원	산림과학박물관운영관리 세미나	40,000	
"	산림생태보전관리 세미나	20,000	
수목원관리소	숲 체험프로그램 세미나	10,000	
사 회 복 지 과	기초생활보장 담당 공무원 워크숍	5,000	
"	사회 복지 전문 공무원 워크숍	10,000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세미나	30,000	
보 건 정 책 과	공공보건 담당자 워크숍	14,000	
"	보건진료소 담당 공무원 워크숍	10,000	
보 건 정 책 과	치매극복의 날 행사	10,000	
식 품 의 약 과	식품 안전의 날 행사	15,000	
"	식품 위생 담당 공무원 워크숍	5,000	
"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워크숍	10,000	
"	약무자율지도원 워크숍	5,000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워크숍	5,000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노인전문간호센터	노인 전문 간호센터 운영	8,000	
도 시 계 획 과	도시계획위원회운영	3,000	
"	도시개발·재생사업 워크숍	5,000	
균 형 개 발 과	개발촉진지구민자유치활성화 행사	5,000	
"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운영 행사비	33,700	
도 로 철 도 과	도로건설 관계관 워크숍	5,000	
건 축 디 자 인 과	건축인 교류대회	12,000	
"	건축행정 공무원 워크숍	4,000	
"	건축 아젠다 발굴 학술대회	12,000	
"	공동주택 관리자 연찬회	8,000	
"	지역재생 활성화 행사	20,000	
"	아름다운 간판달기 문화 운동	4,000	
"	옥외광고 민관 포럼	4,000	
"	몽골UB교류협력	10,000	
토 지 정 보 과	측량업 및 지적측량성과내실화 워크숍	5,000	
치 수 방 재 과	재해예방 담당 공무원 워크숍	3,000	
종합건설사업소	안전운전 체험 교육	5,600	
동해안발전정책팀	동해안발전전략개발운영 워크숍	5,000	
해 양 항 만 과	해양개발전략세미나	3,000	
독 도 정 책 과	독도사랑행사	10,000	
수 산 자 원 개 발 연 구 소	수산종묘생산방류 행사	4,000	
민물고기연구센터	민물고기 생태 체험관 운영	10,000	
"	종묘생산방류 행사	3,000	
어업기술센터	양식품종다양화 행사	10,000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신도시지원과	도청이전신도시 유관 기관 단체 워크숍	20,000	
"	공공시설사업 관계자 워크숍	7,000	
소 방 행 정 과	소방 공무원 워크숍	25,000	
"	소방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130,000	
대응구조구급과	소방 동요 대회	30,000	
"	소방 안전 캠프	8,000	
소 방 학 교	재난응급체계 세미나	10,000	
"	소방학교 개교 20주년 행사	3,000	
포항북부소방서	소방의 날 행사	2,409	
포항남부소방서	"	2,657	
경 주 소 방 서	"	2,825	
김 천 소 방 서	"	2,381	
안 동 소 방 서	"	2,862	
구 미 소 방 서	"	2,773	
영 주 소 방 서	"	2,573	
영 천 소 방 서	"	2,302	
상 주 소 방 서	소방의 날 행사	2,386	
문 경 소 방 서	"	2,582	
경 산 소 방 서	"	2,736	
의 성 소 방 서	"	2,484	
영 덕 소 방 서	"	2,218	
고 령 소 방 서	"	2,125	
성 주 소 방 서	"	2,171	
칠 곡 소 방 서	"	2,395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울진소방서	소방의 날 행사	2,349	
농업기술원 총무과	농촌진흥 공무원 워크숍	5,000	
농업기술원 작물육종과	R&D 분야 발전방안 워크숍	5,000	
농업기술원 원예경영연구과	농가경영기술현장실용화 세미나	8,000	
"	농업인 e비즈니스 프로그램 운영	10,000	
"	농업기술보급정보화 경진대회	10,000	
"	사이버농업인 심포지엄	5,000	
농업기술원 농업환경연구과	안전농산물생산기반구축연구 심포지엄	3,000	
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	농촌진흥 공무원 워크숍	5,000	
"	4-H 지도자 연찬	15,000	
"	4-H 경진대회	30,000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과	생활 원예기술 콘테스트	15,000	
농업기술원 생활지원과	생활 지원 교육	30,000	
청도복숭아 시협장	핵과류품종 육성연구 세미나	13,000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및 식중독 담당 공무원 워크숍	5,000	
"	영천 한약축제 홍보부스	10,000	
"	전문가네트워크구성 실용포럼	5,000	
"	대외기관 공동 워크숍	5,000	

○ 민간행사보조금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여 성 정 책 관	건강 가정 배드민턴 대회	30,000	
"	건강 가정 아카데미	15,000	
정 책 기 획 관	도정현황관리 및 정책홍보	70,000	
정 보 통 신 담 당 관	정보화마을역량강화	15,000	
민 생 경 제 교 통 과	전통시장 활력화 지원	30,000	
"	전통시장우수상품전시회	70,000	
자 치 행 정 과	도민의 날 행사	45,000	
"	범죄 예방 결의 대회	18,000	
"	기초 질서 다짐 대회	35,000	
안 전 총 괄 과	재난안전네트워크 워크숍	20,000	
새 마 을 봉 사 과	독서 경진 대회	10,000	
"	도민 문화 한마당	30,000	
"	한마음 합창 경연	10,000	
"	새마을 여인상	20,000	
"	새마을운동 평가대회	80,000	
"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10,000	
"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15,000	
"	자연보호 우수 선진지 체험	15,000	
"	자연보호 포럼	15,000	
"	자연정화 활동	15,000	
"	자연보호 협의회 세미나	30,000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새 마 을 봉 사 과	자연보호 현장 선포식	15,000	
"	나라사랑 강철 캠프	20,000	
"	청소년 안보 캠프	10,000	
"	바르게 살기 순회 교육	23,000	
"	바르게 살기 도 대회	30,000	
"	바르게 살기 전진 대회	15,000	
"	바르게 살기 경북여성 대회	25,000	
"	도민 법 질서 실천 운동	20,000	
문 화 예 술 과	도 공예품 대전	40,000	
"	도 산업디자인 전람회	40,000	
관 광 진 흥 과	관광의 날 행사	15,000	
농 업 정 책 과	한국 농업 경영인 도연합회 행사	60,000	
"	전국 농민회 도연맹 행사	25,000	
"	한국 여성농업인도연합회 행사	30,000	
"	전국 여성농민회도연합회 행사지원	18,000	
"	농업인의 날 행사	30,000	
"	농업경영인연찬교육	10,000	
"	농업인단체교류행사	28,000	
"	새 농민회행사	10,000	
"	경북농업인단체협의회행사	22,000	
친 환 경 농 업 과	친환경 농업인 대회	30,000	
"	친환경농산물 큰잔치 및 박람회	30,000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친 환 경 농 업 과	쌀전업농 도전국 연합회 대회 개최지원	100,000	
"	경북 사과 홍보행사	130,000	
"	대구 경북 꽃박람회	30,000	
축 산 경 영 과	전국 한우인의 날 행사	28,000	
"	축산단체연합회행사	50,000	
"	축산물가격 안정 대책 행사	20,000	
물 산 업 과	세계물의 날 행사	10,000	
산 림 녹 지 과	나무심기행사	30,000	
보 건 정 책 과	건강증진 자원봉사자대회	14,000	
"	정신 건강 증진 행사	5,000	
식 품 의 약 과	식품박람회	280,000	
균 형 개 발 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교류활동	40,000	
"	혁신도시 지역탐방 프로그램 운영	30,000	
"	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	70,000	
수 산 진 흥 과	기능성 수산물 홍보 행사	50,000	
"	수산업 경영인 대회	40,000	
농 업 기 술 원 원예경영연구과	사이버 농업인 대회	30,000	
농 업 기 술 원 지 원 기 획 과	농촌 지도자 대회	50,000	
"	4-H회원 교육	34,000	
농 업 기 술 원 생 활 지 원 과	생활 개선회 교육	50,000	
"	생활 개선회 한마음 대회	190,000	

〈자료 5〉

◆ 2014년도 연구용역비 편성현황 ◆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감 사 관	고위공직자 청렴도측정평가 용역	20,000	
"	민원처리 진단제 분석 용역	5,000	
미래전략기획단	신규전략사업발굴연구 용역	180,000	
"	미래조성기반연구 용역	100,000	
여 성 정 책 관	여성정책개발원평가 용역	10,000	
정 책 기 획 관	도정주요현안사업 등 용역(공통)	1,100,000	
"	의정비 심의관련 설문조사 용역	15,000	
"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수립	100,000	
예 산 담 당 관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용역	100,000	
"	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 및 경영컨설팅 용역	100,000	
정보통신담당관	경상북도주력IT분야 역량조사	45,000	
민생경제교통과	여객자동차운수업자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150,000	
창조과학기술과	ICT융합클러스터구축방안연구 용역	100,000	
신 성 장 산 업 과	경북북부권 지식기반형발효산업 육성방안 연구 용역	100,000	
에 너 지 산 업 과	도시가스요금산정 용역	30,000	
투 자 유 치 단	울릉공항건설에 따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80,000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새 마을 봉 사 과	민원행정개선을 위한 고객욕구조사	20,000	
세 정 과	감면조례 재개정 타당성 용역	20,000	
문 화 재 과	종가음식요리서 세계기록유산등재 학술연구	50,000	
환 경 정 책 과	지질공원로고제작	10,000	
"	경상북도환경보전계획수립 연구 용역	30,000	
물 산 업 과	염지하수개발 및 산업화타당성조사연구 용역	120,000	
산 림 녹 지 과	임산업수출전략상품개발 및 여건분석	18,000	
"	산불위험지 조사 용역	52,000	
산 림 산 업 과	백두대간구곡문화지구 세계유산등재 방안연구	70,000	
사 회 복 지 과	지역사회복지연차별계획수립	20,000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60,000	
건 축 디 자 인 과	10년 단위 주택건설종합계획수립	100,000	
동해안발전정책팀	신동해안발전선도프로젝트발굴연구 용역	250,000	
해 양 향 만 과	연안침식모니터링(광특도비)	429,000	
"	북극항로개발타당성조사 용역	80,000	
총 괄 지 원 과	도청이전백서 발간	50,000	
농업기술원생활지	향토음식기본계획수립연구 용역	20,000	
"	농촌 건강생활촌사업평가 및 영향분석	7,500	
"	농업인 안전보건사업평가지표 개발	11,000	

〈자료 6〉

◆ 2014년 주요 재정지표 ◆

1 재정자립도

-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text{재정자립도(\%)} = \frac{\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times 100$$

- 일반회계 : 총세입 - 지방교육세(2,100억원 제외)
- 지방세 : 보통세+목적세(지방교육세 2,100억원 제외) +
지난연도 수입
-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임시적 세외수입

○ 재정자립도 산출

(단위 : 억원, %)

연도별	재정 자립도	예산규모 (일반회계)	자 체 수 입			비 고
			계	지방세	세외수입	
2014	개정	19.6	56,854	11,138	10,380	758
	개정전	25.0	56,854	14,231	10,380	3,851
2013	22.1	53,180	11,779	9,206	2,573	

※ 자체수입 제외 : 잉여금, 전입금, 전년도이월금, 예금 및 예탁금, 융자금 회수

② 재정자주도

-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자체수입+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

$$\text{재정자주도(\%)} = \frac{\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재원(교부세, 재정보전금)}}{\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times 100$$

- 일반회계 : 총세입 - 지방교육세(2,100억원 제외)
- 자체수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2,100억원 제외) + 세외수입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

○ 재정자주도 산출

(단위 : 억원, %)

연도별		재 정 자주도	예산규모 (일반회계)	자주재원 총 계	자 체 수 입			자 주 재 원		
					소계	지방세	세외 수입	소계	지 방 교부세	재 정 보전금
2014	개 정	37.6	56,854	21,405	11,138	10,380	758	10,267	10,267	-
	개정전	43.1	56,854	24,498	14,231	10,380	3,851	10,267	10,267	-
2013		42.5	53,180	22,622	11,779	9,206	2,573	10,843	10,843	-

**2014년 당초 예산안**

(단위 : 억원)

구 분		2014(안)	2013	증감액	1.1.1 %
계		69,940	65,618	4,322	6.59
일 반 회 계		58,954	55,280	3,674	6.65
특 별 회 계		10,986	10,338	648	6.27
	의 료 급 여 기 금 운 영	4,568	4,706	△138	△2.93
	치 수 사 업	424	400	24	6.10
	경 북 도 립 대 학 운 영	93	91	2	2.29
	광 역 교 통 시 설	93	103	△10	△10.27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523	513	10	1.95
	학 교 용 지 부 담 금	67	25	42	167.2
	지 역 개 발 기 금 운 영	5,218	4,500	718	15.19

【주요 재정지표】

(단위 : %, 천원)

구 분	2014(안)	2013	증감	비 고
○재정자립도	19.6	22.1	△2.5	전년기준 25.0%(증2.9%)
○재정자주도	37.6	42.5	△4.9	전년기준 43.1%(증0.4%)
○1인당 자체수입	491	439	52	지방소비세 5→8%(증3%)
○1인당 지방세 부담	463	420	43	"
○예산대비 채무비율	6.4	7.0	△0.6	2013년말(추정) 4,576억원 2014년말(추정) 4,451억원
※ 1인당 채무액	165	170	△5	인구 2,696,705명(9월말)

※ 자체수입 제외 : 잉여금, 전입금, 전년도이월금, 예금 및 예탁금, 융자금 회수

【정부예산】

- 총지출규모 342.0조원 → 357.7조원(15.7조원, 4.6%↑)
- 국 가 채무 464.6조원 → 515.2조원(60.6조원, 10.9%↑)

〈자료 7〉

◆ 홍보 예산 현황 ◆

□ 2014년도 도정홍보예산 - 총 85억원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증 감
		'14년	'13년	
계	계	8,515	9,425	△910
대 변 인	도정 주요홍보 등	1,020	920	100
미 래 전 략 기 획 단	경북 정체성 및 시책사업 홍보 등	180	400	△220
여 성 정 책 관	출산장려 및 보육정책 홍보 등	200	200	0
기 획 조 정 실	도정정책 홍보 등	200	200	0
창 조 경 제 산 업 실	에너지 및 과학시책 홍보 등	640	830	△190
일 자 리 투 자 본 부	일자리 창출 및 투자유치 시책 홍보 등	405	950	△545
안 전 행 정 국	새마을 국내외 시책홍보 등	400	415	△15
문 화 관 광 체 육 국	관광객 유치 및 포스트 이스탄불 등 주요 관광시책 홍보	2,440	2,140	300
농 축 산 국	FTA 및 농특산물 홍보 등	775	1,350	△575
환 경 해 양 산 림 국	세계 물포럼 및 산림시책 홍보 등	540	670	△130
보 건 복 지 국	다문화 정책 등 복지시책 홍보 등	400	200	200
건 설 도 시 방 재 국	혁신도시건설 및 건축물 홍보 등	350	340	10
동 해 안 발 전 기 획 단	독도 및 해양시대 홍보 등	455	510	△55
도 청 이 전 추 진 본 부	도청이전 및 신도청시대 홍보 등	510	300	210

〈자료 8〉

◆ 2013년도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예산현황 ◆

(단위 : 개, '13.11.2 기준)

사 업 명	사업수	추진상황		비 율 (%)	'14년 예산안 (백만원)	비 고
		목 표	실 적			
계	108	64,395	55,824	86.6	330,144	
기 획 조 정 실	6	226	226	100.0	10,006	- 지역정보화강사(인터넷선생님)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 - 장애인집합정보화사업 등
창 조 경 제 산 업 실	22	416	380	91.3	1,732	- 글로벌원전기능 인력양성사업 - 특성화고 나노 인력양성사업 - 여성 IT 인력양성사업 등
일 자 리 투 자 본 부	4	23,815	16,939	71.1	60,674	- 국내외 투자유치, 사회적기업 - 비즈-브릿지 사업, 마을기업 - 글로벌리더 해외인턴 지원 등
문 화 관 광 체 육 국	16	1,420	1,402	98.7	8,907	- 이야기할머니 사업 - 국악분야예술강사지원사업 -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농 수 산 국	23	562	406	72.2	9,067	- 경북농어업청년리더양성 - 경북형마을영농육성 - 농민사관학교 지원 등
환 경 해 양 산 립 국	6	4,898	4,363	89.1	119,249	- 숲가꾸기, 조림사업 - 산불방지 대책 등 - 산림서비스도우미 등
보 건 복 지 국	21	27,529	25,998	94.4	113,777	-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등
안 전 행 정 국	5	872	509	58.4	2,815	- 신규공무원 채용 - 자원봉사코디네이션 - 새마을리더봉사단 해외파견 등
여 성 정 책 관	5	4,657	5,601	120.3	3,917	-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등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9.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10.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조서 : 별 첨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수 정 조 서

【삭감조서】

(단위 : 천원)

쪽	소 관 부 서	내 용(부기)	감 액	비고
계			△6,960,540	
55	기획조정실	대구경북연구원운영지원	△200,000	
61	기획조정실	예산절감민간인포상금	△50,000	
62	기획조정실	재정보전금	△3,000,000	
69	기획조정실	망분리시스템구축	△1,200,000	
69	기획조정실	디지털의사소통시스템확대구축	△200,000	
116	창조경제산업실	FTA맞춤형컨설팅	△100,000	
130	창조경제산업실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200,000	
136	창조경제산업실	경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	△300,000	
174	일자리투자본부	투자기업입지시설보조금	△200,000	
181	일자리투자본부	노동단체사무실임차료지원	△200,000	
188	일자리투자본부	경상북도통상투자지원센터운영	△100,000	
272	안전행정국	새마을세계화재단사업비지원 (새마을세계화교류협력사업)	△150,000	
450	문화관광체육국	창작 오페라 김락 제작	△50,000	
452	문화관광체육국	울진 금강송 사진전 개최지원	△100,000	

쪽	소 관 부 서	내 용(부기)	감 액	비고
490	문화관광체육국	해외스포츠교류사업비지원	△90,000	
524	환경산림국	자연생태보호사업	△50,000	
531	환경산림국	물산업 육성 관련 포럼 및 행사 지원	△20,000	
727	농축산국	말먹이용 친환경새싹재배기 보급	△30,540	
805	동해안발전추진단	활어회센터 건립	△300,000	
880	농업기술원	본원전자교환기교체	△43,000	
880	농업기술원	본원인터넷전화기구입(200대)	△77,000	
895	농업기술원	사이버농업인홍보사이트구축	△50,000	
1002	건설도시방재국	조교임고간국지도건설(광특중앙)	△200,000	
1067	도청이전추진본부	도청이전신도시원주민직업전환훈련	△50,000	

【증액조서】

(단위 : 천원)

쪽	소 관 부 서	내 용(부기)	증 액	비 고
계			6,960,540	
62	기획조정실	예비비	6,960,540	

2014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I. 소관부서 : 경상북도교육감

I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1. 11. 경상북도교육감
2. 회부일자 : 2013. 11. 28.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 11. 29. : 상정·질의)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 12. 6. : 토론·의결)

III.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담당관 김태원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득하고자 함.

IV. 지방교육 재정여건 및 방향

-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규모가
줄어 재정압박이 우려되나, 지방세 전입금이 취득세 인

하의 결손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확대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고보조금은 유·초·중등 교육사업의 시·도 교육청 이양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세출부분**에서는 혁신도시, 도청이전,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학교 신설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초등돌봄 교실 운영, 3~5세 누리과정 지원 등의 이행을 위한 교육 복지분야 재정수요가 확대되고, 노후 학교 증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수요가 증가하며, 비정규직 직원 등의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전망되어 재정압박이 우려됨.

V. 예산안 주요내용

1. 총규모

◆ 2014년도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2014년도 (A)	2013년도 (B)	증 감	
		A - B	증감률(%)
3,378,419	3,331,240	47,179	1.4

-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조 3,312억원보다 472억원(1.4%)이
증액된 3조 3,784억원임.

2. 세입예산

- 세입예산은 3조 3,784억원으로
 - 이전수입은
 - 총 3조 1,760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94%를 차지하고, 전년도 예산 3조 968억원보다 792억원(2.6%)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주요내용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8,980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771억원, 기타이전수입 9억원임.
 - 자체수입은
 - 총 431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전년도 예산 432억원보다 1억원(0.2%)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주요내용은 교수 - 학습활동수입 291억원, 행정활동수입 9억원, 자산수입 10억원, 이자수입 121억원임.
 - 차입은
 - 총 500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5%를 차지하며, 전년도 예산 213억원보다 287억원(134.5%) 증액 편성되었고,
 - 주요내용은 지방교육채 500억원임.

○ 기타는

- 총 1,094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3.2%를 차지하며, 전년도 예산 1,700억원보다 606억원(35.7%) 감액 편성되었고,
- 주요내용은 전년도이월금 1,094억원임.

◆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장 관 별		2014년 예산안 ¹⁰⁾		전년도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3,378,419	100.0	3,331,240	100.0	47,179	1.4
이 전 수 입	소 계	3,175,995	94.0	3,096,761	93.0	79,233	2.6
	중앙정부 이전수입	2,897,974	85.8	2,832,894	85.0	65,080	2.3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77,097	8.2	263,632	7.9	13,465	5.1
	기타이전수입	924	0.0	235	0.0	689	292.6
자 체 수 입	소 계	43,057	1.3	43,160	1.3	△102	△0.2
	교수-학습 활동수입	29,094	0.9	28,343	0.9	751	2.7
	행정활동수입	866	0.0	513	0.0	353	68.8
	자산수입	954	0.0	1,303	0.0	△349	△26.8
	이자수입	12,143	0.4	12,101	0.4	42	0.3
	기타수입	0	0.0	900	0.0	△900	순감
차 입	소 계	49,975	1.5	21,313	0.6	28,662	134.5
	지방교육채	49,975	1.5	21,313	0.6	28,662	134.5
기 타	소 계	109,392	3.2	170,006	5.1	△60,614	△35.7
	전년도이월금	109,392	3.2	170,006	5.1	△60,614	△35.7

10) 표 안의 모든 수치는 백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임.

3. 세출예산

□ 세출예산은 3조 3,784억원으로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전년도 예산액 3조 1,775억원보다 1.5% 증가된 3조 2,256억원으로 전체예산의 95.5%를 차지하며,

- 인적자원운용 1조 7,026억원
- 교수-학습활동지원 1,697억원
- 교육복지지원 3,262억원
- 보건/급식/체육활동 172억원
- 학교재정지원관리 8,401억원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699억원

○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전년도 예산액 70억원보다 27.1% 감소된 51억원으로 전체예산의 0.2%를 차지하며,

- 평생교육 46억원
- 직업교육 5억원

○ 교육일반 부문은

전년도 예산액 1,467억원보다 0.7% 증가된 1,477억원으로 전체예산의 4.4%를 차지함.

- 교육행정일반 381억원
- 기관운영관리 623억원
-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372억원
- 예비비 및 기타 101억원

◆ 세출예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예산안 ¹¹⁾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3,378,419	100.0	3,331,240	100.0	47,179	1.4
유아 및 초중등교육	3,225,621	95.5	3,177,500	95.4	48,121	1.5
평생 · 직업 교육	5,108	0.2	7,007	0.2	△1,898	△27.1
교육 일 반	147,690	4.4	146,734	4.4	957	0.7

◆ 세출예산 정책사업별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예산안 ¹²⁾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3,378,419	100.0	3,331,240	100.0	47,179	1.4
유아 및 초중 등 교육	소 계	3,225,621	95.5	3,177,500	95.4	48,121	1.5
	인적자원운용	1,702,578	50.4	1,661,982	49.9	40,596	2.4
	교 수 - 학 습 활 동 지 원	169,665	5.0	197,329	5.9	△27,664	△14.0
	교육복지지원	326,163	9.7	276,916	8.3	49,247	17.8

11) 표 안의 모든 수치는 백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임.

12) 표 안의 모든 수치는 백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유아 및 초·중 등 교육	보 건 / 급 식 / 체 육 활 동	17,232	0.5	28,441	0.9	△11,208	△39.4
	학 교 재 정 지 원 관 리	840,074	24.9	840,741	25.2	△667	△0.1
	학교교육여건 개 선 시 설	169,909	5.0	172,092	5.2	△2,183	△1.3
평생 직업 교육	소 계	5,108	0.2	7,007	0.2	△1,898	△27.1
	평 생 교 육	4,650	0.1	5,310	0.2	△660	△12.4
	직 업 교 육	458	0.0	1,697	0.1	△1,239	△73.0
교육 일반	소 계	147,690	4.4	146,734	4.4	957	0.7
	교육행정일반	38,075	1.1	30,143	0.9	7,933	26.3
	기관운영관리	62,296	1.8	50,775	1.5	11,521	22.7
	지 방 채 상 환 및 리 스 료	37,170	1.1	37,898	1.1	△728	△1.9
	예 비 비 기	10,149	0.3	27,918	0.8	△17,768	△63.6

□ 세출예산의 기관별 편성내역은

○ 본청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조 4,125억원보다 1.1% 증가한
2조 4,397억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72.2%를 차지
하며,

○ 경상북도교육연구원을 비롯한 직속기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07억원보다 18.5% 감소한
25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0.7%를 차지하고 있으며,

○ 포항교육지원청을 비롯한 23개 지역교육청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880억원보다 2.9% 증가한
9,137억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27%를 보이고 있음.

◆ 세출예산 기관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예산안 ¹³⁾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378,419	100.0	3,331,240	100.0	47,179	1.4
본 청	2,439,655	72.2	2,412,544	72.4	27,111	1.1
직속기관	25,029	0.7	30,706	0.9	△5,678	△18.5
지 역 교육청	913,735	27.0	887,989	26.7	25,746	2.9
포항교육 지원청	159,998	4.7	146,363	4.4	13,635	9.3
경주교육 지원청	72,768	2.2	74,519	2.2	△1,751	△2.3
김천교육 지원청	52,942	1.6	71,397	2.1	△18,455	△25.8
안동교육 지원청	60,698	1.8	57,742	1.7	2,956	5.1
구미교육 지원청	134,486	4.0	114,375	3.4	20,111	17.6
영주교육 지원청	40,951	1.2	41,462	1.2	△512	△1.2
영천교육 지원청	35,070	1.0	32,045	1.0	3,024	9.4
상주교육 지원청	40,388	1.2	42,265	1.3	△1,877	△4.4
문경교육 지원청	28,971	0.9	22,310	0.7	6,661	29.9

13) 표 안의 모든 수치는 백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경산교육 지원청	77,854	2.3	75,820	2.3	2,034	2.7
군위교육 지원청	6,343	0.2	7,550	0.2	△1,207	△16.0
의성교육 지원청	19,699	0.6	22,287	0.7	△2,588	△11.6
청송교육 지원청	10,892	0.3	16,066	0.5	△5,174	△32.2
영양교육 지원청	7,640	0.2	8,147	0.2	△507	△6.2
영덕교육 지원청	21,391	0.6	15,547	0.5	5,843	37.6
청도교육 지원청	16,203	0.5	15,978	0.5	224	1.4
고령교육 지원청	17,813	0.5	15,247	0.5	2,566	16.8
성주교육 지원청	14,786	0.4	19,299	0.6	△4,513	△23.4
칠곡교육 지원청	49,385	1.5	34,527	1.0	14,858	43.0
예천교육 지원청	13,418	0.4	13,403	0.4	15	0.1
봉화교육 지원청	11,257	0.3	18,567	0.6	△7,310	△39.4
울진교육 지원청	15,927	0.5	17,935	0.5	△2,008	△11.2
울릉교육 지원청	4,857	0.1	5,138	0.2	△282	△5.5

4. 계속비사업 조서

☐ 2014년도 계속비 사업은

- 총 12건으로 사업비 총액은 2,370억원이며,
2014년도 계획액은 719억원임.

◆ 2014년도 계속비사업 조서 ◆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비 총액	전 년 도			계 획 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2014 년도	2015 년도	2016 년도
계		237,048	39,648	21,666	17,982	71,891	125,509	-
신규	학교신축 (8개교)	136,585	-	-	-	21,526	115,059	-
기존	학교신축 (3개교)	49,013	17,948	325	17,623	31,065	-	-
기존	본청 청사신축	51,450	21,700	21,341	359	19,300	10,450	-

5. 채무부담행위 조서 : 해당 없음.

6.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 2014년도 민간투자사업 상환 계획액은

- 44개교의 295억원이며, 이는 2005~2010년
교육시설 BTL¹⁴⁾사업 추진에 따른 채무부담액임.

◆ 2014년도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

(단위 : 백만원)

학 교 수	협약 금액	20년간 지급예정액			상환계획					
		임대료	운영비	합계	전년도 까지	2014 년	2015~ 2030년	2031 년	2032 년	계
44 개교	268,787	499,854	128,254	628,108	130,018	29,540	463,675	4,281	594	628,108

7. 명시이월사업 조서 : 해당 없음.

8. 지방교육채 조서

- 2014년도 지방교육채는 총 1,563억원으로
 - 2014년도 상환계획은 교육채 발행에 따른 이자 76억
원이며,
원금은 2015~2024년 10년간 분할상환할 예정임.

14) BTL(Build Transfer Lease) : 민간자본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토록
한 후 공공기관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에 따른 임대료를 장기간
(20년)지급함으로써 민간투자 부문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의 재정압
박을 완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방식

◆ 2014년도 지방교육채 조서 ◆

(단위 : 백만원)

구분	기간		이율	기채선	기채액	전년도상환			당해년도상환계획			금후 계획	기채 사유
	기채 연도	상환완료 예정연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공공 자금 관리 기금	2009	2024	4.85	국고	156,327	-	7,561	7,561	-	7,623	7,623	156,327	학교 교육 여건 개선

VI. 종합검토의견

1. 2014년 세계 · 국내 경제 및 지방교육재정 전망

-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 (약 3.6% 성장 전망)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성장 둔화, 일본 아베노믹스 향방 등이 성장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되고, 교역 조건 개선과 경기회복 정책노력 등으로 내수도 개선(약 3.7% 성장)될 전망이다.

◆ 세계·국내 경제 성장률 실적 및 전망(IMF, '13. 10)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세계경제	3.2%	2.9%	3.6%	
국내경제	2.0%	2.8%	3.7%	

- 지방교육재정의 세입분야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폭 감소, 교육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소가 전망되며, 세출분야에서는 학교신설 수요 증가, 누리과정·돌봄교실 등 교육복지분야 재정수요의 확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수요 증가, 교육인건비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현황(최근 5년간) ◆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전년대비 증감률	4.9%	7.4%	7.9%	3.5%	2.3%	

2. 세입부문

- 세입은 크게 이전수입, 자체수입, 차입(지방교육채), 기타(전년도이월금)로 구분되는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전체 세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수업료·이자수입 등의 자체수입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신규 학교설립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최소한의 지방교육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됨.

- 이전수입은 총 3조 1,760억원(94.0%)으로
전년대비 792억원(2.6%) 증액되었음.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2조 8,980억원(85.8%)이며,
전년대비 651억원(2.3%) 증액되었으며,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771억원(8.2%)이며,
전년대비 135억원(5.1%) 증액되었음.
 - 지방교육세전입금은 2,150억원(6.4%)이며,
취득세 인하로 인해 전년대비 6억원(0.3%) 감액됨.
 - 시도세전입금은 347억원(1.0%)이며,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소비세 확대에 전년대비 41
억원(13.5%) 증액됨.
 -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은 65억원(0.2%)이며, 공동
주택건설에 따른 학교신설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41
억원(168.0%) 증액됨.
 - 광역·기초지자체전입금의 증액은 지자체 대응사업인
학교시설증개축 보조금의 전입으로 인한 것이며, 기타
지원금 증액은 기관·협회·단체의 재정지원 증가로
인한 것임.

◆ 이전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전년도		증 감(A-B)	
			예산안(A)	구성비	예산액(B)	구성비	금 액	증감률
총예산액			3,378,419	100.0	3,331,240	100.0	47,179	1.4
이전수입 합계			3,175,995	94.0	3,096,761	93.0	79,233	2.6
중앙 정부 이전 수입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보통교부금	2,897,974	85.8	2,832,894	85.0	65,080	2.3
지방 자치 단체 이전 수입	소 계		277,097	8.2	263,632	7.9	13,465	5.1
	법정 이전 수입	지방교육세 전입금	215,000	6.4	215,600	6.5	△600	△0.3
		시도세전입금	34,700	1.0	30,564	0.9	4,136	13.5
		학교용지일반 회계부담금	6,499	0.2	2,425	0.1	4,074	168.0
	비법정 이 전 수 입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734	0.0	736	0.0	△2	△0.3
		기초자치 단체전입금	20,164	0.6	14,306	0.4	5,857	40.9
기타 이전 수입	민간 이전 수입	기타지원금	924	0.0	235	0.0	689	292.6

○ 학교용지부담금은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상북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법이 2000년도에 보완되고, 부과·징수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됨에 따라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의 법 적용 시기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향후 상호협의를 통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1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경상북도에서 전입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26개교에 453억원으로 이 중 115억원만 전입(25.3%)하고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339억원을 미전입한 상태로 이는 신설학교의 정상적인 설립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에서는 개발지역내 학교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분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해결해야 할 것임.

◆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	학교용지매입비 규모			경상북도 미전입 현황('13.10.31)			
	학교수	면적(㎡)	매입비 총 액	부담액 (A)	전입액 (B)	미전입액 (A-B)	전입률 (B/A)
계	26	379,033.2	90,704	45,346	11,484	33,862	25.3
2000	1	11,318	2,326	1,163		1,163	
2001	1	10,969.5	2,095	1,047		1,047	
2002	4	63,655.6	16,436	8,217		8,217	
2003	4	59,948.9	11,658	5,828		5,828	
2004	3	40,625.2	9,845	4,922		4,922	
2005	1	12,003.9	3,276	1,638		1,638	
2006	1	13,284	2,256	1,128		1,128	
2007	2	30,044.5	4,581	2,290		2,290	
2008	1	11,500	2,474	1,237		1,237	
2009	2	31,988	13,131	6,565		6,565	
2010	3	50,526.6	17,366	8,682	921	7,761	
2011	1	11,994	1,080	540	941	△401	
2012	1	16,000	2,115	1,057	4,644	△3,587	
2013	1	15,175	2,065	1,032	4,978	△3,946	

-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1억원(0.2%)이 감액된 431억원으로
이는 전체 세입의 1.3% 수준이며,
- 수업료, 학생수련교육 급식비, 사용료·수수료수입,
임대료수입, 이자수입이 총 12억원 증액되고,
 - 입학금, 자산매각대, 기타수입이 총 13억원 감액됨.

◆ 자체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전년도		증 감(A-B)	
			예산안(A)	구성비	예산액(B)	구성비	금 액	증감률
총예산액			3,378,419	100.0	3,331,240	100.0	47,179	1.4
자체수입 합계			43,057	1.3	43,160	1.3	△102	△0.2
교수· 학습 활동 수입	소 계		29,094	0.9	28,343	0.9	751	2.7
	기본적 교육수입	입학금	177	0.0	181	0.0	△4	△2.1
		수업료	28,314	0.9	27,913	0.9	401	1.4
	선택적 교육수입	기숙사 및 급식	604	0.0	249	0.0	355	142.4
	소 계		866	0.0	513	0.0	353	68.8
행정 활동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사용료 수입	644	0.0	319	0.0	324	101.5
		수수료 수입	222	0.0	194	0.0	29	14.8
자산 수입	소 계		954	0.0	1,303	0.0	△349	△26.8
	자산임대 수입	임대료 수입	954	0.0	949	0.0	5	0.5
	자 산 매각대	토지 매각	0	0.0	243	0.0	△243	순감
		건물 매각	0	0.0	101	0.0	△101	순감
		기타 유형 자산 매각	0	0.0	10	0.0	△10	순감
이자 수입	이자수입	이자 수입	12,143	0.4	12,101	0.4	42	0.3
기타 수입	기타수입	그외 수입	0	0.0	900	0.0	△900	순감

○ 지방교육채 500억원은

- 중앙정부의 세수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를 감안하여 학교신설비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신규로 발행할 금액임.

○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1,094억원으로

전년대비 606억원(35.7%) 감액된 금액으로서,

- 이는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예산 편성 시점에서 그 규모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며 예년대비 적은 금액이 본 예산에 반영됨.
- 만일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에 반영되었다면 불용액을 줄인 바람직한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순세계잉여금의 다음연도 예산반영 현황(최근 5년) ◆

(단위 : 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예산반영						
결산 연도	금액(A+B+C)		예산 연도	본예산(A)		추경1회(B)		추경2회(C)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2013	미정		2014	109,392					
2012	188,245	100.0	2013	170,006	90.3	18,240	9.7		
2011	250,350	100.0	2012	115,052	46.0	135,298	54.0		
2010	146,323	100.0	2011	43,555	29.8	101,343	69.3	1,426	1.0
2009	189,805	100.0	2010	48,484	25.5	72,602	38.3	68,719	36.2

3. 세출부문

-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3조 3,784억원으로 전년대비 472억원(1.4%)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크게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 예비비 등으로 구분됨.
-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지출을 줄일 수 없는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기관(학교) 운영비,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이 총예산의 76.1% (2조 5,714억원)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교육청 시책 및 현안사업 등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부족한 실정임.
 - 특히, 인건비는 2조 630억원(61.1%)으로 급여 및 법정부담금 인상, 공무원 대체인건비 증액 등으로 소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교부금은 부족하여 타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전년대비 553억원(2.8%) 증액됨.
 - 경상비는 4,713억원(13.9%)으로 교과교실제 운영비의 사업비로의 전환, 학급수 감소·폐교 증가에 따른 기본운영비의 감소 등에 따라 전년대비 135억원(2.8%) 감액됨.
 - 사업비는 7,968억원(23.6%)으로 교육지원청 청사이전, 누리과정 확대, 선거관리부담금, 통폐합기금 조성 등으로 전년대비 239억원(3.1%) 증액됨.
 -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은 372억원(1.1%)으로

BTL사업 금리 재조정에 따른 금리 하락으로 7억원(1.9%) 감액되었고, 예비비 등은 101억원(0.3%)으로 예산 부족으로 필수액만 편성하여 178억원(63.6%) 감액됨.

- 따라서,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합하는 자체사업을 추진 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하에서의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전 년 도		증 감		
		예산안(A)	구성비	예산액(B)	구성비	금액(A-B)	증감률	
합 계		3,378,419	100.0	3,331,240	100.0	47,179	1.4	
인 건 비	계	2,062,980	61.1	2,007,728	60.3	55,252	2.8	
	공무원	1,617,942	47.9	1,576,217	47.3	41,725	2.6	
	사립학교	383,897	11.4	372,212	11.2	11,685	3.1	
	비정규직	61,141	1.8	59,299	1.8	1,842	3.1	
경 상 비	계	471,290	13.9	484,810	14.6	△13,520	△2.8	
	기관운영비		15,113	0.4	16,281	0.5	△1,168	△7.2
	학교 운영비	소계	456,177	13.5	468,529	14.1	△12,352	△2.6
		공립	366,587	10.8	372,024	11.2	△5,437	△1.5
		사립	89,590	2.7	96,505	2.9	△6,915	△7.2

구 분		2014년		전 년 도		증 감	
		예산안(A)	구성비	예산액(B)	구성비	금액(A-B)	증감률
사업비	계	796,830	23.6	772,886	23.2	23,944	3.1
	교육사업비	579,738	17.2	566,300	17.0	13,438	2.4
	시설사업비	217,092	6.4	206,586	6.2	10,506	5.1
지방교육채 및 BTL상환		37,170	1.1	37,898	1.1	△728	△1.9
예비비 등		10,149	0.3	27,918	0.8	△17,769	△63.6

○ 만 3~5세 누리과정 확대 운영

- 누리과정은 전년도에 비해 지원대상이 확대됨¹⁵⁾에 따라 전년대비 610억원(59.6%) 증액된 총 1,635억원이 편성되었음.
- 또한,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에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이 전체 교육재정의 큰 압박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15) 누리과정 지원대상 확대 : '13년(만 3·4세 소득상위 30%, 만 5세 전원)
→ '14년(만 3세 소득상위 30%, 만 4·5세 전원)

◆ 만 3~5세 누리과정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대 상	지원인원	2014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 율
합 계			163,452	102,404	61,048	59.6
3세교육비 지원	유치원 어린이집	12,405명	34,834	56,574	39,799	70.3
4세교육비 지원	유치원 어린이집	22,477명	61,539			
5세교육비 지원	유치원 어린이집	24,629명	66,929	45,568	21,361	46.9
누리과정 운영	지역청, 교원	23개, 500명	150	262	△112	△42.7

○ 방과 후 학교 운영 예산 감소

- 2006년부터 추진되어 온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전년대비 169억원(25.3%)이 감액된 497억원이 편성되었음.
- '13년 4월말 기준으로 방과후 학교는 도내 전체학교에서 운영되고 있고, 학생 참여율이 87.49%로 양적으로 성장했으며 사업성과 또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한편, 국정과제 사업인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전년대비

57개 교실이 증가되고, 예산은 6억원이 증액되어
총 1,382개 교실에 169억원이 편성되었음.

◆ 2014년 방과후 학교 관련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대상 및 물량	2014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 율
합 계		49,683	66,537	△16,854	△25.3
농산어촌방과 후 학교운영	초·중 523교 4,167학급 고등 102교 1,100학급	10,007	10,814	△807	△7.5
대학생멘토링	-	0	1,094	△1,094	순감
방과후학교운영	방과후학교 담당자	144	751	△606	△80.8
방과후학교지원 센터운영	경주교육지원청	40	100	△60	△60.0
방과후학교활성화 운영지원	23개 지역교육청	5,097	5,073	24	0.5
초등돌봄교실운영	477개교	16,935	16,315	620	3.8
학력향상 프로그램운영	청도교육지원청	6	0	6	순증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운영	-	0	1,812	△1,812	순감
토요방과후학교운영	초·중 749교	3,434	11,039	△7,604	△68.9
저소득층자녀방과후 자유수강권지원	초·중 29,133명 고등 10,000명	14,019	19,541	△5,522	△28.3

◆ 2014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관련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교실)

유형별	2014년		전년도		증 감	
	교실수	예산안	교실수	예산액	교실수	예산
합 계	1,382	16,935	1,325	16,315	57	620
아침돌봄	20	60	13	39	7	21
오후돌봄	493	9,860	486	9,720	7	140
저녁돌봄	57	570	50	250	7	320
토요일돌봄	396	2,574	399	2,594	△3	△20
방학중돌봄	416	3,328	377	3,205	39	123
기 타	-	543	-	507	-	36

- 폐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관리비 절감 및 세입 증대
 - 매년 학생수 감소로 도내 폐교 수는 지금까지 657개교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관리비용으로 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13년 3월 기준으로 53개의 폐교가 미활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리비용 증가, 매각·임대 수익의 감소를 가져오고 있어 폐교재산 관리에 관한 교육청 차원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폐교의 보존관리, 자체활용, 매각·임대 시에도 지역민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연도별 폐교현황 ◆

(2013. 3. 1. 기준)

연도별	'82~'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폐교수	581	27	15	9	12	13	657

◆ 폐교 활용 현황 ◆

(2013. 3. 1. 기준)

총 폐교수	처리종결			현재활용현황			조사시점미활용현황 (활용 추진 중)
	매각	반환	계	자체 활용	임대 (대부)	계	
657	407	4	411	53	140	193	53

○ 급식지원 관련 예산 감소

- 급식지원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60억원(10%)이 감액된 536억원이 편성됨.
- 특히, 농산어촌학생 급식지원비가 전년대비 20억원(15.6%)이 증액되어 15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기초지자체의 교육청 전입금이 증액된 것으로 실제 교육청 부담분은 학생수 감소로 약 5억원 감액됨.
- 또한, 저소득층자녀 학기중 중식지원비는 학생수 감소 및 예산 부족으로 전년대비 79억원(21.6%)이 감액되어 286억원이 편성되었음.

◆ 무상급식지원 예산편성내역 ◆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2014년		전 년 도		증 감	
	인 원	예산안	인 원	예산액	금 액	비 율
합 계	148,911	53,639	168,361	59,618	△5,979	△10
우수식재료 구입비	7,904	364	8,580	422	△57	△7.5
농산어촌학생 급식비지원	51,957	15,014	54,491	12,986	2,027	15.6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60,050	28,619	76,155	36,522	△7,903	△21.6
토·공휴일 중식지원	29,000	9,643	29,135	9,687	△45	△0.5

○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절감 및 고용 확대

-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시 의무고용 인원(월평균 상시근로자의 2.5%)의 장애인을 채용하지 아니할 경우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바¹⁶⁾,
- 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감소시키고,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비를 증가시켜 전년대비 1억원 감액된 11억원을 편성함.

1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 장애인 고용의무제 관련 예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전 년 도		증 감	
	물 량	예산안	물 량	예산액	물 량	금 액
합 계		1,096		1,190		△94
장애인 고용장려금	-	-	60교	216	△60교	△216
장애인의무 고용부담금	90명	676	120명	850	△30명	△174
장애인의무 고용부담가산금	20명	113	35명	124	△15명	△11
장애학생희망 일자리사업비	80명	307	-	-	80명	307

- 의무고용률¹⁷⁾이 연차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도교육청의 고용부담금 납부액도 증가해야 하나, '장애학생 희망 일자리 사업'의 시행으로 부담금 납부액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 동 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충족한다면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므로, 교육청 산하 각 기관(학교)에서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17) '10년 이후 → 2.3% '12년 이후 → 2.5%, '14년 이후 → 2.7%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 장애인 고용현황 ◆

(단위 : 백만원, 명)

연 도	상 시 근로자수	장애인의무고용 근로자수		장애인 채 용 근로자수			고용률 (%)	고용 미달 인원	가산 인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원	비율 (%)	중증 18)	경증	계				
2011년	6,057	139	2.3	7	33	47	0.77	92	26	684
2012년	6,750	168	2.5	9	37	55	0.81	113	29	878
2013년	6,768	169	2.5	27	37	91	1.34	78	20	632(예정)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방안 마련

-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초·중·고교 법정부담금¹⁹⁾ 납부실적이 저조한 바, 2012년 도내 사학에서 납부해야할 법정부담금²⁰⁾은 총 219억 원이나 이 중 17.81%인 39억원만 납부되었음.²¹⁾
- 2011년 납부실적 17.76%에 비하면 0.05%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저조함. 이의 원인은 인건비 상승으로

18) 중증장애인의 고용 :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

19)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란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등 법규로 정한 부담금으로써 법인에게 부여된 일정비율의 부담금을 미납 시 부족액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출됨.

20) 법정부담금 법인납부율(2012년) : 경북(17.8%), 최고⇒서울(36.7%), 최저⇒부산(9.8%)

21) 도내 174개 사립학교 중 전액 납부학교가 12개교, 전액 미납학교가 6개교임.

인한 부담금 납부액의 증가, 법인의 자산에서 생기는 수익 하락 등이 있으나, 대부분 법인에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부족액을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에서 전액 보전해 주기 때문임.

- 따라서, 사학법인의 재산 수익증대 방안 마련, 국가사업 지정에 불이익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별 학교수 ◆

(단위 : 교, %)

연도	전체 학교수	0%		5% 미만		5%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부담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2011	174	8	4.6	91	52.3	65	37.4	11	6.3
2012	174	6	3.4	94	54.0	63	36.2	12	6.9

○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비에 대해

-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비는 전년대비 22억원(1.3%) 감액된 총 1,699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 공동주택건설 증가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증설사업은 전년대비 144억원(31.3%) 증액된 604억원, 학교시설증개축사업은 전년대비 117억원(42.3%) 증액된 393억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전년대비 282억원(28.7%) 감액된 702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 한편, 학교시설 증개축사업과 관련하여 경북내 초·중·고 및 부속건물 가운데 재난위험시설로 D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은 16개교 22개동이며,
- 이 중 9개교 12개동은 예산을 확보해 개축공사를 추진 중이며, 3개교 5개동은 '13년 2회 추경 및 '14년 본 예산을 확보해 개축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나, 나머지 4개교 5개동은 예산 미확보 상태로,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2013년 학교시설 중 재난위험시설(D급) 조치 현황 ◆

(기준일 : '13. 10. 1.)

연번	설립별	학교명 (기관명)	건물 용도	층수	연면적 (㎡)	준공 연도	확보예산액 (백만원)	조치현황
1	공립	영흥초	A동	2	2,096	1977	10,126	개축공사 추진 중
2			B동	2	1,987	1973		
3			C동	2	2,060	1981		
4	공립	포항해양 과학고	실습동	1	1,056	1998	6,000	"
5	공립	영덕고	강당	1	405	1967	3,300	"
6	공립	선산초	교사동	3	6,921	1979	13,000	"
7	공립	풍기중	교사동	2	1,800	1969	2,635	"
8	공립	영천중앙초	강당동	2	1,550	1992	411	"
9	공립	성주초	서편 교사동	2	1,641	1967	3,548	"

연 번	설립별	학교명 (기관명)	건물 용도	층수	연면적 (㎡)	준공 연도	확보예산액 (백만원)	조치현황
10	공립	봉화초	중간동	2	898	1973	1,983	"
11			후관동	2	777	1973	1,983	
12	공립	춘양초	강당	1	396	1972	1,737	"
13	공립	김천초	별관동	2	329	1968	3,194	'13년 추경2회 예산 확보 후 철거·개축 예정
14			교사, 식당동	2	1,094	1971		
15	공립	강구중	교사 A동	2	1,889	1975	8,242	'14년 본예산 확보 후 개축 예정
16			교사 C동	2	1,434	1967		
17	공립	경북 체육고	본관동	4	583	1973	-	예산 미확보
18			수영장	1	715	1993	-	"
19	공립	벽진초	교사동	1	7,614	1966	-	"
20	공립	도원초	교사동	3	1,582	1966	-	"
21	사립	현일고	체육관	2	823	1973	-	"
22	사립	영양여고	교사 시설	2	345	1972	190	'13년 추경2회, '14년 본예산 확보 후 보수 예정
							302	

○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 교과교실제는 교과 특성과 학생 학습속도를 반영, 기존의 학급중심에서 교과중심으로 수업을 재구성해 학생의 맞춤형 수업을 지원하는 교실운영방식임.
- 전년도 대비 68억원(107.7%)이 증액된 131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13년에 학교기본운영비에 편성되었던 교과교실제 운영비가 '14년에 사업비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실제로는 52억원 감액되었음.
- 또한, 교과교실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학교수를 확대하기 보다는 기존 학교의 운영 상태를 중점 지도·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교과교실제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교실)

구분	사업규모		시 설 비		운 영 비		증 감	비 고
			2014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2014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신규지정 학교수	선진형	19	8,400	6,313	-	-	2,087	'13년 운영비는 학교기본 운영비에 편성 운영됨.
	과목 중점형	-						
기 지정 운영 학교수	선진형	78	-	-	4,680	11,927	△7,247	
	과목 중점형	105						

○ 2014년 1억원 이상 신규사업²²⁾ 검토

- 2014년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8건으로
 - '13년 1회 추경에 기반영된 사업 : 3건
 - 예산과목 조정으로 신규로 분류된 사업 : 3건
 - 실질적 신규사업 : 2건(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비, 국제교육협력)
- 2014년 본예산에는 예년대비 신규사업 수가 많이 감소한 바, 이것은 국가정책사업, 교육복지사업 등의 확대에 의한 재원부족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전년대비 30% 이상 증·감액 사업²³⁾ 검토

- 30% 이상 증·감액 사업은 총 27건이며,
 - 30% 이상 증액 사업 : 9건
 - 30% 이상 감액 사업 : 18건임.
- 이 중 30% 이상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교과교실제운영지원(68억 증) : 운영비의 과목이동으로 인한 단순증액
 -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156억 증) : 통폐합학교 기금 지원에 따른 증액
 - 누리과정지원(610억 증) :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증액
 - 학생수용시설(144억 증) : 신설학교 부지매입, 교실 증축에 따른 증액
 - 학교일반시설(117억 증) : 학교시설 증축·보수에 따른 증액

22) 참고자료 1

23) 참고자료 2

- 선거관리(103억 증) : 제6회 지방선거 관리경비 부담에 따른 증액
- 교육행정기관시설(127억 증) : 본청·지역청 청사 신축에 따른 증액

○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

-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예산이 남녀 동등하게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2014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총 37개 기관 23개 사업이며, 대상사업의 예산규모는 341억원 수준임.

◆ 사업분류별 성인지예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

사 업 분 류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3개	34,080	46,755	△12,675	△27.1
1.여성정책추진사업	9개	5,820	7,789	△1,969	△25.3
2.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개	7,406	13,017	△5,611	△43.1
3.기타 ²⁴⁾	10개	20,854	25,949	△5,094	△19.6

24) 교육부 지정사업, 도교육청 자체추진사업(교육감 공약사업 등)

- 2014년도 성인지 예산의 특징은 여성인력의 경력개발 지원으로 여성의 공직 대표성을 제고하며 여성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접근강화를 목표로 인적자원운용 및 교수 - 학습활동지원 분야,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음.
- 또한 성인지 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인식제고,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 등이 필요함.

4. 종합의견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4%에 해당하는 472억원이 증액된 3조 3,784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타시도와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재정의 여건상 의존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교육청 시책 및 현안사업 등에 자율적으로 편성·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합하는 교육 및 시설사업에 투입할 실질적인 자체재원은 아주 미약한 실정으로 예산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인 운영**이 절실히 요구됨.
- **세입부문**에서는 교부금 확보 및 자체재원 발굴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 세출부문에서는 만3~5세 누리과정, 방과 후 학교 등 주요 교육정책의 사업비 확보 및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따른 인건비 지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정수요가 급증함으로써 불요불급한 경상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조정 및 예산절감 등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VII. 질의 및 답변요지 : 특이사항 없음.

VIII.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IX. 심사결과 : 수정가결(조서별첨)

X. 소수의견의 요지 : 특이사항 없음.

X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참 고 자 료

1. 2014년도 본예산 신규사업 현황(1억원 이상)
2. 30% 이상 증감액 사업(단위사업별)

◆ 2014년 본예산 신규사업 현황(1억원 이상) ◆

(단위 : 천원)

부서명 (기관명)	사업명	편성액	사업목적	사업대상 (학교등)	예산서 페이지
학교지원과	장애학생희망일자리사업비	307,200	장애학생(고3) 고용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최소화	공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고3 장애학생	p143
교육과정과	자유학기제운영지원	438,900	2016년 전면 도입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운영 지원	경북 도내 전 학교,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구성원	p378
교육과정과	자유학기제 (지역청단위연수)	225,200	2016년 전면 도입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운영 지원	경북 도내 전 학교,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구성원	p381 ~389
교육과정과	자율형공립고지원	680,095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특성화·다양화를 통해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	9개교(인동고, 영주제일고, 상주여고, 북산고, 경산고, 안동고, 울진고, 봉화고, 점촌고)	p400
교육정책과	특수교육실무사인건비	374,808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 문제행동 관리 및 학교생활적응 지원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특수교육의 질 제고	지역교육청 및 특수학교 특수교육실무사 23명	p657
재무정보과	교육비지원시스템운영	427,325	읍·면·동사무소 교육비 신청·접수 경비 및 재산 조회·결과 통보 수수료 지원	23개 시·군	p1202
교육정책과	방과후학교활성화운영지원	544,060	고등학교 방과후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고등학교, 6개 시·군(영주, 영천, 영양, 영덕, 칠곡, 울릉)	p1225
기획조정관	국제교육협력	1,145,080	세계화시대에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국제 교류 사업 추진(15개 사업)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초·중등학교	p2016

◆ 30% 이상 증·감액 사업(단위사업별) ◆

(단위 : 천원, %)

정책 사업	단 위 사 업	2014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예산서 페이지
교수 학습 활동 지원	학력신장	4,361,069	7,136,318	△2,775,249	△38.9	p453
	연구시범학교운영	314,572	468,842	△154,270	△32.9	p521
	과학교육활성화지원	5,405,034	8,622,880	△3,217,846	△37.3	p775
	특성화고교육	10,537,912	17,712,808	△7,174,896	△40.5	p851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1,698,600	2,745,700	△1,047,100	△38.1	p867
	ICT활용교육	1,558,894	3,737,571	△2,178,677	△58.3	p871
	진로진학교육	3,395,700	5,261,089	△1,865,389	△35.5	p1119
	학교평가관리	164,282	368,512	△204,230	△55.4	p1135
	학생선발배정	1,460,985	2,429,956	△968,971	△39.9	p1145
	교과교실제운영지원	13,080,000	6,312,900	6,767,100	107.2	p1193
교육 복지 지원	학비지원	3,785,215	5,520,426	△1,735,211	△31.4	p1199
	정보화지원	3,458,837	4,996,316	△1,537,479	△30.8	p1263
	농어촌학교교육여건 개선	44,853,280	29,250,254	15,603,026	53.3	p1267
	누리과정지원	163,452,166	102,403,700	61,048,466	59.6	p1299

(단위 : 천원, %)

정책 사업	단 위 사 업	2014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예산서 페이지
보건 급식 체육 활동	보건관리	1,803,911	2,738,489	△934,578	△34.1	p1329
	급식관리	10,183,683	20,209,807	△10,026,124	△49.6	p1365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	학생수용시설	60,406,827	46,024,020	14,382,807	31.3	p1495
	학교일반시설	39,287,391	27,605,571	11,681,820	42.3	p1505
직업 교육	직업진로교육	458,190	1,696,790	△1,238,600	△73.0	p1731
교육 행정 일반	의정활동지원	41,934	98,752	△56,818	△57.5	p1829
	선거관리	12,544,465	2,239,009	10,305,456	460.3	p1835
	학생배치계획	551,183	331,893	219,290	66.1	p1965
	사학기관지도육성	265,730	391,270	△125,540	△32.1	p1977
	시설사업관리	1,010,074	1,546,044	△535,970	△34.7	p2003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1,344,678	247,926	1,096,752	442.4	p2013
기관 운영 관리	교육행정기관시설	47,182,357	34,493,743	12,688,614	36.8	p2161
예비 비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10,149,208	27,917,643	△17,768,435	△63.6	p2209

2014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 정 조 서

【삭감조서】

(단위 : 천원)

쪽	소 관 부 서	내 용(부기)	감 액	비 고
계			△3,052,916	
1053	생활지도과	경상북도Wee스쿨설립	△3,024,396	
1782	공보담당관	3. 경북교육홍보활동지원 나. 경북교육홍보사진제작	△19,200	
1783	공보담당관	3. 경북교육홍보활동지원 라. 홍보업무역량강화워크숍	△9,320	

【증액조서】

(단위 : 천원)

쪽	소 관 부 서	내 용(부기)	증 액	비 고
계			3,052,916	
2212	기획조정담당관	예비비	3,052,916	

201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 합 심 사 보 고 서

1. 소관부서 : 경상북도지사

2.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3. 11. 29.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13. 12. 12.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 12. 13 : 상정·질의)

○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 12. 16 : 토론·의결)

3.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김 승 수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4. 예산편성 방향

- 국비 등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반영과 중앙 정부로부터 변경내시 되거나 추가된 국비보조 사업비를 정리하는 예산편성
-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계획변경이나 조정된 사업비 예산편성과 법정·의무적 경비 과부족분 반영 등 금년도 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한 편성
- 인건비, 직급보조비 등 총액인건비 경비 정확히 추계, 계상
- 경상경비는 연말까지 미집행분 및 자체예산 절감분 감액 조정
- 기타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 반영

5. 예 산(안)

가. 총 괄

1) 총 규 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7,121,404	100.0	7,147,058	100.0	△25,654	△0.4
일 반 회 계	5,947,053	83.5	5,972,789	83.6	△25,736	△0.4
특 별 회 계	1,174,351	16.5	1,174,269	16.4	82	0.0
기 타 특별회계	570,651	8.0	570,569	8.0	82	0.0
의료급여 기금운영	452,134	6.3	451,753	6.3	381	0.1
치수사업	42,401	0.6	42,801	0.6	△400	△0.9
경북도립 대학운영	9,179	0.1	9,432	0.1	△253	△2.7
광역교통 시 설	10,129	0.1	10,129	0.1	-	-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51,665	0.7	51,311	0.7	354	0.7
학교용지 부 담 금	5,143	0.1	5,143	0.1	-	-
공 기 업 특별회계	603,700	8.5	603,700	8.4	-	-
지역개발 기금운영	603,700	8.5	603,700	8.4	-	-

2) 총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7,121,404	100.0	7,147,058	100.0	△25,654	△0.4
자 체 수 입	2,063,903	29.0	2,067,473	28.9	△3,570	0.2
지방세 수입	1,130,600	15.9	1,130,600	15.8	0	0.0
세 외 수 입	933,303	13.1	936,873	13.1	△3,570	△0.4
경상적 수입	64,398	0.9	63,985	0.9	413	0.7
임시적 수입	868,905	12.2	872,888	12.2	△3,983	△0.5
의 존 수 입	5,057,501	71.0	5,079,585	71.1	△22,084	0.4
지방교부세	1,141,381	16.0	1,116,033	15.6	25,349	2.3
보 조 금	3,536,120	49.7	3,583,552	50.1	△47,432	△1.3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380,000	5.3	380,000	5.3	0	0.0

3) 총괄 세출예산
가) 기능별(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7,121,404	100.0	7,147,058	100.0	△25,654	△0.4
일반공공행정	1,477,866	20.8	1,440,081	20.2	37,785	2.6
공공질서 및 안전	377,575	5.3	388,793	5.4	△11,219	△2.9
교 육	10,322	0.1	10,487	0.2	△165	△1.6
문화 및 관광	467,360	6.6	469,501	6.6	△2,141	△0.5
환 경 보 호	491,111	6.9	536,703	7.5	△45,592	△8.5
사 회 복 지	1,892,771	26.6	1,892,365	26.5	△406	0.0
보 건	87,255	1.2	81,550	1.1	5,705	7.0
농림해양수산	972,398	13.7	960,604	13.4	11,794	1.2
산업중소기업	176,662	2.5	174,520	2.4	2,142	1.2
수 송 및 교 통	353,112	5.0	351,328	4.9	1,784	0.5
국토 및 지역개발	413,717	5.8	407,712	5.7	6,005	1.5
과 학 기 술	16,958	0.2	16,978	0.2	△20	△0.1
예 비 비	10,382	0.2	39,527	0.6	△29,145	△73.7
기 타	373,915	5.3	376,910	5.3	△2,995	△0.8

나) 조직별(총괄)

(단위 : 백만원, %)

실 국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7,121,404	100.0	7,147,058	100.0	△25,654	△0.4
의 회 사 무 처	13,165	0.2	13,336	0.2	△171	△1.3
대 변 인	2,762	0.0	2,755	0.0	7	0.2
미 래 전 략 기 획 단	5,572	0.1	5,752	0.1	△180	△3.1
여 성 정 책 관	415,780	5.8	411,012	5.8	4,767	1.2
도청이전추진본부	188,297	2.6	185,407	2.6	2,889	1.6
창 조 경 제 산 업 실	174,804	2.5	172,234	2.4	2,570	1.5
기 획 조 정 실	1,081,770	15.2	1,073,375	15.0	8,395	0.8
일 자 리 투 자 본 부	96,023	1.4	95,418	1.3	605	0.6
공 무 원 교 육 원	5,082	0.1	5,504	0.1	△423	△7.7
감 사 관 실	617	0.0	622	0.0	△5	△0.8
보 건 복 지 국	1,534,758	21.6	1,533,481	21.5	1,277	0.1
안 전 행 정 국	517,610	7.3	516,190	7.2	1,420	0.3
환 경 산 림 국	697,549	9.8	742,769	10.4	△45,219	△6.1
보 건 환 경 연 구 원	9,466	0.1	9,711	0.1	△245	△2.5
농 축 산 국	659,942	9.3	650,910	9.1	9,032	1.4
농 업 기 술 원	52,709	0.7	52,823	0.7	△114	△0.2
동해안발전추진단	100,180	1.4	97,852	1.4	2,328	2.4
문 화 관 광 체 육 국	462,302	6.5	464,467	6.5	△2,165	△0.5
건 설 도 시 방 재 국	859,568	12.1	868,307	12.2	△8,740	△1.0
소 방 본 부	234,270	3.3	235,700	3.3	△1,430	△0.6
경 북 도 립 대 학	9,179	0.1	9,432	0.1	△253	△2.7

다) 성질별(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7,121,404	100.0	7,147,058	100.0	△25,654	△0.4
인 건 비	289,991	4.1	291,673	4.1	△1,682	△0.6
물 건 비	147,334	2.1	149,348	2.1	△2,014	△1.4
경 상 이 전	2,726,313	38.3	2,694,733	37.7	31,580	1.2
자 본 지 출	2,738,037	38.5	2,768,091	38.7	△30,054	△1.1
융 자 및 출 자	392,900	5.5	392,900	5.5	0	0.0
보 전 재 원	305,935	4.3	303,313	4.2	2,622	0.9
내 부 거 래	401,954	5.6	399,491	5.6	2,463	0.6
예비비 및 기타	118,940	1.7	147,509	2.1	△28,568	△19.4

나. 일반회계

1)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5,947,053	100.0	5,972,789	100.0	△25,736	△0.4
지 방 세 수 입	1,130,600	19.0	1,130,600	18.9	0	0.0
세 외 수 입	319,173	5.4	322,826	5.4	△3,652	△1.1
경상적 수입	21,746	0.4	21,359	0.4	386	1.8
임시적 수입	297,428	5.0	301,466	5.1	△4,039	△1.3
지 방 교 부 세	1,141,381	19.2	1,116,033	18.7	25,349	2.3
보 조 금	3,155,898	53.1	3,203,331	53.6	△47,432	△1.5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00,000	3.4	200,000	3.4	0	0.0

2)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 기능별(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5,947,053	100.0	5,972,789	100.0	△25,736	△0.4
일 반 공 공 행 정	874,162	14.7	836,382	14.0	37,780	4.5
공공질서 및 안전	377,575	6.4	388,793	6.5	△11,219	△2.9
교 육	5,650	0.1	5,650	0.1	0	0.0
문 화 및 관 광	467,360	7.9	469,501	7.9	△2,141	△0.5
환 경 보 호	491,111	8.3	536,703	9.0	△45,592	△8.5
사 회 복 지	1,440,637	24.2	1,440,612	24.1	25	0.0
보 건	87,255	1.5	81,550	1.4	5,705	7.0
농 립 해 양 수 산	972,398	16.4	960,604	16.1	11,794	1.2
산 업 중 소 기 업	124,997	2.1	123,209	2.1	1,788	1.5
수 송 및 교 통	342,983	5.8	341,199	5.7	1,784	0.5
국토 및 지역개발	366,173	6.2	359,768	6.0	6,405	1.8
과 학 기 술	16,958	0.3	16,978	0.3	△20	△0.1
예 비 비	10,382	0.2	39,527	0.7	△29,145	△73.7
기 타	369,413	6.2	372,314	6.2	△2,901	△0.8

나) 조직별(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실 국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5,947,053	100.0	5,972,789	100.0	△25,736	△0.4
의 회 사 무 처	13,165	0.2	13,336	0.2	△171	△1.3
대 변 인	2,762	0.1	2,755	0.1	7	0.2
미래전략기획단	5,572	0.1	5,752	0.1	△180	△3.1
여 성 정 책 관	415,780	7.0	411,012	6.9	4,767	1.2
도청이전추진본부	188,297	3.2	185,407	3.1	2,889	1.6
창조경제산업실	123,139	2.1	120,923	2.0	2,216	1.8
기 획 조 정 실	478,070	8.0	469,675	7.9	8,395	1.8
일자리투자본부	96,023	1.6	95,418	1.6	605	0.6
공 무 원 교 육 원	5,082	0.1	5,504	0.1	△423	△7.7
감 사 관 실	617	0.0	622	0.0	△5	△0.8
보 건 복 지 국	1,082,624	18.2	1,081,728	18.1	896	0.1
안 전 행 정 국	517,610	8.7	516,190	8.6	1,420	0.3
환 경 산 립 국	697,549	11.7	742,769	12.4	△45,219	△6.1
보건환경연구원	9,466	0.2	9,711	0.2	△245	△2.5
농 축 산 국	659,942	11.1	650,910	10.9	9,032	1.4
농 업 기 술 원	52,709	0.9	52,823	0.9	△114	△0.2
동해안발전추진단	100,180	1.7	97,852	1.6	2,328	2.4
문화관광체육국	462,302	7.8	464,467	7.8	△2,165	△0.5
건설도시방재국	801,894	13.5	810,234	13.6	△8,340	△1.0
소 방 본 부	234,270	3.9	235,700	4.0	△1,430	△0.6

다) 성질별(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5,947,053	100.0	5,972,789	100.0	△25,736	△0.4
인 건 비	286,316	4.8	287,959	4.8	△1,643	△0.6
물 건 비	142,081	2.4	143,941	2.4	△1,860	△1.3
경 상 이 전	2,231,138	37.5	2,199,460	36.8	31,679	1.4
자 본 지 출	2,680,929	45.1	2,710,863	45.4	△29,934	△1.1
용 자 및 출 자	24,000	0.4	24,000	0.4	0	0.0
보 전 재 원	167,452	2.8	164,830	2.8	2,622	1.6
내 부 거 래	396,977	6.7	394,514	6.6	2,463	0.6
예비비 및 기타	18,160	0.3	47,223	0.8	△29,063	△61.5

다. 특별회계

1)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1,174,351	100.0	1,174,269	100.0	82	0.01
의 료 급 여 기 금 운 영	452,134	38.5	451,753	38.5	381	0.1
치 수 사 업	42,401	3.6	42,801	3.6	△400	△0.9
경 북 도 립 대 학 운 영	9,179	0.8	9,432	0.8	△253	△2.7
원 자 력 발 전 지 역 개 발 세	51,665	4.4	51,311	4.4	354	0.7
지 역 개 발 기 금 운 영 등	618,972	52.7	618,972	52.7	0	0

2) 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1,174,351	100.0	1,174,269	100.0	82	0.0
세 외 수 입	614,129	52.3	614,047	52.3	82	0.0
경상적 수입	42,652	3.6	42,626	3.6	26	0.1
임시적 수입	571,477	48.7	571,421	48.7	56	0.0
보 조 금	380,222	32.4	380,222	32.4	0	0.0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80,000	15.3	180,000	15.3	0	0.0

3) 특별회계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1,174,351	100.0	1,174,269	100.0	82	0.0
일 반 공 공 행 정	603,704	51.4	603,699	51.4	5	0.0
교 육	4,672	0.4	4,837	0.4	△165	△3.4
사 회 복 지	452,134	38.5	451,753	38.5	381	0.1
산 업 중 소 기 업	51,665	4.4	51,311	4.4	354	0.7
수 송 및 교 통	10,129	0.9	10,129	0.9	0	0.0
국 토 및 지 역 개 발	47,544	4.1	47,944	4.1	△400	△0.8
기 타	4,503	0.4	4,596	0.4	△93	△2.0

나) 조직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1,174,351	100.0	1,174,269	100.0	82	0.0
기 획 조 정 실	603,700	51.4	603,700	51.4	0	0.0
예 산 담 당 관	603,700	51.4	603,700	51.4	0	0.0
창조경제산업실	51,665	4.4	51,311	4.4	354	0.7
에너지산업과	51,665	4.4	51,311	4.4	354	0.7
보 건 복 지 국	452,134	38.5	451,753	38.5	381	0.1
사 회 복 지 과	452,134	38.5	451,753	38.5	381	0.1
건설도시방재국	57,673	4.9	58,073	5.0	△400	△0.7
균 형 개 발 과	10,129	0.9	10,129	0.9	0	0.0
건축디자인과	5,143	0.4	5,143	0.4	0	0.0
치 수 방 재 과	42,401	3.6	42,801	3.6	△400	△0.9
경 북 도 립 대 학	9,179	0.8	9,432	0.8	△253	△2.7
경 북 도 립 대 학	9,179	0.8	9,432	0.8	△253	△2.7

다) 성질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1,174,351	100.0	1,174,269	100.0	82	0.0
인 건 비	3,675	0.3	3,714	0.3	△39	△1.1
물 건 비	5,253	0.5	5,407	0.5	△154	△2.9
경 상 이 전	495,175	42.2	495,274	42.2	△99	0.0
자 본 지 출	57,108	4.9	57,229	4.9	△121	△0.2
용 자 및 출 자	368,900	31.4	368,900	31.4	0	0.0
보 전 재 원	138,483	11.8	138,483	11.8	0	0.0
내 부 거 래	4,977	0.4	4,977	0.4	0	0.0
예비비 및 기타	100,780	8.6	100,286	8.5	495	0.5

라. 명시이월 사업

- 명시이월 사업은 총 106개 사업에 1,974억 90백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102개 사업에 1,939억 78백만원,
 - 특별회계는 4개 사업에 35억 12백만원임.
- ※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 참조

6. 검토의견

가. 총 괄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7조 1,470억원보다 △256억원(△0.4%)이 감액된 7조 1,214억원임.
- 회계별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조 9,727억원보다 △257억원(△0.43%)이 감액된 5조 9,471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1,742억원보다 1억원(0.01%)이 증액된 1조 1,743억원임.

◆ 추경 예산안 규모 ◆

(단위 : 억원, %)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1,214	100.0	71,470	100.0	△256	△0.36
일반회계	59,471	83.5	59,727	83.6	△257	△0.43
특별회계	11,743	16.5	11,742	16.4	1	0.01

나. 회계별 주요내용

1) 일반회계

○ 총 규모는

- 기정예산 5조 9,727억원보다 △257억원(△0.43%)이 감액된 5조 9,471억원임.

○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역은

-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1조 1,306억원에서 변동이 없고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228억원에서 △36억원이 감액된 3,192억원이며
- 중앙지원금은 4조 2,973억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기정 1조 1,160억원에서 253억원이 증액된 1조 1,414억원이며
 - 국고보조금은 기정 3조 2,033억원에서 △474억원이 감액된 3조 1,559억원임.

-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 내용으로는
 - 일반공공행정 378억원 증액
 - 사회복지·보건 57억원, 농림해양수산 부문 118억원 증액
 - 산업·중소기업 18억원, 수송 및 교통부문 18억원 증액
 -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64억원 증액
 - 공공질서 및 안전 △112억원 감액
 - 문화 및 관광 △21억원, 환경보호 부문 △456억원 감액
 - 예비비 △291억원, 기타 부문은 29억원 감액임.
- 성질별 편성 내용으로는
 - 보전재원 26억원, 내부거래 24억원 증액
 - 출연금 3억원, 민간이전 13억원, 자치단체 등 이전 347억원 증액
 - 인건비 △16억원, 물건비 △19억원 감액
 - 직무수행경비 △2억원, 연구개발비 △3억원 감액
 - 일반보상금 △6억원, 포상금 △1억원, 연금부담금 △15억원 감액
 - 전출금 △5억원, 국외이전 △1억원, 차입금 이자상환 △18억원 감액
 - 자본지출 △300억원, 예비비 △291억원 감액하였음.

2) 특별회계

- 기정예산 1조 1,742억 69백만원보다 82백만원이 증액된 1조 1,743억 51백만원임.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 세입에서 이자수입 42백만원, 기타수입에서 3억 3천만원이 증액 등 총 3억 8천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 세출에서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3억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함.
- 치수사업특별회계는
 - 세입에서 하천사용료수입 △4억원이 감액됨에 따라
 - 세출에서 수해예방을 위한 치수능력확보사업 기정예산 107억원에서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 △2억원, 예비비 △2억원 등 총 △4억원을 감액한 103억원을 계상함.
-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는
 - 세입에서 수수료수입이 5천만원 증액되고, 전입금수입이 △3억원이 감액되는 등 총 △2억 5천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 세출에서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9천만원, 학생장학금 등 △1억 6천만원 등 총 △2억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함.
-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는
 - 세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원이 증액되고
 - 세출에서 경북형 그린에너지 시범마을 조성 △6천만원,

일반수용비 등 △1억 5천만원, 원전기자재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9천만원 등 총 △3억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금액은 예비비로 6억원을 증액 계상함.

다. 종합 검토의견

1) 일반회계

- 세입예산은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특별교부세 253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474억원 감액과 경상적 세외 수입 4억원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 △40억원 감액 등 세외수입에서 총 △36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25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금번 정리추경 예산안의 세출예산은
 - 농림해양수산 분야 118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8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1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4억원 등 경제분야가 217억원이 증액된 1조 8,235억원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FTA에 따른 어려움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당면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의 지방비 부담분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법정, 의무적 경비 과부족분을 정리한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2013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 개최지원 1억 5천만원은 금회 추경전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추경편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명시이월사업²⁵⁾에 대해서

- 최근 3년 동안의 명시이월사업 추세를 보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규모인데, 2013년도는 1,93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7.9%가 증가한 규모를 나타내고 있음.

◆ 최근 3년간 명시이월사업 현황 ◆

(단위 : 억원)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62	1,377	93	1,645	102	1,939	

- 첨부된 '참고자료'의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 연구용역비는 재원사정, 법적요건 등으로 시행여부나 시행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계상은 지양되어야 하고
- 계약이 지체되어 용역기간이 미도래한 것 등의 연구용역비가 21건에 35억원으로 전체 명시이월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5)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참고자료에 게재함.

- 시설공사비의 경우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와 공기의 절대부족,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명시이월사업이 대다수임.
- **새마을운동테마공원조성** 36억원 및 **철곡, 울진 생활체육공원조성** 공사 각각 9억 6천만원, 5억원, **생균제 제조시설** 공사 8억원 등은 토지보상지연 및 사업부지 미확보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고, 이는 예산편성 시 사업의 소요기간, 관련자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 사업추진 사전계획이 세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 것으로 보여짐.
- **경상북도 북브랜딩 제작** 4억원은 제1회 추경편성사업이었으나 전액이월한 것과 **21세기 신라상징조형물 제작** 1억원은 기정예산 9억 5천만원에서 금회추경에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증액한 1억원을 명시이월한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전액 감액사업²⁶⁾의 경우**
 - 2013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었던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만원 이상의 사업 가운데 계획취소, 중단 등으로 금번 추경에서 사업비를 전액 감액한 사업은 34건에 116억원으로,
 - 그 중 10억원 이상 전액 감액한 주요사업은 투자유치단의 **포항 외국인 학교 설립지원** 51억원과 관광

26) 기정예산 대비 전액감 편성 사업현황은 참고자료에 게재함.

진흥과의 무섬지리 문화경관 22억원, 환경정책과의 생물자원보전 시설 설치 13억원 등 3개 사업임.

- 이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미흡, 예측하지 못한 민원 발생, 사업추진 기피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비의 사장(死藏)으로 인해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의 적기 추진을 어렵게 하여 재정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기정예산 대비 전액감 편성 주요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증감액	비율(%)	
투 자 유치단	포항 외국인 학교 설립지원	0	5,100	△5,100	△100.0	
관 광 지원과	무섬지리문화경관	0	2,200	△2,200	△100.0	
환 경 정책과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0	1,300	△1,300	△100.0	

○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재원은

- 시기가 연말인 점을 감안 적기에 지원되어 예산편성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 특히, 2013회계연도의 종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추진으로 예산 낭비 및 사업시기를 일실하는 사례가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특별회계

- 2013년도 도에서 운용 중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지역개발기금운영 등 총 8종 1조 1,744억원으로
 - 금회 추경예산에서는
 - 의료급여기금 과징금수입 3억 4천만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4천만원 등 총 3억 8천만원을 의료급여 진료비로 민간위탁하고
 - 치수사업특별회계의 하천사용료수입 △4억원과 경북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의 학생장학금 등 △2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3억 5천만원 등을 예비비에 편성하는 등
- 이는 잉여금 및 이자수입 세입증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3)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중 도립국악단 단원의 보수 1억 5천만원, 도립교향악단 단원의 보수 1억원 등 인건비

추계 미흡으로 인한 증액분 총 2건 2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 의회운영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는 별도)에서 모두 원안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자 료

■ 명시이월 사업조서

■ 기정예산 대비 전액감 편성 사업 현황

〈자료 1〉

명시이월사업조서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사 유
부 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계					102건	453,816,320	193,978,328	
정 책 기획관	기획 조정을 통한지원 체계강화	도정정책 개발 시스템 강화	도정정책 개발 및 주요현안 관리	207-01 (연구 용역비)	고출력 (고에너지) 레이저산업 상용화 기반구축	100,000	100,000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13. 11~'14. 6)
				207-01 (연구 용역비)	제2국가 핵융합 연구소 설립	50,000	50,000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13. 11~'14. 6)
				207-01 (연구 용역비)	세계유일 가속기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50,000	50,000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13. 12~'14. 5)
				207-01 (연구 용역비)	차세대시 스템반도체 기술개발 연구용역	100,000	100,000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13. 11~'14. 6)
				207-01 (연구 용역비)	한국 장신문화 중심 도시조성 기본 계획수립 연구용역	207,700	207,700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13. 4~'14. 4)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사 유
부 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정 책 기획관	기획 조정을 통한지원 체계강화	도정정책 개발 시스템 강화	도정정책 개발 및 주요현안 관리	207-01 (연구 용역비)	경상북도 신동해안 마스터 플랜수립 연구용역	52,800	52,800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13. 10~’14. 5)
				207-01 (연구 용역비)	경상북도 자동차산업 발전방안 연구 용역	85,000	85,000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13. 10~’14. 3)
				207-01 (연구 용역비)	경북도립 도서관 건립 기본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70,000	70,000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13. 12~’14. 4)
				207-01 (연구 용역비)	콘텐츠 코리아 랩분원 유치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용역	44,700	44,700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13. 11~’14. 5)
				207-01 (연구 용역비)	경상북도 마이스산업 활성화 기본 계획수립	50,000	50,000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13. 11~’14. 3)
				207-01 (연구 용역비)	경북형 행복 농촌마을 조성사업 연구용역	50,000	50,000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13. 11~’14. 5)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사 유
부 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정보통신 담당관	유비쿼터스 경북구현	정보화 기반조성	스마트 종합전산 센터 구축	207-02 (전산 개발비)	디지털의사소통시스템 구축	800,000	800,000	안행부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등 사업준비기간 지연에 따른 이월
신성장 산업과	지역전략 산업육성	지역산업 기반구축	항공산업 기반구축 사업 (국가직 접지원)	207-01 (연구 용역비)	항공 전자산업 부품 단지조성 사업 연구용역	200,000	200,000	2013년1회추경예 산 반영 사업으로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13. 10~'14. 3)
			IT융합 탄소 소재 및 이차전지 연구기반	207-01 (연구 용역비)	IT융합 탄소 소재기반 구축 연구용역	150,000	150,000	2013년1회추경예 산 반영 사업으로, 용역기관선정 지연에 따른 이월
				207-01 (연구 용역비)	이차전지 핵심 소재기반 구축 연구용역	150,000	150,000	2013년1회추경예 산 반영 사업으로, 용역기관선정 지연에 따른 이월
자치행정과	지방행정 역량강화	선진자치 행정실현	기록물 관리	405-01 (자산 취득비)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입	290,000	206,690	사업종료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13. 10~'14. 4)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사 유
부 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새마을 봉사과	국민운동 활성화 기반조성	새마을 운동역량 강화	새마을 운동육성 지원 (보조)	401-01 (시설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3,624,000 국)1,812,000 도)1,812,000	3,624,000 국)1,812,000 도)1,812,000	행정절차 이행 및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이월
				401-02 (감리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감리비	368,000 국)184,000 도)184,000	179,258 국)89,629 도)89,629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401-03 (시설 부대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시설부대비	8,000 국)4,000 도)4,000	8,000 국)4,000 도)4,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사회 복지과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	호국선양 사업추진	경상북도 보훈회관 건립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경상북도 보훈회관 건립	1,500,000 국)1,500,000	1,500,000 국)1,500,000	토지이용계획변경 지연으로 인한 실 시설계 순연으로 이월 '14년 상반기 중 공사발주 계획
관광 진흥과	관광자원 개발확충	관광 인프라 조성	문화관광 자원개발 (보조)	401-01 (시설비)	울릉녹색 테마 파크조성 (울릉)	6,879,600 광)3,439,800 도)3,439,800	6,406,288 광)3,203,144 도)3,203,144	실시설계용역 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401-02 (감리비)	울릉녹색 테마 파크조성 (울릉)	101,500 광)50,750 도)50,750	101,500 광)50,750 도)50,750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스토리가 있는 문화 생태 탐방로 조성	207-01 (연구 용역비)	탐방로 현황 조사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100,000 기) 50,000 도) 50,000	100,000 기) 50,000 도) 50,000	'13년 제1회 추경 사업으로,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13. 11~'14. 10)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사유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사업	관광홍보	관광홍보업무추진	307-05 (민간위탁금)	경상북도북브랜딩제작	400,000	400,000	2013년 1회 추경 편성 사업으로, 학술연구용역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일상감사 등)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보완 등 사전절차 기일소요로 이월
	관광자원개발확충	3대문화권사업	낙동강이야기나라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낙동강이야기나라(상주)	9,029,000 광)8,000,000 도)1,029,000	4,514,500 광)4,000,000 도)514,500	국비예산 이월교부결정에 따른 이월
문화교류협력과	관광자원개발확충	이스탄불-경주 세계 문화엑스포 2013	신라(경북) 문화교류협력증진	402-01 (민간자본보조)	21C 신라상징조형물제작	1,050,000	100,000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 수행기간 조정으로 이월
체육진흥과	체육운동위상정립	체육시설의지속적확충·보강	체육진흥시설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칠곡덕산생활체육공원조성	960,000 광)600,000 도)360,000	960,000 광)600,000 도)360,000	사업부지(낙동강둔치) 하천침용 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부지 미확보로 공사 미발주('14년 3월 공사 착공 예정)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울진 생활체육공원조성	500,000 광)200,000 도)300,000	500,000 광)200,000 도)300,000	사업부지 미확보 및 설계 용역 미완료·사업부지 확보('14년 4월)·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14년 5월)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사 유
부 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환경 정책과	자연환경 보전관리 강화	공원자연 자원 소득화 사업	도립공원 정비사업	207-01 (연구 용역비)	팔공산도립 공원 자연자원 조사용역	280,000	280,000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13. 10 ~ ‘15. 1)
				207-01 (연구 용역비)	금오산, 청량산 도립공원 계획변경 용역	500,000	500,000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13. 12 ~ ‘14. 12)
		생물다양 성의보전	생물 다양성 보전 및 관리	207-01 (연구 용역비)	동해안세계 지질공원 등재를 위한 기초학술 조사용역	190,000	190,000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13. 8 ~ ‘14. 8)
환경 안전과	건강한 물환경 조성	공공수역 수질관리	주민지원 및 오염 총량관리	207-01 (연구 용역비)	오염 총량관리 3단계기본 계획 연구용역	822,000 기)822,000	822,000 기)822,000	환경부 목표수질 및 기준유량 산정용역 지연에 따른 이월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사 유
부 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산림 환경 연구원 서부 지원	산림경영 기반구축	산림자원 조성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401-01 (시설비)	지자체자연 휴양림조성	1,874,000 광)937,000 도)937,000	988,000 광)494,000 도)494,000	팔공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4년 (‘11~’14) 장기 시행되는 계속 공사로서 공기 조정에 따른 이월
				401-02 (감리비)	지자체자연 휴양림조성	40,000 광)20,000 도)20,000	40,000 광)20,000 도)20,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401-03 (시설 부대비)	지자체자연 휴양림조성	6,000 광)3,000 도)3,000	5,000 광)2,500 도)2,5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사방사업	401-01 (시설비)	사방사업 [2013년도 계류보전 사업 (고령 운수 신간)]	6,155,260 국)4,308,682 도)1,846,578	149,332 국)104,532 도) 44,800	시행사와 계약해지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공사 중지로 이월
				401-02 (감리비)	사방사업 [2013년도 계류보전 사업 시공감리 용역 (고령 성산 오곡 외1)]	124,200 국)86,940 도)37,260	6,557 국)4,590 도)1,967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사 유
부 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산림 자원 개발원	산림자원 종합개발	산림종합 테마파크 조성	산림문화 휴양촌 조성	401-01 (시설비)	산림문화 휴양촌 조성사업	9,577,908 광)4,788,954 도)4,788,954	9,500,000 광)4,750,000 도)4,750,000	실시설계용역 미완료('14. 1)로 인해 공사미발주로 이월
				401-02 (감리비)	산림문화 휴양촌 조성사업	130,260 광)65,130 도)65,130	42,070 광)21,035 도)21,035	시설비 이월에 따른 이월
				401-03 (부대비)	산림문화 휴양촌 조성사업	24,332 광)12,166 도)12,166	2,830 광)1,415 도)1,415	시설비 이월에 따른 이월
축산 경영과	축산업 발전사업	사료산업 지원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	402-01 (민간 자본보조)	생균제제조 시설지원	800,000	800,000	부지 확보 지연 등으로 연내사업 추진 불가로 이월
잠사 곤충 사업장	지역특화 작목육성 개발	우량누에 씨생산및 유용곤충 보급	사업장 이전	401-01 (시설비)	이전지평발 및 나비생태원 관장설치	50,000	50,000	'14년 포장배수개 선 및 생력기계화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이월
			지역곤충 자원산업 화지원센 터건립	401-01 (시설비)	지역곤충 자원 산업화지원 센터 건립	816,600 국)412,000 도)404,600	816,600 국)412,000 도)404,600	사업계획변경, 도시 관리 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사업 추진 지연 ('13. 12월 인허 가 완료, '14. 1월 계약 및 착공예정)
				401-03 (시설 부대비)	지역곤충 자원산업화 지원센터 부대비	7,400	7,400	'14. 1월 공사 착공 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사 유
부 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동해안 발전 정책팀	동해안 해양개발	해양산업 육성	경북연안 해양개발 모델구상 용역	207-01 (연구 용역비)	경북연안해 양개발모델 구상용역	50,000	50,000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13. 10~'14. 5)
수산 진흥과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어촌어항 관광 인프라 구축	해양환경 조사	401-01 (시설비)	지방어항 기본 계획 및 환경 영향평가	800,000	384,428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13. 10~'14. 10)
도로 철도과	지방도 건설 확포장	지방도 확충	청도경 산간 국지도 건설	401-01 (시설비)	청도경산간 국지도건설	17,436,000 광)15,436,000 도)2,000,000	6,300,000 광)5,000,000 도)1,300,000	철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준공예정일: '14. 10)
				401-02 (감리비)	청도경산간 국지도건설 감리비	64,000 광)64,000	64,000 광)64,000	감리용역(10차분) 미발주
			동명부 계간 국지도 건설	401-01 (시설비)	동명부계간 국지도건설	20,317,000 광)18,327,000 도)1,990,000	500,000 도)500,000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
				401-03 (시설 부대비)	동명부계간 국지도건설 시설부대비	33,000 광)23,000 도)10,000	25,000 광)18,000 도)7,000	사업비 이월에 따른 이월
			울릉일주 도로건설	401-01 (시설비)	울릉일주 도로 국지도건설	14,860,000 광)12,770,000 도)2,090,000	3,000,000 광)3,000,000	철대공기 부족 (준공예정일: '14. 7)
				401-02 (감리비)	울릉일주 도로 국지도건설 감리비	500,000 광)500,000	150,000 광)150,000	감리공기 절대부족 (준공예정일: '14. 7)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사 유
부 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도로 철도과	지방도 건설 확포장	지방도 확충	농암산 양간 국지도 건설	401-01 (시설비)	농암산양간 국지도건설	8,630,000 광)6,240,000 도)2,390,000	1,200,000 광)1,200,000	철대공기부족 (준공예정일: '14. 4)
				401-02 (감리비)	농암산양간 국지도건설 감리비	300,000 광)300,000	150,000 광)150,000	철대공기부족 (준공예정일: '14. 6)
			고령개 진간 국지도 건설	401-01 (시설비)	고령개진간 국지도건설	7,301,000 광)2,326,000 도)4,975,000	400,000 광)400,000	철대공기부족 (준공예정일: '14. 5)
			조교임고 국지도 건설	401-01 (시설비)	조교임고간 국지도건설	765,000 광)290,000 도)475,000	600,000 광)125,000 도)475,000	교통수요예측재조사 (부산청)에 따른 발주지연(발주중)
				401-02 (감리비)	조교임고간 국지도건설 감리비	200,000 광)200,000	100,000 광)100,000	교통수요예측재조사 (부산청)에 따른 발주지연(발주중)
				401-03 (시설 부대비)	조교임고간 국지도건설 시설부대비	35,000 광)10,000 도)25,000	10,000 도)10,000	사업비 이월에 따른 이월
			청도운문 터널건설	401-01 (시설비)	청도운문 터널 건설	100,000 광)100,000	100,000 광)100,0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설시설계중
			지방도 건설	401-01 (시설비)	지방도사업	36,180,000	2,037,000	· 예산청기확포장 보상지연 (498백만원) · 청 기 터 널 건 설 공기미도래 ('14. 6월, 1,120백만원) · 부 적 금 구 확 포 장 용역 발주중(300백만원) · KTX신경주진입 도로 용역공기미도래 ('14. 7월, 119 백만원)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사 유
부 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건축 디자인과	패적인 주거환경 조성	건축행정 건설화	경북혁신 도시비즈 니스센터 건립	401-01 (시설비)	경북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건립	19,640,000 광)9,820,000 도)9,820,000	19,558,670 광) 9,779,335 도) 9,779,335	실시설계 중으로 (13. 7 ~) 시설공사 착공이 불가하여 이월
				401-02 (감리비)	경북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건립	274,000 광)137,000 도)137,000	274,000 광)137,000 도)137,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401-03 (시설 부대비)	경북혁신도 시비즈니스 센터건립	86,000 광)43,000 도)43,000	60,000 광)30,000 도)30,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몽골UB 도시개발 추진	지역기업 몽골진출 지원	401-01 (시설비)	몽골UB경북 드림파크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50,000	50,000	조성부지 변경협의 (13. 10. 3)에 따라 토지 사용권 확보에 대한 승인 절차 추 진으로 미발주
치수 방재과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	친환경적 하천정비 추진	하천재해 예방사업 (도시행)	401-01 (시설비)	하천재해예방 사업 시설비	37,484,000 국)22,533,000 도)14,951,000	29,828,905 국)15,526,75 0 도)14,302,15 5	절대공기 부족 -강파지구 외 18 지구 (12. 6~14. 5)
				401-03 (시설 부대비)	하천재해예방 사업 시설부대비	136,000	115,813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고향의 강사업	401-01 (시설비)	고향의 강사업	1,667,000 국)1,000,000 도)667,000	1,520,101 국)904,313 도)615,788	실시설계 절대공기 부족 -의성 남대천 (12. 8~14. 3)
			하천정비 업무	401-01 (시설비)	지방하천 기본 계획수립	1,500,000	451,990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 절대공기 부족 (13. 6~14. 12)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물순환형수변 도시조성사업 시설비	1,667,000 국)1,000,000 도)667,000	1,667,000 국)1,000,000 도)667,000	실시설계 절대공기 부족 송평천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 (12. 8~14. 3)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사 유
부 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종합 건설 사업소	지방도 확충 및 유지관리	교량 개·보수 및 안전관리	재난위험 교량정비	401-01 (시설비)	재난위험교량 정비사업 시설비	3,035,000 특)3,035,000	3,035,000 특)3,035,000	특별교부세사업으로 '13. 11월 교부세가 교부결정됨에 따라 연내 사업착공이 불가하여 이월
				401-03 (시설 부대비)	재난위험교 량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1,000 특)11,000	11,000 특)11,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종합건 설사 업소	지방도 확충 및 유지관리	도로교통 망확충	사리도 확포장	401-01 (시설비)	사리도 확포장 사업 시설비	11,454,000	300,000	보상협의 및 문화 재발굴지연에 따른 공사비 이월(준공 기한 '14. 7. 5)
				401-01 (시설비)	지방도유지 관리사업 시설비	7,298,620	630,000	· 준공기한 미도 래에 따른 이 월 (준 공 기 한 '14. 10. 16) - 덕담도로 선형개량공사 ·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 - 봉촌~울림간 도로 선형 개량공사
				401-01 (시설비)	도로대장 전산화사업 시설비	198,740	198,740	용역완료기한 미도 래에 따른 이월 (용역기한 '14. 7)
				401-03 (시설 부대비)	도로대장 전산화사업 시설부대비	1,260	1,260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종합 건설 사업소 북부 지소	지방도 확충 및 유지관리	자동차 교통 관리개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401-01 (시설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시설비	2,773,700 광)1,386,850 도)1,386,850	1,486,850 광)100,000 도)1,386,850	준공시기 미도래 · 화산도로 선형 개량(2차) ('13. 2 ~ '14. 5) · 옥곡도로 선형 개량(2차) ('13. 2 ~ '14. 8) · 옥산도로 선형 개량(1차) ('13. 7 ~ '14. 7)
				401-03 (시설 부대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시설부대비	18,300 광)9,150 도)9,150	6,000 도)6,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사 유
부 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종합 건설 사업소 북부 지소	지방도 확충 및 유지관리	도로 교통망 확충	사rido 확포장	401-01 (시설비)	사rido확 포장 사업 시설비	10,237,000	841,210	수용재결 지면에 따른 공탁금 이월 · 무창~수비 (오기)확포장 (수용재결 신청 13. 2. 21) 준공시기 미도래 · 방전 우회 도로 폐기물처리 용역 (13. 3. 18 ~ 15. 9. 3) · 화전도로(산수 유) 확포장 (13. 3. 26 ~ 14. 3. 20) · 온정~원남간 도로 확포장 (13. 4. 24 ~ 14. 4. 18)
				401-03 (시설 부대비)	사rido확 포장 사업 시설부대비	63,000	22,187	시설비 이월에 따른 이월
종합 건설 사업소 북부 지소	지방도 확충 및 유지관리	지방도 유지관리	위험도로 개량	401-01 (시설비)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 시설비	4,011,300	1,236,842	· 보상협의 지연 - 하의도로 선형 개량 - 태목도로 선형 개량 - 평은죽전도로 선형개량 - 백전도로 선형 개량 · 준공시기 미도래 - 사근2도로 선형개량 (13. 4. 30 ~ 14. 4. 24) - 서벽도로 선형 개량 (13. 5. 2 ~ 14. 4. 26) - 인제도로 선형 개량 (13. 4. 3 ~ 14. 4. 2)
				401-03 (시설 부대비)	위험도로 선형 개량사업 시설부대비	28,700	3,994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사 유
부 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종합 건설 사업소 북부 지소	지방도 확충 및 유지관리	교량 안전관리	교량 및 터널 개보수	401-01 (시설비)	교량개채	5,343,400 특)2,362,400 도)2,981,000	3,355,400 특)2,362,400 도)993,000	준공시기 미도래 - 후정BOX 개채 (사업기간 : '13.11.~'14.5) - 신평교 개채 (특교세교부결정 '13. 11. 21) - 중리교 개채 (특교세교부결정 '13. 11. 21)
				401-03 (시설 부대비)	교량 및 터널 개보수사업 시설부대비	41,600 특) 9,600 도)32,000	9,600 특)9,6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신도시 조성과	새로운 성장거점 신도시 조성	명품 신도시 조성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401-01 (시설비)	도청이전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75,309,000 국)38,493,000 특) 3,000,000 도)33,816,000	41,120,107 국) 4,304,107 특) 3,000,000 도)33,816,000	·도청이전 신도시 진입도로(안동 방면) 총사업비 승인('12. 11. 1) 및 '12년 국비 예산 교부결정 지연에 따른 '13 년 예산 이월 ·도청이전 신도시 진입도로(예천 방면) 총사업비 승인('13. 10. 8)에 따라 공 사발주 지연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사 유
부 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신도시 조성과	새로운 성장거점 신도시 조성	명품 신도시 조성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401-02 (감리비)	도청이전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감리비	1,500,000	1,500,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401-03 (시설 부대비)	도청이전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	177,000	170,389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신도시 조성과	새로운 성장거점 신도시 조성	명품 신도시 조성	도청 및 도의회 신청사 건립	401-01 (시설비)	도본청 및 의회 신청사 건립공사 시설비	103,500,000 국)48,600,000 도)54,900,000	30,000,000 도)30,000,000	신청사 건립공사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401-03 (시설 부대비)	도본청 및 의회 신청사 건립공사 시설부대비	100,000 도)100,000	100,000 도)100,000	시설비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119 특수 구조단	소방역량 활성화	소방재난 대응능력 강화	긴급대응 능력확보	401-01 (시설비)	소방헬기 기체재생 검사	1,280,000	1,280,000	재생검사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계약기간 : '13. 7 ~ '14. 7)
				401-01 (시설비)	소방헬기 엔진재생 검사	1,200,000	324,225	재생검사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계약기간 : '13. 7 ~ '14. 7)
				401-01 (시설비)	소방헬기 유압조종 장치교체	314,000	106,054	교체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계약기간 : '13. 7 ~ '14. 7)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사 유
부 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119 종합 상황실	소방역량 활성화	소방재난 대응능력 강화	119긴급 구조표준 시스템 구축	401-01 (시설비)	119긴급 구조 표준시스템 구축	2,298,672 (국)1,200,000 (도)1,098,672	2,298,672 (국)1,200,000 (도)1,098,672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 (계약기간 : '13. 1 ~ '14. 12)
				401-02 (감리비)	119긴급 구조 표준시스템 구축	93,768	93,768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경산 소방서	소방역량 활성화	소방행정 기반구축	소방청사 신증축 및 환경개선 등	401-01 (시설비)	경산소방서 이전신축	4,285,000	1,572,527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 (공사기간 : '13. 6 ~ '14. 9)
				401-02 (감리비)	경산소방서 이전신축	67,000	47,703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401-03 (시설 부대비)	경산소방서 이전신축	13,000	7,315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의성 소방서	소방역량 활성화	소방행정 기반구축	소방청사 신증축 및 환경개선 등	401-01 (시설비)	점포119 지역대이전 신축	411,000	371,899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이월
				401-02 (감리비)	점포119 지역대이전 신축	6,000	6,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401-03 (시설 부대비)	점포119 지역대이전 신축	3,000	3,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소방청사 신증축 및 환경개선 등	401-01 (시설비)	소보전담 의용 소방대신축	293,000	274,454	부지 성토공사 및 기반조성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이월
				401-02 (감리비)	소보전담 의용 소방대신축	5,000	5,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401-03 (시설 부대비)	소보전담 의용 소방대신축	2,000	2,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 부대비 이월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사 유
부서	정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계					4건	4,935,400	3,512,852	
치수 방재과	하천관리 및 댐주변 지역정비	수해예방을 위한 치수 능력 확보 (치수사업 특별회계)	체계적인 하천정비 추진	401-01 (시설비)	하천 기본 계획 수립	4,500,000	3,077,452	하천기본계획수립용역 절대공기 부족 (‘13. 6. ~ ‘14. 12)
				401-03 (시설 부대비)	하천 기본 계획 수립 시설 부대비	10,000	10,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 부대비 이월
에너지 산업과	에너지 및 자원개발	에너지 육성 및 지원 사업 (특별회계)	에너지 산업 육성 및 지원추진	201-01 (사무 관리비)	원자력 클러 스터 주민 수용성 제고 사업	257,400	257,400	사전 기초자료수집과 공개경쟁입찰 준비 과정 등으로 계약이 '13. 6월 이루어져 용역기간 (‘13. 7 ~ ‘14. 3) 미도래에 따른 이월
				207-01 (연구 용역비)	원자력 관련 시설 해체 폐기물 연계 산업 육성 방안 연구 용역	168,000	168,000	사전 자료수집 및 정부원전해체정책을 반영한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계약이 지체 되어 (계약 : ‘13. 8) 용역기간 (‘13. 8 ~ ‘14. 6) 미도래에 따른 이월

〈자료 2〉

기정예산 대비 전액감 편성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 고
				증감액	비 율	
감 사 관	공직자 부패방지	0	10	△10	△100.0	
미 래 전 략 기 획 단	도정발전주요전략개발	0	100	△100	△100.0	
정 책 기 획 관	의회협력 업무 추진	0	11	△11	△100.0	
민 생 경 제 교 통 과	교통안전정책추진	0	40	△40	△100.0	
창 조 과 학 기 술 과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0	30	△30	△100.0	
"	전국창작지능로봇경진대회	0	20	△20	△100.0	
투 자 유 치 단	투자유치서울센터운영	0	210	△210	△100.0	
"	투자유치기업사후관리	0	10	△10	△100.0	
"	외국인학교설립지원	0	5,150	△5,150	△100.0	
안 전 총 괄 과	안전문화운동지원	0	35	△35	△100.0	
인 재 양 성 과	맞춤형도민교육	0	20	△20	△100.0	
새 마 을 봉 사 과	새마을운동육성지원(자체)	0	20	△20	△100.0	
"	21C새마을운동활성화	0	60	△60	△100.0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 고
				증감액	비 율	
회 계 과	효율적이고 적정한 재산관리	0	150	△150	△100.0	
"	밝고 쾌적한 청사환경 관리	0	50	△50	△100.0	
문 화 예 술 과	도립예술단운영	0	11	△11	△100.0	
관 광 진 흥 과	관광자원기반확충	0	60	△60	△100.0	
"	3대문화권지역전략사업추진	0	2,257	△2,257	△100.0	
관 광 진 흥 과	시군축제육성	0	40	△40	△100.0	
"	경북관광상징체계 및 사진공모전	0	80	△80	△100.0	
체 육 진 흥 과	장애인체육대회지원	0	43	△43	△100.0	
축 산 경 영 과	구제역매몰지 환경관리	0	100	△100	△100.0	
환 경 정 책 과	생물자원보전시설	0	1,300	△1,300	△100.0	
물 산 업 과	공중화장실물절약(중수도) 시설구축사업	0	130	△130	△100.0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 고
				증감액	비 율	
산림자원개발원	산림생태보전관리	0	21	△21	△100.0	
사회복지과	현충시설 및 호국보훈시설확충	0	100	△100	△100.0	
보건정책과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운영지원	0	80	△80	△100.0	
도로철도과	강동 안강간국지도건설	0	500	△500	△100.0	
종합건설사업소	인력운영비	0	105	△105	△100.0	
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	인력운영비	0	43	△43	△100.0	
수진홍과	전북외해중층가두리개발	0	780	△780	△100.0	
소방본부대응구조구급과	119시민수상구조대운영	0	10	△10	△100.0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운영(수입대체경비)	0	20	△20	△100.0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	인력운영비	0	22	△22	△100.0	

※ 기정예산 1천만원 이상만 작성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8.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9. 심사결과 : 수정가결(내역 별첨)

10. 소수의견 요지 : 특이사항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1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 정 조 서

【삭감조서】

(단위 : 천원)

쪽	소 관 부 서	내 용(부기)	감 액	비 고
계			250,000	
30	기획조정실	예비비	250,000	

【증액조서】

(단위 : 천원)

쪽	소 관 부 서	내 용(부기)	증 액	비 고
계			250,000	
181	문화관광체육국	도립국악단 보수(기본급-단원)	150,000	
181	문화관광체육국	도립교향악단 보수(기본급-단원)	100,000	

2013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합 심 사 보 고 서

1. 소관부서 : 경상북도교육감

I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1. 29. 경상북도교육감
2. 회부일자 : 2013. 12. 12.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 12. 16. : 상정 · 질의 · 토론 · 의결)

III.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관 김태원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득하고자 함.

IV.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

1. 총규모
 - ☐ 2013년도 세입 · 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 4,649억원보다 630억원(1.8%) 증액된
3조 5,279억원임.

◆ 예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금액(A-B)	증감률(%)
3,527,902	3,464,910	62,992	1.8

2. 세입예산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30억원(1.8%) 증액된
3조 5,279억원으로 과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 이전수입은

총 3조 2,540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92.2%를 차지
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3조 2,018억원보다 522억원(1.6%) 증액됨.

• 중앙정부 이전수입 : 426억원(1.5%) 증액

- 특별교부금 : 357억원 증액

- 국고보조금 : 69억원 증액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 74억원(2.7%) 증액

- 시도세전입금 : 52억원 증액

- 기초자치단체전입금 : 22억원 증액

• 기타 이전수입 : 기타 지원금 22억원(73.5%) 증액

○ 자체수입은

총 643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1.8%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535억원보다 108억원(20.2%) 증액됨.

- 행정활동수입 :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2억원(34.1%) 증액
- 자산수입 : 95억원(91.2%) 증액
 - 자산임대수입 : 1억원 증액
 - 자산매각대 : 94억원 증액
- 기타수입 : 10억원(49.0%) 증액
 - 제재금수입 : 2억원 증액
 - 그 외 수입 : 8억원 증액

◆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장 관 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3,527,902	100.0	3,464,910	100.0	62,992	1.8
이 전 수 입	소 계	3,254,041	92.2	3,201,845	92.4	52,196	1.6
	중 이 양 전 정 수 부 입	2,971,221	84.2	2,928,604	84.5	42,617	1.5
	지 방 자 치 단 체 이 전 수 입	277,663	7.9	270,268	7.8	7,396	2.7
	기 타 이 전 수 입	5,157	0.1	2,972	0.1	2,184	73.5
자 체 수 입	소 계	64,302	1.8	53,507	1.5	10,796	20.2
	교 수 - 학 습 이 동 수 입	28,212	0.8	28,204	0.8	8	0.0
	행 정 활 동 수 입	882	0.0	658	0.0	224	34.1
	자 산 수 입	19,954	0.6	10,439	0.3	9,516	91.2
	이 자 수 입	12,121	0.3	12,104	0.4	17	0.1
	금 융 자 산 회 수	1	0.0	0	0.0	1	267.0
	기 타 수 입	3,132	0.1	2,103	0.1	1,029	49.0
차 입	소 계	21,313	0.6	21,313	0.6	0	0.0
	지방교육채	21,313	0.6	21,313	0.6	0	0.0
기 타	소 계	188,245	5.3	188,245	5.3	0	0.0
	전년도이월금	188,245	5.3	188,245	5.3	0	0.0

3. 세출예산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30억원(1.8%) 증액된

3조 5,279억원으로 정책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1.2. 총 3조 3,542억원으로 전체 세출의 95.1%를 차지하며,

1.1.3. 기정 예산액 3조 3,130억원보다 412억원(1.2%) 증액됨.

1.1.4.

- 인적자원운용 : 300억원(1.8%) 감액

- 감액 : 정규직인건비(△293억원), 교원역량강화(△2억원), 지방공무원역량강화(△4억원)

- 교수-학습활동지원 : 183억원(8.4%) 증액

- 증액 : 교육과정개발운영(13억원), 학력신장(34억원), 유아교육진흥(2억원), 외국어교육(72억원), 과학교육활성화지원(4억원), 특성화고교육(51억원), ICT활용교육(15억원), 학생생활지도(19억원), 대안교육운영지원(2억원), 진로진학교육(14억원), 학생선발배정(9억원)

- 감액 : 수업지원장학활동(△2억원), 특수교육진흥(△7억원),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3억원), 수련 및 봉사활동(△1억원), 학생상담활동지원(△34억원), 학력평가(△4억원),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2억원)

- **교육복지지원** : 163억원(5.1%) 증액
 - 증액 : 방과 후 등 교육지원(2억원), 농어촌학교교육
여건개선(220억원)
 - 감액 : 학비지원(△5억원), 급식지원(△17억원),
누리과정지원(△37억원)
- **보건/급식/체육활동** : 49억원(15.1%) 증액
 - 증액 : 급식관리(40억원), 각종 체육대회활동(9억원)
- **학교재정지원관리** : 25억원(0.3%) 감액
 - 증액 : 학교운영비지원(4억원)
 - 감액 : 사학재정지원(△29억원)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 342억원(15.2%) 증액
 - 증액 : 학교일반시설(147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
(197억원)
 - 감액 : 학생수용시설(△2억원)
-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총 87억원으로 전체 세출의 0.2%를 차지하며,
기정 예산액 85억원보다 2억원(2.2%) 증액됨.
- **평생교육** : 2억원(2.8%) 증액
 - 증액 : 평생교육활성화지원(1억원), 독서문화진흥(1억원)
- **교육일반 부문은**
총 1,65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7%를 차지하며,
기정 예산액 1,435억원보다 216억원(15.1%) 증액됨.

- **교육행정일반** : 5억원(1.6%) 증액
 - 증액 : 선거관리(1억원),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1억원), 재무관리(21억원)
 - 감액 : 교육정책기획관리(△9억원), 교육행정혁신(△1억원), 교육행정정보화(△3억원), 사학기관지도육성(△2억원), 시설사업관리(△2억원)
- **기관운영관리** : 기본운영비 4억원(0.7%) 감액
-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 민간투자사업상환 5억원(1.3%) 감액
- **예비비 및 기타** : 219억원(117.7%) 증액

◆ 세출예산 정책사업별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3,527,902	100.0	3,464,910	100.0	62,992	1.8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소 계	3,354,186	95.1	3,312,986	95.6	41,200	1.2
	인적자원운용	1,633,884	46.3	1,663,872	48.0	△29,988	△1.8
	교수-학습 활동 지원	236,610	6.7	218,356	6.3	18,254	8.4
	교육복지지원	337,507	9.6	321,236	9.3	16,270	5.1
	보건/급식/ 체육 활동	37,671	1.1	32,738	0.9	4,933	15.1
	학교재정 지원 관리	849,368	24.1	851,856	24.6	△2,488	△0.3
	학교교육여 건 개선 시 설	259,145	7.3	224,926	6.5	34,219	15.2
평생직업교육	소 계	8,649	0.2	8,462	0.2	187	2.2
	평 생 교 육	6,952	0.2	6,765	0.2	187	2.8
	직 업 교 육	1,697	0.0	1,697	0.0	0	0.0
교육일반	소 계	165,067	4.7	143,463	4.1	21,604	15.1
	교육행정일반	32,712	0.9	32,193	0.9	519	1.6
	기관운영관리	54,360	1.5	54,731	1.6	△371	△0.7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37,423	1.1	37,898	1.1	△476	△1.3
	예비비 및 기타	40,573	1.2	18,640	0.5	21,933	117.7

□ 세출예산의 기관별 편성내역은

- 본청 예산은 2조 4,958억원으로
전체예산의 70.7%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2조 4,587억원보다 371억원(1.5%) 증액됨.
- 경상북도교육연구원을 비롯한 직속기관 예산은 316억원으로 전체예산의 0.9%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327억원보다 11억원(3.4%) 감액됨.
- 포항교육지원청을 비롯한 23개 지역교육청은 1조 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8.4%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9,735억원보다 270억원(2.8%) 증액됨.

◆ 세출예산 기관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3,527,902	100.0	3,464,910	100.0	62,992	1.8
본 청	2,495,786	70.7	2,458,712	71.0	37,073	1.5
직속기관	31,593	0.9	32,694	0.9	△1,102	△3.4
지역교육청	1,000,524	28.4	973,503	28.1	27,020	2.8
포항교육 지원청	167,001	4.7	157,595	4.5	9,406	6.0
경주교육 지원청	83,139	2.4	80,347	2.3	2,792	3.5
김천교육 지원청	78,777	2.2	75,674	2.2	3,104	4.1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안동교육 지원청	68,348	1.9	68,440	2.0	△92	△0.1
구미교육 지원청	127,355	3.6	128,109	3.7	△754	△0.6
영주교육 지원청	47,749	1.4	45,609	1.3	2,140	4.7
영천교육 지원청	40,999	1.2	41,030	1.2	△31	△0.1
상주교육 지원청	47,341	1.3	45,512	1.3	1,829	4.0
문경교육 지원청	26,713	0.8	24,317	0.7	2,396	9.9
경산교육 지원청	80,083	2.3	81,052	2.3	△969	△1.2
군위교육 지원청	7,687	0.2	7,756	0.2	△69	△0.9
의성교육 지원청	22,618	0.6	22,761	0.7	△143	△0.6
청송교육 지원청	16,530	0.5	16,517	0.5	13	0.1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영양교육 지원청	8,874	0.3	8,860	0.3	14	0.2
영덕교육 지원청	17,735	0.5	16,042	0.5	1,694	10.6
청도교육 지원청	16,350	0.5	16,492	0.5	△142	△0.9
고령교육 지원청	16,131	0.5	16,089	0.5	42	0.3
성주교육 지원청	20,837	0.6	20,781	0.6	56	0.3
칠곡교육 지원청	41,508	1.2	40,396	1.2	1,112	2.8
예천교육 지원청	17,170	0.5	15,610	0.5	1,560	10.0
봉화교육 지원청	20,578	0.6	19,476	0.6	1,102	5.7
울진교육 지원청	21,648	0.6	19,770	0.6	1,878	9.5
울릉교육 지원청	5,351	0.2	5,267	0.2	84	1.6

4. 계속비사업 조서

□ 2013년도 계속비 사업은

- 총 4건으로 사업비 총액은 1,005억원이며,
2013년도 계획액은 396억원임.

◆ 2013년도 계속비사업 조서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총액	전 년 도			계 획 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당해연도	2014년도	2015년도
계	100,463	-	-	-	39,648	50,365	10,450
학교신축 (3개교)	49,013	-	-	-	17,948	31,065	-
본청 청사신축	51,450	-	-	-	21,700	19,300	10,450

5. 채무부담행위 조서 : 해당 없음.

6.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 2013년도 민간투자사업 상환 계획액은

- 44개교의 299억원이며, 이는 2005~2010년
교육시설 BTL²⁷⁾사업 추진에 따른 채무부담액임.

◆ 2013년도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

(단위 : 백만원)

학교수	협약 금액	20년간 지급예정액			상환계획				
		임대료	운영비	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44 개교	268,787	499,854	128,254	628,108	29,862	30,418	30,581	30,748	406,497

7. 명시이월사업 조서

□ 2013년도 명시이월액은

○ 총 84건에 529억원이며 특별교부금 사업이 많음.

◆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 ◆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이 월 액	명시이월사업의 예산편성시기	
			본예산/1회추경	2회추경
계	84	52,938	16,860	36,078
도교육청	12	5,362		
지역교육청	72	47,576		

27) BTL(Build Transfer Lease) : 민간자본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토록 한 후 공공기관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에 따른 임대료를 장기간 (20년)지급함으로써 민간투자 부문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의 재정압박을 완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방식

8. 지방교육채 조서

- 2013년도 지방교육채는 총 1,563억원으로

○ 2013년도 상환계획은 교육채 발행에 따른 이자 76억원
이며, 원금은 2015~2024년 10년간 분할상환할 예정임.

◆ 2013년도 지방교육채 조서 ◆

(단위 : 백만원)

구분	기간		이율	기채선	기채액	전년도상환			당해연도상환계획			금후 계획	기채 사유
	기채 연도	상환완료 예정연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공공 자금 관리 기금	2009	2024	4.85	국고	156,327	-	7,623	7,623	-	7,561	7,561	156,327	학교 교육 여건 개선

V. 검토의견

1. 세입부문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조 4,649억원보다 630억원이 증액된

3조 5,27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 증액되었으며,

과목별로 살펴보면 이전수입이 522억원, 자체수입이 108억원 증액되었음.

- **이전수입이 522억원(1.6%) 증액된 것은**
국가시책사업 관련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426억원, 시도세전입금(법정), 기초자치단체전입금(비법정)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74억원, 기관, 협회 또는 단체에서 지원되는 민간이전수입 등 기타이전수입 22억원이 증액된 것임.
- **자체수입이 108억원(20.2%) 증액된 것은**
행정재산 사용료 및 제증명 수수료수입 등 행정활동수입 2억원, 교육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적은 토지, 건물 등 자산임대 및 매각 수입 등 자산수입 95억원, 위약금, 집행잔액 반납금, 감사결과 회수금 등 기타수입 10억원이 증액된 것임.
- 이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자치단체이전수입 등 이전수입과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자산수입, 기타수입 등 자체수입이 증액되어 편성된 것으로 대체로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자산수입이 95억원(91.2%) 급증되었는데, 이는 폐교 및 기타 잡종재산의 토지와 건물 매각대금으로 어려운 교육재정 상황에서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으므로 자산매각수입의 세입활용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임.
- 또한, 세입 결산 추정 시
자산매각대의 경우는 일회성이므로 추계가 어렵겠지만,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 수입 등의 경우

연도별 누적된 자료로 비교적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므로
늦어도 1회 추경까지 반영하여 시기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세출부문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30억원(1.8%) 증액**되었으며,
 - 인적자원운용 △300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5억원, 기관운영관리 △4억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5억원 등 **총 334억원이 감액**된 반면,
 - 교수-학습활동지원 183억원, 교육복지지원 163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49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42억원, 평생교육 2억원, 교육행정일반 5억원, 예비비 및 기타 219억원 등 **총 963억원이 증액**되었음.
- 특히, 교육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규직 인건비가 293억원 감액**되었는데,
 - 이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편성방법을 재검토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인건비 산출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220억원 증액**은 통폐합 학교 지원기금이며,
- **예비비 219억원 증액**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투입하지 않기 위해 감액된 금액의 상당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과 집행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명시이월사업²⁸⁾

-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그 취지를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임.
-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총 84건 529억원으로 전년대비 712억원(57.4%) 감소되어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명시이월이 연도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 대규모 시설사업의 사전 준비작업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발생하지만, 교부금이 연초에 교부되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대규모 시설사업의 경우 예산을 연차별로 반영하고 제반 준비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등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8) 참고자료 1

◆ 최근 5년간 명시이월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건 수	명시이월액	비 고
2009	55	56,689	
2010	135	135,555	
2011	189	85,790	
2012	98	124,140	
2013	84	52,938	

□ 각종 시설사업 추진 철저

- 이번 추경에도 학교시설 증개축 147억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197억원 등 시설비가 각각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학교시설의 사업비가 정리추경시에 편성되어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인하여 매년 명시이월로 이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적기에 자금이 전입되지 않는 등 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 노력해야 할 것임.

□ 제2회 추경 신규사업 및 전액삭감 사업²⁹⁾

- 제2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의 경우는 비록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추진되어 왔다 하더라도 그 사업기간이 본예산에 비해 짧기 때문에 사업수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특별교부금 사업의 경우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자료 및 계획에 의거 산출된 예산을 계상하고, 기편성된 예산은 집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취소 및 미집행 예상사업**은 1회 추경 편성 시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어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30억원(1.8%)**이 증액된 3조 5,279억원 규모로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불가피한 필요사업을 반영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및 과부족분 증감을 조정하는 정리 성격의 추경예산안이라 볼 수 있으며, 전년대비 명시이월사업이 감소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 기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액 중 **정규직 인건비(△293억원)** 및 **사학재정지원(△29억원)**의 상당부분이 감액되는 등 예산편성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29) 참고자료 2

-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적절한 재원 배분과 철저한 예산집행 계획으로 소중한 교육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자 료

1. 201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2. 제2회 추경 신규 사업 및 사업취소 내역

참고자료 1

◆ 201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

부서	과 목			사업항목 (세출목)	명 시 이월액	사 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합 계					52,938,348	
교육 정책과	교수- 학습활동 지원	특수교육 진흥	특수교육 운영	■ 특수학교 학교기업운영지원 620 (학교회계전출금)	112,000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특수학교 학교기업 설치교(포항명도학교, 안동진명학교)에 프로그램 운영지원, 스페셜코디네이터 채용 인건비로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교예산이나, 학교기업을 완공하지 못하여 이월
교육 과정과	교수- 학습활동 지원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교과 교실제 추진 지원	■ 안동여자중교과교실제 신규학교건물시설비 420(건설비)	1,116,340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안동교육지원청 관내 안동여자중학교 교과교실제시설사업 추진에 있어 조달청 계약 의뢰 등 행정 소요일과 계약 이행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시설비 이월
과학 직업 교육과	교수- 학습활동 지원	ICT활용 교육	스마트 교육지원	■ 스마트교육역량 강화연수 및 정책설명회 210(운영비) 220(여비) 230 (업무추진비)	97,451 23,310 4,350	2회 추경에 반영된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수콘텐츠 개발 지원에 따라 연도내 집행 불가
체육 건강과	보건/ 급식/ 체육활동	급식관리	학교급식 환경개선	■ 영일고등학교급식기구비 620 (학교회계전출금)	225,851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계약 이행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
				■ 모계고등학교급식기구비 620(학교회 계전출금)	115,816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학교일반 시설	학교시설 증개축	■ 영일고등학교 급식소증개축시설비 620 (학교회계전출금)	1,554,221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계약 이행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
				■ 모계고등학교 급식소증개축시설비 620 (학교회계전출금)	1,022,674	
				■ 경주정보고등 학교급식소증개축시설비 620 (학교회계전출금)	526,592	

부서	과 목			사업항목 (세출목)	명 시 이월액	사 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생활 지도과	교수- 학습활동 지원	학생 생활지도	학교폭력 예방지원	■ 학교폭력대책민원신문고 처리집검단운영		제2회 추경에 반영된 교육부 특별 교부금 사업으로 사업 추진 기간이 2014년 상반기예정으로 연도내 집 행불가
				110(인건비)	12,000	
				210(운영비)	392	
				220(여비)	13,500	
교육 시설과	교육행정 일반	시설사업 관리	시설사업 관리	■ 태양광발전설비민간투자 용역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민간투자사업 기본 계획수립 지연으로 연도내 집행불가
				420(건설비)	30,000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교육환경 개선시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 포항과학기술포럼 인조 잔디운동장조성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계약이행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사업 집행 불가
				420(건설비)	360,745	
학교 지원과	교수- 학습활동 지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교육과정 운영	■ 전국기숙학교교당당자 및 교직원연수		제1회 추경에 반영된 교육부 특별 교부금 사업으로 교육부 계획변경에 따라 연도내 집행 불가(기숙학교 정 책용역 결과보고와 합동추진계획으로 변경)
				210(운영비)	20,276	
				230 (업무추진비)	8,774	
				310(보전금)	766	
포항 교육 지원청	교수- 학습활동 지원	과학교육 활성화지원	체험중심 과학환경 교육지원	■ 포항교육청발명교실설치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포항교육 청 청사이전 연기로 교육청내 발명 교실의 설치 지연
				430 (유형자산)	100,000	
	보건/ 급식/ 체육활동	급식관리	학교급식 환경개선	■ 기계초등학교급식 시설현대화사업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계약이행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
				420(건설비)	267,085	
				620 (학교회계진출금)	62,168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학교일반 시설	학교시설 증개축	■ 평해정보고등학교 생활관증축		제1회 및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계약이행기간의 부족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
				420(건설비)	956,680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교육환경 개선시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 포항영흥초등학교교사개축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계약이행기간의 부족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
				420(건설비)	9,553,816	
				■ 영덕고등학교기타학교 환경개선시설		제1회 및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지자체 대응투자비가 제2회 추경에 반영되어 계약이행기간의 부족 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
				420(건설비)	238,912	
				■ 영덕고등학교전기시설개선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계약이행기간의 부족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
				420(건설비)	365,764	

부서	과 목			사업항목 (세출목)	명 시 이월액	사 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포항 교육 지원청	교육행정 일반	교육행정 정보화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운영	■ 무정전전압장치구입 430 (유형자산)	14,000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청사이전 연기에 따른 집행 불가(현청사 설치시 추후 이전 비용 발생에 따른 예산 낭비 방지)
		교육행정 자료 및 기록물관리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	■ 기록관운영(중요 기록물이중보존작업비용) 210(운영비)	45,000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자격보유 자(기록연구사) 퇴직으로 사업추진 불가
	기관운영 관리	기본운영비	지역 교육청 운영	■ 신청사이전추진 210(운영비)	168,850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신청사 준공 연기로 인한 집행 불가
				420(건설비)	6,000	
				430 (유형자산)	326,314	
경주 교육 지원청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학생 수용시설	학교 신증설	■ 학교용지매입 (폐지오동초사유지매입) 410 (토지매입비)	231,440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매입대상 토지의 상속자가 78명 정도로 현재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연도내 집행 불가
		학교 일반시설	학교시설 증개축	■ 영천고등학교특별교실 증축 420(건설비)	325,159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계약이행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사업 집행 불가
				■ 안강제일초등학교 다목적강당보수 420(건설비)	237,490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계약이행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사업 집행 불가
				■ 양남중학교급식소 및 다목적강당증축 420(건설비)	1,660,512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조달청 기술심사 및 계약이행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사업 집행 불가
				■ 천북초등학교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증축 420(건설비)	1,294,000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특별교부 금 예산으로 계약이행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사업 집행 불가
				■ 아화초등학교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증축 420(건설비)	1,283,000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특별교부 금 예산으로 계약이행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사업 집행 불가

부서	과 목			사업항목 (세출목)	명 시 이월액	사 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김천 교육 지원청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학생수용 시설	학교신증설	■ (가칭)용전중학교 교사 신축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 집행 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 (시설비일부)
				420(건설비)	800,000	
				■ (가칭)용전유치원교사 신축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 집행 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 (토목공사일부)
				420(건설비)	300,000	
		학교일반 시설	학교시설 증개축	■ (가칭)용전유치원개교 경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개원 지연 에 따른 교부 대상교 부채로 연도내 집행 불가
				620 (학교회계전출금)	400,000	
				■ 김천초등학교급식소 및 다목적강당증축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 집행 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
				420(건설비)	3,194,000	
				■ 김천부곡초등학교체육 관보수		제1회 및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 변경과 사업 집행 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
				420(건설비)	272,700	
안동 교육 지원청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학생수용 시설	학교신증설	■ 김천중학교운동장성토 및 보수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2014년 시설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집행코자 이월
				620(학교 회계전출금)	82,950	
		교육환경 개선시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 안동영호초교설증축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2014년 사업규모 증가에 따른 예산 추가 편성으로 연도내 집행불가
				420(건설비)	1,088,506	
				■ 안동꿈터유치원조합 놀이대 및 실습시설치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부지확보 협의지연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
				420(건설비)	30,895	
				■ 안동꿈터유치원담장설치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부지확보 협의지연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
				420(건설비)	78,575	
				■ 안동꿈터유치원옹벽설치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부지확보 협의지연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
				420(건설비)	181,974	
				■ 안동꿈터유치원교문개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부지확보 협의지연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
				420(건설비)	31,780	
				■ 안동꿈터유치원진입로 포장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부지확보 협의지연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
				420(건설비)	154,500	
				■ 안동용상초등학교 이중장개제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계약이행기간의 부족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
				420(건설비)	370,300	

부서	과 목			사업항목 (세출목)	명 시 이월액	사 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안동 교육 지원청	교수-학습 활동지원	체육교육 내설화	학교체육 시설여건 개선	■ 안동중학교축구부 생활관증축 420(건설비)	14,637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내년도 추가재원 확보를 통하여 대 수선에서 개축으로 변경하고자 연도 내 집행불가
구미 교육 지원청	보건/ 급식/ 체육활동	급식관리	학교급식 환경개선	■ 도송중학교급식시설 현대화 420(건설비)	653,293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급식시설 운영방식에 대한 협의 지연 으로 연도내 집행불가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학교일반 시설	학교시설 증개축	■ 지산초등학교급식소 증개축 420(건설비)	656,292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2014년 다목적강당 예산확보 후 공동집행 예정
				■ 지산초등학교다목적 강당증축 420(건설비)	492,000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연도내 집행불가
				■ 구미초등학교외벽개선 420(건설비)	706,120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안전진단 전문기관 안전점검 결과(C등급)에 따라 2014년 보수, 보강예산 확보 후 집행
	교육행정 일반	교육행정 자료 및 기록물 관리	교육행정 기록물관리	■ 중요기록물DB구축 사업비 210(운영비)	45,000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중요기록 물량이 많아 분류작업 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불가
	교육행정 일반	재무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영주공공도서관통합 신축토지매입비 410 (토지매입비)	2,200,002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영주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소요일수 부족으로 연도내 집행불가
영주 교육 지원청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학교일반 시설	학교시설 증개축	■ 금계중학교급식소 리모델링 620 (학교회계진출금)	90,000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2014년 본예산에 편성된 급식소 증축사업과 연계하여 집행
영천 교육 지원청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학생수용 시설	학교신증설	■ (가칭)영천별빛중학교 교사신축설계비 420(건설비)	787,500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문화재발굴조사로 인한 연도내 집행 불가
				■ (가칭)영천별빛중학교 토지매입비 및 각종 보상비 410 (토지매입비)	3,359,691	제1회 및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 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한 연도내 집행 불가

부서	과 목			사업항목 (세출목)	명 시 이월액	사 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상주 교육 지원청	보건/ 급식/ 체육활동	급식관리	학교급식 환경개선	■ 상주여자중학교급식 시설현대화사업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연도내 집행불가
				420(건설비)	884,950	
				620(학교 회계전출금)	101,580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학교일반 시설	학교시설 증개축	■ 상주남부초등학교 다목적강당증축		제1회,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계약이행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집행불가
				420(건설비)	1,553,000	
		교육환경 개선시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 상주남부초등학교 옹벽설치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계약이행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
				420(건설비)	42,000	
				■ 상주남부초등학교 배수로설치		
				420(건설비)	82,200	
				■ 상주남부초등학교 진입로포장		
				420(건설비)	154,500	
				■ 상주남부초등학교 수목이식 및 조경공사		
				420(건설비)	30,000	
				■ 성신여자중학교관리실 리모델링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계약이행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
				620(학교 회계전출금)	70,000	
문경 교육 지원청	보건/ 급식/ 체육활동	급식관리	학교급식 환경개선	■ 문경여자중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계약이행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
				420(건설비)	408,833	
				620(학교 회계전출금)	95,171	
				■ 문경여자중학교급식 기구비		
				620(학교 회계전출금)	163,859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학교일반 시설	학교시설 증개축	■ 문경여자중학교급식소 증축시설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계약이행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
				420(건설비)	1,408,676	
		교육환경 개선시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 마성중학교외벽개선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계약이행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
				420(건설비)	174,000	

부서	과 목			사업항목 (세출목)	명 시 이월액	사 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경산 교육 지원청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교육환경 개선시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 자인여자중학교화장실 개선 620 (학교회계진출금)	240,000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고등학교분)이 제2회 추경에 반영되어 계약이행기간 부족 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
영양 교육 지원청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교육환경 개선시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 영양여자중학교외벽개선 620(학교회계 진출금)	211,250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고등학교 분 시설비(2014년도)와 함께 집행 하고자 연도내 집행불가
				■ 영양중앙초등학교교실 리모델링 및 용벽설치 및 담장보수 420(건설비)	62,322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연도내 집행불가
				■ 문화예술체험장환경 개선 420(건설비)	20,163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연도내 집행불가
	기관운영 관리	교육행정 기관시설	지역교육청 시설관리	■ 영해교직원연립주택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410 (토지매입비)	253,200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영해지구 교직원연립주택 신축 부지 매입 지연으로 인하여 연도내 집행 불가
영덕 교육 지원청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교육환경 개선시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420(건설비)	1,346,700	
칠곡 교육 지원청	학교급식 환경개선	급식관리	학교급식 환경개선	■ 신동중학교급식기구비 620 (학교회계진출금)	82,071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급식소증개축 시설사업 미시행으로 연도내 집행불가
				■ 북삼중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420(건설비)	549,182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계약이행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
				620 (학교회계진출금)	175,823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학교일반 시설	학교시설 증개축	■ 신동중학교급식소증 개축시설비 420(건설비)	419,379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계약이행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

부서	과 목			사업항목 (세출목)	명 시 이월액	사 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천 교육 지원청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 예천초등학교계단난간 개제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그린스쿨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자 연도내 집행 불가
				420(건설비)	15,290	
				■ 예천초등학교장애인 편의시설설치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그린스쿨 사업과 연계추진하고자 연도내 집행 불가
				420(건설비)	15,000	
				■ 예천초등학교그린스쿨 사업		
				420 (건설비-설계비)	42,920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계약이행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
				420 (건설비-시설비)	2,803,900	제1회 및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계약이행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집행불가
				기관운영 관리	교육행정 기관시설	지역교육청 시설관리
420(건설비)	90,600					
봉화 교육 지원청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학교수용 시설	학교신증설	■ 춘양초등학교병설 유치원교사신축부지매입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계약이행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
				410 (토지매입비)	263,659	
		교육환경 개선시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 봉화연립사택대수선공사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계약이행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
				420(건설비)	267,346	
				■ 춘양초등학교이중창 개제공사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계약이행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
				420(건설비)	496,000	
				■ 도촌초등학교배수로 설치공사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계약이행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
				420(건설비)	56,000	
■ 동양초등학교배수로 설치공사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계약이행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				
420(건설비)	47,600					

부서	과 목			사업항목 (세출목)	명 시 이월액	사 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울진 교육 지원청	학교교육 여건개선	교육환경 개선시설	학교교육 환경개선 시설	■ 부구조등학교삼당분교 정골프연습장증축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연도내 집행불가
				420(건설비)	240,000	
				■ 부구중학교직원연립 사택증축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연도내 집행불가
				420(건설비)	600,000	
	보건/ 급식/ 체육활동	급식관리	학교급식 환경개선	■ 부구중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연도내 집행불가
				420(건설비)	470,783	
				620 (학교회계진출금)	53,200	
				■ 후포중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연도내 집행불가
				420(건설비)	429,996	
				620 (학교회계진출금)	28,014	

참고자료 2

◆ 제2회 추경 신규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 산 액	예산서 페이지
계			13,808,480	
1	교 연 수 육 원	[특교]우수영어교수인력확충연수	208,210	p145
2	학 지 원 교 과	[특교]학교회계직원대책	15,000	p172
3	생 지 도 활 과	[특교]교원안보연수강화	8,708	p190
4	교 과 정 육 과	[특교]자유학기제	116,490	p190
5	교 과 정 육 과	[특교]인성교육중심수업강화	20,000	p201
6	교 과 정 육 과	[특교]교육기부활성화	43,000	p202
7	교 과 정 육 과	[특교]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53,980	p210
8	교 과 정 육 과	[특교]기초학력향상지원	3,040,000	p211
9	교 과 정 육 과	[특교]수학교사역량강화지원	22,800	p213
10	교 과 정 육 과	[특교]수학자기주도학습사이트운영지원	248,000	p214
11	교 과 정 육 과	[특교]선진형교육지원청컨설팅장학	36,000	p218
12	교 과 정 육 과	[특교]유아교육선진화기반조성	177,250	p232
13	교 정 책 육 과	[특교]영어교육컨설팅단운영	92,000	p277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 산 액	예산서 페이지
14	교 정 책 과	[특교]EBS영어교육방송지원	247,000	p277
15	교 정 책 과	[특교]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운영	279,000	p277
16	과 학 직 업 과	[특교]융합인재교육활성화	173,000	p283
17	과 학 직 업 과	[특교]과학고발전방안추진	113,000	p283
18	과 학 직 업 과	[특교]지속발전가능교육선도학교운영	40,000	p286
19	과 학 직 업 과	[특교]지속가능발전교육	140,000	p286
20	과 학 직 업 과	[특교]특성화고현장중심교육지원	358,000	p292
21	과 학 직 업 과	[특교]마이스터교육성기반조성	80,000	p292
22	과 학 직 업 과	[특교]특성화고취업촉진	162,410	p294
23	과 학 직 업 과	[특교]산업체우수강사채용지원	717,794	p294
24	과 학 직 업 과	[특교]특성화고글로벌역량강화	455,259	p294
25	과 학 직 업 과	[특교]스마트교육추진	943,729	p309
26	과 학 직 업 과	[특교]ICT활용농산어촌학습여건개선	594,750	p312
27	생 지 도 활 과	[특교]학생건강안전강화	33,747	p339
28	생 지 도 활 과	[특교]학교폭력대책사업	1,524,000	p343
29	생 지 도 활 과	[특교]소외계층교육력제고	85,404	p350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 산 액	예산서 페이지
30	교과정육과	[특교]방송중고운영체제개편	158,400	p352
31	행정지원과	[특교]지방교육행정선진화	62,700	p359
32	교과정육과	[특교]EBS수능강의운영지원	1,098,000	p364
33	교과정육과	[특교]사회적배려대상자맞춤형 프로그램지원	42,637	p378
34	재정보무과	교직원사택신축	2,199,900	p547
35	총무과	[특교]유치원정보공시시스템운영	154,000	p632
36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단	[특교]유치원취학수요조사	15,000	p664
37	기획조정관	[특교]외국학교와의 교사고류	49,312	p686

◆ 제2회 추경 사업취소 내역 ◆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 산 액	예산서 페이지
계			△200,000	
1	포항교육지원청	교사이전 (경북과학고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	△200,000	p496

Ⅵ. 질의 및 답변요지 : 특이사항 없음.

Ⅶ.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Ⅷ.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Ⅸ. 소수의견의 요지 : 특이사항 없음.

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 정 활 동 보 고 서

(제266회 정례회)



2013. 12 인쇄 / 2013. 12 발행

발행 / 경 상 북 도 의 회

편집 / 의 사 담 당 관 실

전 화 : 602-5146

FAX : 602-5140



<비매품>

새로운 천년의 비상

경상북도의회 신청사 상량식

